

서울시보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www.seoul.go.kr

제 3451호

2018. 2. 19.(월)

함께
서울



목 차

◆ 고 시

제2018-39호 서울특별시 문화재 지정 고시	3
제2018-40호 강북구 미아동 소나무협동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18
제2018-41호 보라매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27
제2018-42호 도시관리계획(독산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46

◆ 공 고

제2018-284호 추정금 및 과태료 부과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99
제2018-321호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 용자계획 공고	100
제2018-323호 2018년 서울시 주거환경관리사업 주민공동체 운영비 지원사업 공고 ...	102
제2018-324호 2018년도 제1차 건축물미술작품 설치계획 심의결과 공고	104
제2018-336호 회계관계공무원 직인등록 공고	106
제2018-342호 서울특별시 문화재 지정계획 공고	107
제2018-347호 측량업 등록 공고	112
제2018-353호 차량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부과고지 공시송달 공고	112
제2018-359호 기부금품 모집등록 공고	113
제2018-374호 서울특별시의회 부의안건 공고	114
제2018-384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및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115
제2018-394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116

◆ 구 고 시

제2018-19호 도시관리계획(화양1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광진구)	117
제2018-40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구로구)	120
제2018-42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구로구)	121
제2018-7호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고시(관악구)	122
제2018-21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정정) 및 지형도면 고시(강남구) ...	126

◆ 구 공 고

제2018-168호 도시계획시설(철도)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광진구)	128
---	-----

제2018-151호 도시계획시설사업[불암산 동네뒷산 공원조성]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 및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청취 공고(노원구)	129
제2018-152호 도시계획시설사업[불암산도시자연공원(중계지구) 조성]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열람 및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청취 공고(노원구)	132
제2018-167호 상도동 159-250번지 일원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따른 상도근린 공원 공원조성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주민의견 청취 열람공고 (동작구)	134
제2018-224호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 및 주민의견 청취 열람 공고(관악구)	149
제2018-294호 도시계획시설(우면산도시자연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서초구)	151
제2018-255호 도시관리계획(송파대로, 위례성길, 삼전 지구단위계획) 변경(안) 열람공고(송파구)	152

◆ 사업소고시

제2018-35호 하천점용허가 고시(한강사업본부)	154
제2018-36호 하천점용허가 고시(한강사업본부)	154
제2018-38호 하천점용허가 고시(한강사업본부)	155

◆ 사업소공고

제2018-3호 유물 구입 공고(서울역사박물관)	156
제2018-1호 소방시설관리업 등록 공고(마포소방서)	158

◆ 정 정

서울특별시 조례 제6316호 정정	159
--------------------------	-----

고 시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39호

서울특별시 문화재 지정 고시

「문화재보호법」 제70조,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조례」 제8조와 제1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및 문화재 자료 지정 사실을 고시합니다.

2018년 2월 19일
서울특별시장

1. 서울특별시 문화재 지정 개요

○ 문화재 지정 개요

지정예정 종별	지정예정 명칭	수량	규격(cm)	조성연대	보관장소 (소유자)
서울시 유형문화재	고봉화상선요 (高峰和尚禪要)	1점	25.5×15.8	1573년	중랑구 숙선옹주로 69 (대한불교조계종 법장사)
	흥천사 시왕도 (興天寺十王圖)	4점	1.3왕도 : 100×133 99.5×133 2·4왕도 : 134.5×99.7 134.5×100.5 5·7·9왕도 : 122.7×70.4 122.7×74.5 122.7×70.8 6·8·10왕도 : 72.2×122.4 73.2×123.5 72.5×121.5	1885년	성북구 흥천사길 29 (대한불교조계종 흥천사)
서울시 문화재자료	흥천사 조왕도 (興天寺竈王圖)	1점	142.8×143.3	1938년	성북구 흥천사길 29 (대한불교조계종 흥천사)
	약수사 지장시왕도 (藥水寺地藏十王圖)	1점	138.2×142	1914년	관악구 약수암 1길 28 (대한불교조계종 약수사)

<지정하고자 하는 사유>

■ 고봉화상선요

송나라 고봉선사 원묘(原妙, 1238-1295)가 선(禪)수행의 요령을 간추려서 해설한 선종의 지침서로 우리나라에서는 조선시대 불교 강원의 사집과(四集科) 교재로 채택되어 비교적 많이 개판되었는데, 그 중 법장사 신청본은 1573년 황해도 구월산 월정사에서 간행된 판본이다. 범어사본 외에는 동일본이 거의 발견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표지가 간행 당시의 원형을 잘 유지하고 있고, 권말에 간행 배경과 관련이 있는 발문이 추가되어 있는 등 원형이 잘 보존된 희귀본이다.

특히 본문에는 구결과 한글 훈독이 묵서로 기재되어 있어 국어학 연구의 학술적으로 중요한 자료이기도 하다. 이에 신청본을 서울시 유형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다.

■ 홍천사 시왕도

홍천사 시왕도는 상궁들이 시주·발원하여 1885년 제작되었다. 각 인물의 표현, 뛰어난 지옥 묘사, 적색과 풍부한 금의 사용, 각종 기물, 호위신장들의 갑옷에 이르기까지 매우 완성도 높은 왕실발원 불화로서의 품격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일부 방제가 누락되거나 그 내용 역시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미루어 패널에 오려 붙일 때 그 내용과 순서에 다소 혼동이 있어 후에 재개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9세기 말 서울·경기지역에서 성행했던 대표적인 시왕도 금이 많이 사용된 당대의 완성도 높은 수준작으로 평가된다.

서울지역의 시왕도 형식을 대표하는 작품에 속한다는 점에서 서울시 유형문화재로 지정하여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 홍천사 조왕도

홍천사 소장 조왕도는 차양 밖으로 일렁이는 수파문이 가득한 바다와 수평선 좌우에 큼직한 해와 달이 떠있는 모습이 보인다. 하늘에는 문계구름을 열게 표현하였다. 해와 달은 곡물생장과 식생활에 필요하여 조왕신에 그려지는 도상 특징의 하나이다.

보응문성(普應文性)이 제작하였는데 그는 조선후기 계룡산과 화승인 금호약효(錦湖若效)의 제자로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전반까지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그리고 서울에 이르기 까지 매우 왕성하게 활동하여 수많은 불화를 제작한 근대기의 대표적인 불화승이다.

신청본은 20세기 불화임에도 필력과 표현력이 우수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으며, 전통 불화의 기법에 현대화적인 기법을 응용하여 제작한 새로운 양상을 보여주는 불화이다. 또한 제작자인 문성이 근대기 대표적인 불화승으로서 그의 작품을 보여주는 중요한 작품으로 판단되어 시 문화재자료로 지정하는 타당하다.

■ 약수사 지장시왕도

약수사 대웅전의 후벽 좌측에 봉안되어있는 지장시왕도는 장황하는 과정에서 화기의 일부가 잘려나가 원래의 봉안처를 알 수는 없지만, 『봉은사본말사지』에도 계은 봉법(繼恩 奉法)이 1914년 조성한 지장탱이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1943년 이전부터 약수사에 봉안되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제작자인 계은 봉법(繼恩奉法)과 한곡 긍법(漢谷肯法)은 19세기 후반부터 많은 불화를 제작하였고 경기도 불화의 화풍을 주도한 대표적 화승들이다.

약수사 지장시왕도는 개칠이 없고 원형이 잘 유지되고 있으며 일제강점기에 제작된 불화이나 전통 불화의 도상을 충실히 계승하고 있으며, 필선이나 채색 등의 화풍도 20세기 전반기 불화 중 우수한 작품으로 판단되어 시 문화재 자료로 지정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다.

2. 문화재 지정일자 : 2018. 2. 8.

3. 유형문화재 지정을 위한 조사보고서 : <붙임> 참조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역사문화재과(☎ 02-2133-26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지정을 위한 조사보고서

■ 고봉화상선요

본 자료는 송나라 고봉선사 원묘(原妙, 1238-1295)가 선(禪)수행의 요령을 간추려서 해설한 선종의 지침서로 우리나라에서는 조선시대 불교 강원의 사집과(四集科) 교재로 채택되어 비교적 많이 개판되었는데, 그 중 법장사 신청본은 1573년 황해도 구월산 월정사에서 간행된 판본이다.

이 책은 고봉의 시자 지정(持正)이 기록하고 홍교조(洪喬祖)가 편록하여 ‘禪要’라 이름을 붙였으며, 권수에는 1354년에 쓴 홍교조의 서문과 주영원(朱穎遠)의 발문이 있다. 권말에는 간행 기록이 있으며, 전체는 권수의 구분 없이 51장으로 되어 있다.

내용은 개당보설(開堂普說) 1편, 시중(示衆) 14편, 결제시중(結制示衆) 2편, 해제시중(解制示衆) 3편, 입양시중(立陽示衆) 1편, 제야소참(除夜少參) 2편, 만참(晩參) 1편, 직옹(直翁)과 신옹(信翁)과 이통(理通)에게 내린 법어 3편, 통양산화상의사서(通仰山和尚疑嗣書) 1편, 실중삼관(室中三關) 1편 등 모두 29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법장사 신청본은 표지가 간행 당시 5침으로 장황한 원형을 잘 유지하고 있으며, 좌측 상단에 ‘高峰錄(單)’으로 표제가 목서되어 있다. 표지의 크기는 25.5×15.8cm이다. 권수면에 『月精/寺印』이란 사찰 장서인이 날인되어 있다. 판식의 특징을 살펴보면, 변란은 사주단변으로 반곽을 기준으로 크기는 18.5×13.0cm이며, 행자수는 8행18자이다. 판심부에는 흑어미가 서로 내향하고 그 사이에 판심제와 장차가 새겨져 있다. 그리고 천두(天頭) 부분에는 간혹 주해가 쓰여 있으며, 본문은 구결과 한글 훈독이 세필로 목서되어 있어 독해에 참고가 된다.

권말에는 이 책을 간행할 때 천관(天寬) 스님이 쓴 것으로 보이는 발문이 수록되어 있는데, 본서의 간행배경에 대해서 밝히고 있어 자료적 가치가 있다. 발문의 끝부분에 간기가 기재되어 있어 법장사 신청본은 1573년에 황해도 문화의 월정사에서 개판한 판본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법장사 신청본은 1573년 황해도 월정사에서 간행한 판본인데, 이 책을 개판하는데 당시 지인(智仁)이 화주로 전체 작업을 주관하였으며, 신봉(信峯)은 판각용 목판을 연판하였고 천감(天鑑)이 각수로 참여하여 전체를 판각하였다. 현재 이와 동일한 내용을 지닌 불서는 국내 여러 기관과 사찰 등에 30여종의 판본이 소장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중 황해도 구월산 월정사에서 1573년에 간행한 판본은 부산 범어사 외에 법장사 신청본이 유일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본 신청본은 <고봉선요> 전 내용이 온전한 상태로 보존되어 있으며, 표지는 비록 고졸한 모습이나 5침으로 장황한 형태로 비교적 원형 상태를 잘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법장사 신청본은 임란 이전인 1573년 황해도 구월산의 월정사에서 간행되어 한 동안 그 곳에 소장되었던 판본이다. 현재 이와 동일한 판본이 부산의 범어사에 소장되어 있으나, 권말에 발문이 없는 상태이다. 그 외에는 동일본이 거의 발견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원형이 잘 보존된 희귀본으로 판단된다. 특히 표지가 간행 당시의 원형을 잘 유지하고 있으며, 권말에 간행 배경과 판련이 있는 발문이 추가되어 있고 본문에는 구결과 한글 훈독이 목서로 기재되어 있어 국어학 연구의 학술적 가치가 있다. 이에 법장사 소장 『고봉화상선요』는 서울시 유형문화재로 지정할 만한 가치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된다.

<사진자료>



<붙임>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지정을 위한 조사보고서

■ 홍천사 시왕도

시왕도는 패널에 오려 붙인 형식으로, 열 명의 왕 중, 2왕 또는 3왕을 한 폭(점)으로 구성한 4폭(점) 형식이다. 지장시왕도를 중심으로 우측(향좌)으로 1왕·3왕도 1폭, 5왕·7왕·9왕도 1폭, 좌측(향우)으로 2왕·4왕도 1폭, 6왕·8왕·10왕도 1폭 등이 배치되는 것이 원칙이나 일부 방제가 누락되거나 그 내용 역시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미루어 패널에 오려 붙일 때 그 내용과 순서에 다소 혼동이 있었다고 생각된다. 즉, 1왕·3왕과 2왕·4왕의 방제가 뒤바뀌고 5왕인 염라대왕에는 제7태산대왕의 방제가 붙어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는 원래 각 왕의 방제가 각 화면에 쓰여진 것이 아니라 두 화면에 걸쳐있는 것도 있다 보니 판넬에 오려 붙일 때 혼동이 된 것 같다. 따라서 원형의 장황을 복원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5·7·9왕도와 6·8·10왕도의 화기는 배접할 때 일부 잘려졌으나 “삼각산 홍천사 명부전에 봉안되었으며”, “상궁이 시주하였다”는 내용은 읽을 수 있다. 특히 “乙酉”의 “酉”가 남아있어 1885년에 제작된 것을 이번 조사에서 새롭게 확인할 수 있었다(도1).

이 시왕도(1885)는 19세기 말 서울·경기지역에서 성행했던 대표적인 시왕도에 속하며, 보광사 시왕도(1872), 화계사 시왕도(1878), 봉국사 시왕도(1898), 봉원사 시왕도(19세기말) 등과 유사한 도상을 보여준다. 화면의 상단에는 시왕을 중심으로 심판하는 장면이 그려지고 하단에는 지옥장면이 펼쳐져있다. 시왕이 있는 곳이 성 안쪽이고, 지옥형벌을 받는 곳이 성 바깥이라는 표현을 성벽과 구름 또는 산수, 성문 등으로 장면을 분할한 바, 이는 조선 후기 시왕도에서 성행하던 기법이다. 상단에는 병풍을 배경으로 시왕이 의자에 앉아 있는 모습이 큼직하게 묘사되었으며, 시왕 주위의 난간과 계단 아래쪽에 권속들이 시립하고 있다. 옥졸은 대부분 창과 같은 무기류를 들고 있으며, 관관은 복두를 쓰고 傘이나 扇 등, 동자는 벼루, 두루마리, 책, 천녀는 扇을 들고 있다. 하단은 거의 빈 공간이 없을 정도로 지옥의 형벌장면으로 채워져 있는데, 각 대왕도 아래의 지옥장면은 다음과 같다.

- **1왕·3왕도(原 2왕·4왕)** : 제1진광대왕의 지옥 내용은 죄인의 온 몸에 쇠말뚝을 박아 죽이는 4왕의 鐵床地獄이며, 이 옆은 방제가 없으나 제2초강대왕의 拔舌地獄을 묘사하였다. 나무에 망자의 머리카락과 손, 발을 묶고 입에서 혀를 길게 뽑아 옥졸이 그 위에서 소에게 쟁기를 매달아 끌고 있다. 이것은 바로 입으로 나쁜 업보를 지은 중생들이 혀를 뽑히고[拔舌地獄] 혀 위에서 소가 쟁기질하는 고통[耕舌地獄]을 받는 제2초강대왕을 묘사한 것이다. 따라서 방제는 각기 2왕·4왕인 초강대왕·오관대왕으로 바꾸어 붙여야한다.

- **5·7·9왕도** : 제9도시대왕도를 중심으로 좌우에 제7태산대왕도와 제5염라대왕도가 나타난바, 염라대왕에는 제7태산대왕의 방제가 붙어있고, 7·9왕도에는 방제가 없다.

■ 제5왕도는 閻羅大王의 심판장면으로 평소 살생을 일삼는 자의 과보를 業鏡臺에 비추어, 업보대로 벌을 받는 장면이 표현되어 있다.

■ 제7왕도는 망자가 49일째 심판을 받는 泰山大王의 심판장면과 寒氷地獄을 그린 것이다. 긴 칼을 들고 있는 옥졸들이 목에 칼을 쓴 망자들을 데리고 오는 모습과 입에서 찬 기운을 내뿜

고 있는 옥졸로 인해 사망이 일어붙은 곳에서 망자들이 추위에 떠는 장면이 나타나 있다.

- 제9왕도는 사후 1년째에 망자를 심판하는 都市大王의 왕청과 鉅解地獄, 業秤地獄을 묘사하였다. 관관들은 業秤의 양 끝을 잡고 망자의 죄의 무게를 달거나 두루마리를 들고 추를 쳐다보고 있으며, 그 앞에서 옥졸이 칼을 들고 서있다. 이와 함께 鉅解地獄에서는 옥졸이 나무판 사이에 망자를 넣고 톱질을 하고 있다.

- 2·4왕도(原 1왕·3왕) : 향오른쪽은 제2초강대왕, 향왼쪽은 제4오관대왕인데, 제2초강대왕에 1왕의 내용인 확당지옥을 표현했고, 제4오관대왕에는 3왕의 내용인 검으로 죄인이 죽임을 당하는 장면 등이 그려져 있다. 각 내용으로 미루어 방제는 1왕·3왕인 제1진광대왕·제3송제대왕으로 바꾸어 붙여야한다.

- 6·8·10왕도 : 제6변성대왕을 중심으로 좌우에 제8평등대왕과 제10오도전륜대왕이 배열되어 있다.

- 제6변성대왕 아래 칼날이 꽃혀있는 땅인 劍樹지옥이 묘사되어있다. 旁題가 없다.
- 제8평등대왕은 사후 100일째 되는 날 공평하게 罪福의 업을 심판한다. 鐵山이라는 커다란 바윗덩어리 사이에 죄인을 넣고서 눌러 압사시키는 장면이 묘사되어있다.
- 제10오도전륜대왕 장면은 죽은 후 3년이 되면 마지막으로 열 번째의 오도전륜대왕에게 심판을 받은 후 다시 태어날 곳을 결정받는다. 하단에 六道輪廻를 상징하는 구름 같은 6줄의 띠가 공중에 퍼져나가고 있는데, 각각의 줄에는 축생도, 아귀도, 인간도 등 육도윤회하는 다음 생이 표현되어있다.

[화기]

- 5·7·9왕도 ... 西..」 神供..」 日奉..」 角山興..」 冥府..」 金魚..」 化主..」 引勸..」
- 6·8·10왕도 : 施主..」 尙宮..」 張..」 乾命..」 淳..」 泓..」

10장면이 담긴 4폭이 모두 남아 있는 시왕도(1885)의 화면은 한군데 찢어진 손상을 제외하곤 보존 상태가 양호한 편이다. 시왕도 중 1왕·3왕과 2왕·4왕의 방제가 뒤바뀌고 5왕인 염라대왕에는 제7태산대왕의 방제가 붙어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는 원래 각 왕의 방제가 각 화면에 쓰여진 것이 아니라 두 화면에 걸쳐있는 것도 있다 보니 판넬에 각 왕의 방제를 오려 붙일 때 그 내용과 순서에 혼동이 있었던 것 같다. 따라서 화계사의 시왕도(1878)를 참조하여 원형의 상황을 복원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이 시왕도(1885)는 19세기 말 서울·경기지역에서 성행했던 대표적인 시왕도에 속한다. 특히 서울시 유형문화재인 화계사 시왕도(1878)와 마찬가지로 상공들이 참여하여 시주·발원한 바, 금이 많이 사용된 당대의 완성도 높은 수준작으로 평가된다. 반면 화계사 시왕도는 현재 6·8·10왕도 1폭이 결실되었으나 이 시왕도는 4폭 전부 10장면의 시왕도가 남아있다는 점에서 비교된다. 각 인물의 표현, 뛰어난 지옥 묘사, 적색과 풍부한 금의 사용, 각종 기물, 호위신장들의 갑옷에 이르기까지 매우 정교한 완성도 높은 왕실발원 불화로서의 품격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조선말기 서울지역의 시왕도 형식을 대표하는 작품에 속한다는 점에서 서울시 유형문화재로 지정하여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사진 자료>



1.3 왕도



2.4 왕도



5.7.9 왕도



6.8.10 왕도

<붙임>

서울특별시 문화재자료 지정을 위한 조사보고서

■ 홍천사 조왕도

이 그림은 부엌신을 그린 조왕도이다. 불의 발명은 인간 문명 중 가장 중요한 혁명적 사건의 하나이다. 따라서 인류는 오래 전부터 불을 신성시하여 왔다. 부엌은 불을 다루는 장소이므로 불의 신인 조왕신을 부엌에 봉안하여 숭상하였다. 우리나라에서 조왕신은 산신과 함께 대표적인 토속신으로 19세기 이후에 등장한다. 조선후기 불교신앙이 대중화되면서 민간신앙과의 습합 양상이 두드러진다. 특히 신중신앙과 결합하여 산신, 조왕신 등의 토속신들이 19세기 신중도에 등장하기도 하며, 또한 독립된 탕화로 제작되어 부엌에 봉안되기도 한다.

조왕은 화면 가득히 장중한 모습으로 의자에 앉아 있는데 원유관과 곤룡포를 갖추어 입은 제왕의 모습이다. 왼손으로는 오색목편이 꽂혀있는 통을 부여잡고 있으며 오른손은 의자의 팔걸이를 잡고 있다. 얼굴은 둥글고 수염이 길게 난 노인으로 인자한 인상이지만 굳게 다문 입, 의자 팔걸이를 부여 잡은 손과 긴장한 신체에서는 강인함이 드러나 보인다. 이마와 입가, 눈 밑 등에 주름과 음영을 표현하여 사실적인 입체감을 표현하였다.

조왕의 왼쪽에는 양손으로 음식이 담긴 그릇을 조왕에게 바치고 있는 공양모가 서있고, 오른쪽에는 땔나무를 마련해 오는 것이 임무인 역사가 도끼를 어깨에 메고 서있다. 다리를 벌리고 서서 오른 손을 앞으로 내밀어 검지를 세우고 있어 마치 무엇인가를 가리키며 설명하고 있는 듯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이들 뒤로 커튼 밖으로는 일렁이는 수파문이 가득한 바다와 수평선 좌우에 큼직한 해와 달이 떠있는 모습이 보인다. 하늘에는 뭉게구름을 열개 표현하였다. 해와 달은 곡물생장과 식생활에 필요하여 조왕신에 그려지는 도상 특징의 하나이다.

조왕과 역사상 등 인물의 얼굴 표현은 섬세하고 사실적으로 묘사되어 있는데 특히 역사상은 초상화를 보는 듯하다. 그가 입고 있는 상의는 청색인데 채색을 일정하게 한 것이 아니라 열개 칠하고, 주름을 따라 바림효과를 강조하여 입체감을 표현하였다. 전반적으로 조왕을 제외한 복식과 하늘과 바다 등 자연 표현은 원색이 아닌 몇가지의 색을 조채하여 중간색을 사용하였고, 채색 후 일부분에 물감을 빼내듯이 열개 처리하여 바림 효과를 주어 입체감을 표현하고자 하는 노력이 보인다. 커튼도 황갈색 바탕에 도안적인 초화문을 표현하였는데 전통불화에서 볼 수 없던 현대적인 문양이다.

이 조왕도는 보응문성(普應文性)이 제작하였다. 문성은 조선후기 계룡산과 화승인 금호약효(錦湖若效)의 제자로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전반까지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그리고 서울에 이르기 까지 매우 왕성하게 활동하여 수많은 불화를 제작한 근대기의 대표적인 불화승이다.

이 조왕도는 20세기 불화임에도 필력과 표현력이 우수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으며, 전통 불화의 기법에 현대화적인 기법을 응용하여 제작한 새로운 양상을 보여주는 불화로 판단된다.

[화기]

昭和十三年陰閏七月二十九日仍奉于興天寺寂照庵
證明東雲明龍 誦呪法虛圓惺 畫師普應堂 文性 供司廣昊
施主

坤命庚午生宋氏 淸信女癸酉生宋氏林覺 淸信女丁亥生宋氏金剛慧
 淸信女乙亥生宋氏普明心 坤命丙申生朴氏 奉母戊寅生文氏
 長子辛丑生權寧一 坤命庚子生白氏 童子己巳生權五伯 童子己巳生丁炳贊
 三綱
 住持金昌圓 事務全晴雲 書記趙昌俊
 化主 丁芸成

조왕도는 대부분 19세기 이후에 제작되었으나 의외로 전존 작품이 많지 않다. 흥천사 조왕도는 이음매가 없는 폭이 넓은 정방형의 면바탕에 그렸다. 화면이 조금 찢긴 곳이 있고 두광 등의 녹색 안료가 탈락되었으며 촛농이 묻어 있으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편이다. 뒷면에는 배접한 종이가 떨어져 있어 보수처리가 요망된다. 보채가 가해지지 않고 원형이 잘 유지되어 있다.

20세기 전반기(1938년)에 제작된 불화이나 전반적으로 전통불화의 도상과 양식에 현대적 표현을 가미하여 새로운 양상의 불화양식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시대상을 반영한다고 생각된다. 제작자인 문성은 근대기를 대표하는 화승으로 현재 활동하는 불화가들은 대부분 그의 문하에서 맥을 잇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근현대 불화의 화풍을 이어주는 자료적 가치가 있는 작품으로 판단된다. 이 조왕도는 연대가 오래되지 않는 것으로 기년이 확실한 조왕도가 의외로 드물다는 점에서도 지정하여 보존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사진 자료>



<붙임>

서울특별시 문화재자료 지정을 위한 조사보고서

■ 약수사 지장시왕도

관악산 남쪽에 위치한 약수사는 현재 대한불교 조계종의 직할사찰이다. 산이 높지는 않으나 절 옆으로 수량이 비교적 풍부한 계곡을 끼고 있다. 『봉은사본말사지(奉恩寺本末寺誌)』(1943년 안진호(安震湖)편찬)에 의하면 약수사는 1840년경 처사 김모씨가 모옥(茅屋) 3칸을 지어 창건하였다고 하며, 1880년 명성황후(明成皇后)의 후원으로 법당을 지었다. 1923년 화재가 발생하여 당시 주지인 최영원(崔永源)스님이 법당을 중건하였고, 1934년 칠성각을 중건하였다고 한다. 이후 1970년 묘희(妙喜)스님이 대웅전을 중수하고 1998년 설법전을 건립하였다.

지장시왕도는 대웅전의 후벽 좌측에 봉안되어 있다. 장황시 화기의 일부가 잘려 원래의 봉안처를 알수는 없지만, 『봉은사본말사지』에도 계은 봉법(繼恩 奉法)이 1914년 조성한 지장탱이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1943년 이전부터 약수사에 봉안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지장시왕도는 면바탕에 그려졌다. 조선시대 말기부터 불화의 바탕재로 면이 많이 사용되었다. 화면의 왼쪽에서 95.2cm 위치인 천녀의 얼굴부분에서 화폭을 이어 꽤맨 바늘땀이 있다.

정방형의 화면에 지장보살을 중심으로 협시인 도명존자와 무독귀왕, 그리고 시왕, 판관, 녹사, 천녀 등 권속들이 3단으로 좌우에 배치되어 있다. 중앙의 지장보살은 연꽃대좌에 앉아 양손으로 투명한 보주를 감싸고 있는데, 이러한 손모양은 19세기 이후 지장보살도에서 흔히 보이는 자세이다. 광배는 모두 원형이며, 신광에는 조선말기에 특히 유행한 광선문양이 표현되어 있다. 지장보살의 머리는 성문비구형(聲聞比丘形)이며 원만하고 적정한 얼굴에 이목구비가 단정하게 묘사되어 있다. 시왕과 녹사 등의 권속들은 주름과 음영 표현으로 웃거나, 놀라거나, 인상을 찌푸리는 등 다양한 표정을 연출하고 있다. 시왕은 양손으로 각기 홀(笏)을 잡고 있는데 그 안에 자신의 이름(태삼송제디왕 등)이 한글로 적혀있다. 채색은 적색이 주조색이며 얼굴 및 옷주름 등 필선은 갈끔하고 명료하다. 두광 외연의 청색과 내부의 녹색 부분에 습기로 인한 얼룩 외에 대체로 보존 상태는 양호한 편이다. 작은 규모이지만 구도 및 각 존상의 모습 등 전통적인 지장시왕도의 도상을 계승하고 있으며, 조선 말기 경기도 지방 불화의 양식을 잘 반영하고 있는 등 20세기 불화 중 우수한 작품으로 볼 수 있다.

화기에도 있듯이 이 불화는 계은 봉법(繼恩奉法)과 한곡 긍법(漢谷肯法)이 제작하였다. 봉법은 19세기 후반부터 금보암 신중도(1866), 경선 응석(慶船 應釋)과 함께 개운사 괘불도(1879) 등 수십점의 불화를 제작하였으며, 긍법 역시 수화승 동호 진철(洞湖震徹)과 함께 전등사 현왕도, 응석과 함께 남양주 홍국사 신중도(1883) 등 많은 불화를 제작한 경기도 불화의 화풍을 주도한 대표적 화승들이다.

【 書記 】

京畿道始興郡三〇〇
大正三年甲寅陰十月〇
一軸奉安于 緣〇〇
證明淵擬淨絢
誦呪比丘元成

金魚繼恩奉法
 片手漢谷肯法
 供司比丘奉善
 鐘頭比丘法成
 別座比丘周善
 都監月峯雲起
 化主信女丙午生白氏
 信女己卯生金○
 施主秩信女癸卯○○○
 信士癸卯生咸○
 長子辛未生咸○
 乾命戊午生方○
 信女丙寅生金○
 乾命甲申生○○
 信女庚戌生金?
 信女辛酉生安○
 信女壬申生方○
 信士任子生林?○

바탕재는 기존 알려진 비단이 아니라 폭이 95.2cm 내외의 면이다. 두광 일부에 얼룩이 있고, 표면에 약간의 긁힘과 물감이 묻어 있으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상태로 보존되어 있다. 가채 등이 없고 원형이 잘 유지되어 있다. 일제강점기에 제작된 불화이나 전통 불화의 도상을 계승하고 있으며, 필선이나 채색 등의 화풍도 20세기 전반기 불화 중 우수한 작품으로 판단되어 문화재자료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진 자료>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40호

강북구 미아동 소나무협동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강북구 미아동 791-2118번지 일대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의거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같은 법 제4조 제6항,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구역지정사유 : 대상지는 노후된 단독·다가구주택이 밀집된 지역으로 주민참여를 통해 마을정주 환경개선 및 마을공동체가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 물리 및 사회·경제적 통합재생을 추진하고자 정비구역을 지정함

2018년 2월 19일

서울특별시

1. 정비구역의 지정

가. 정비구역의 명칭 : 강북구 미아동 소나무협동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

나. 정비구역 지정 조서

구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강북구 미아동 소나무협동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강북구 미아동 791-2118번지 일대	-	증)143,251	143,251	-

다. 정비계획

1)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143,251	-	143,251	100.0	
주택용지	소계	115,510	감)318	115,192	80.4	
	주택용지	115,510	감)318	115,192	80.4	
공동이용시설	소계	-	증)318	318	0.2	
	공동이용시설	-	증)318	318	0.2	
정비기반시설	소계	27,741	-	27,741	19.4	
	도시계획도로	9,813	-	9,813	6.8	
	공원	662	-	662	0.5	
	공공공지	430	-	430	0.3	주차장 중복결정(신설)
	사회복지시설	383	-	383	0.3	
	사회복지시설, 주차장	554	-	554	0.4	
	공공공지, 주차장	2,991	-	2,991	2.1	
	현황도로	12,908	-	12,908	9.0	

2) 용도지역·지구 결정 조서(변경없음)

가) 용도지역 결정조서(변경없음)

□ 용도지역 결정조서(변경없음)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합계	143,251	-	143,251	100.0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143,251	-	143,251	100.0	

나) 용도지구 결정조서(변경없음)

□ 조망가로미관지구 결정조서(변경없음)

구 분	도면표시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치	면적(㎡)	연장(m)	폭원(m)	최초결정일	비 고
기정	-	삼양로 우이동길	조망가로 미관지구	수유동 279-3(4.19길)~ 미아동 1348-3(솔샘길)	93,300 (4,028)	3,130	양측15	서고제224호 (1991.7.19.)	

※ 면적 내 ()는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 내 사항임

□ 최고고도지구 결정조서(변경없음)

구 분	도면표시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치	고도제한내용	면적(㎡)	최초결정일	비 고
기정	-	북한산주변	최고 고도지구	강북구 미아1·2동, 수유1·2·5·6동 일대 도봉구 도봉1동, 방학2·3동, 쌍문1동 일대	20m이하 (완화시 28m이하)	3,557,000 (143,251)	서고제404호 (1990.12.14)	

※ 면적 내 ()는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 내 사항임

3) 도시계획시설 결정 조서

가) 도로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규 모				기능	연장(m)	위 치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점	종점				
기정	소로	2	8	8	-	105	미아동 791-2103	미아동 791-2092	-	-	서고제354호 (1990.10.31.)	-
기정	소로	3	-	6	-	625	미아동 749-5	미아동 791-1573	-	-	-	-
기정	소로	3	-	6	-	85	미아동 835-14	미아동 791-2106	-	-	서고제1993-370 호 (1993.11.25.)	-
기정	소로	3	-	6	-	30	미아동 835-24	미아동 835-15	-	-	강고제1997-86호 (1997.10.23.)	-
기정	소로	3	-	6	-	160	미아동 791-2107	미아동 791-2114	-	-	-	-
기정	소로	3	-	4	국지 도로	11	미아1동 748-35	미아1동 760-95	-	-	강고제2006-23호 (2006.4.20.)	-
기정	소로	3	-	4	국지 도로	29	미아1동 748-19	미아1동 745-111	-	-	강고제2006-23호 (2006.4.20.)	-
기정	소로	3	-	4	국지 도로	28	미아1동 748-26	미아1동 748-32	-	-	강고제2006-23호 (2006.4.20.)	-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고시문을 기준으로 작성

나) 공공공지·주차장·사회복지시설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기정	-	공공공지 · 주차장	-	미아동 748-26번지외 32필지	2,991	-	2,991	강고제2006-23호 (2006.4.20.)	
기정	-	사회복지시설 · 주차장	-	미아동 749-25번지외 4필지	554	-	554	강고제2006-23호 (2006.4.20.)	
기정	-	사회복지시설	-	미아동 749-24번지외 3필지	383	-	383	강고제2007-95호 (2008.1.3.)	
기정	-	공공공지	-	미아동 791-1974 외 4필지	430	-	430	강고제2004-96호 (2004.12.6.)	시설중복결정 -지상 : 공공공지 -지하 : 주차장
신설	-	주차장	-	미아동 791-1974 외 4필지	-	증)430	430	-	

□ 주차장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주차장	- 신설(공공공지·주차장 중복결정) - 위치 : 미아동 791-1947 외 4필지 - 면적 : 430㎡	대상지 내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공공공지의 중복결정

다) 공원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기정	-	공원	도시자연공원	미아동 1354-10번지 일대	32,283	-	32,283	-	구역내 662㎡

4)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구분	명 칭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신설	주민공동이용시설	미아동 745-120외 2필지	-	증) 318	318	※ 설치계획(규모, 시행방법 등)은 설계 및 시공과정에서 결정 예정

5) 건축물의 용도 및 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

가)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정비개량계획(동)					비 고
	명칭	면적 (㎡)	명칭	면적 (㎡)	계	존치	개수	철거 후 신축	철거 이주	
신설	강북구 미아동 소나무협동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143,251	-	-	906	906	-	-	-	-

□ 지원 계획

대상건축물	정비·개량계획	지원계획수립	비고
906동	존치 (신축, 개보수 등)	- 서울특별시 주택개량·신축비용 융자지원제도 적용 - 서울특별시 주택·건물 에너지 효율화사업(BRP) 융자지원 제도 적용	-

※ 서울시 관련부서의 지원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나) 건축물의 주용도·용적률·높이·층수에 관한 계획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주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m) 층수(층)	비고
	명칭	면적(㎡)	명칭	면적(㎡)						
신설	강북구 미아동 소나무협동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143,251	가구1	115,192	미아동 791-2118 일대	주택 및 근린생활	60% (관계법령에 따름)	200% (관계법령에 따름)	20m이하 (완화시 28m이하)	제2종 일반주거 지역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심의완화 사항			-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 가구는 주거환경관리구역 면적에서 정비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을 제외하고 산정함.

6)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구분	계획내용
환경보전 (생활환경)	- 소규모 쓰레기집하장 설치 - 주민공동이용시설 내 1개소 설치 - 주민협의체 환경분과를 중심으로 마을청소 등 주민활동 장려 - 옥상·벽면녹화, 쿨루프 등을 권장하여 저탄소 에너지자립마을 유도
재난방지	- 보이는 소화기 및 태양광 조명블록 설치 - 소방차량 진입 불가지역에 보이는 소화기함 설치(30개소) - 비상소화장치함 인지성 확보를 위해 태양광 조명블록 설치(10개소) - 결빙방지시설 설치 - 겨울철 주요 경사로의 보행안전성 강화를 위해 염수분사장치 설치(8개소) - 노후불량한 공·폐가 철거 - 붕괴 위험이 있는 공·폐가 철거를 통한 재난 방지(5개동)

7) 정비사업 시행계획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예정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하는 예상세대수	비고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또는 확대	구역지정 고시일로부터 3년 이내	강북구청장	해당사항 없음	-
주택의 보전·정비·개량	계획 수립 이후	토지등소유자		-

8)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구분	계획내용	비 고
교육환경 현황	• 대상지 북측으로 초등학교 1개소, 남서측으로 초등학교 1개소가 인접 • 사업대상지의 대부분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해당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계획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해당되는 지역은 관련법령에 따름	

9) 정비구역의 분할 또는 결합 시행 계획 : 해당없음

- 주거환경관리사업 대상지로 결정 이후, 단일 대상구역에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해당사항 없음

10)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주택수급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 주민 스스로 기존주택을 정비·개량·보존하는 사업방식으로 해당사항 없음

11) 세입자 주거대책 : 해당없음

- 주민 스스로 기존주택을 정비·개량·보존하는 사업방식으로 해당사항 없음

12)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계획

구분	계획내용	계획실현방안
자연적 감시	• 보행을 통한 자연감시 기능을 높이기 위한 노후보안등 교체(할로겐 전구→LED) 및 태양광 문주등 설치 • 담장은 주변감시와 골목길의 활용성 등을 고려하여 투시형 또는 낮은 높이의 담장 설치를 권장함	• 노후 보안등 교체 및 태양광문주등 설치 • 건축디자인가이드라인 적용
영역성 강화	• 노후되고 위험한 공간의 미관을 개선하여 영역성 강화 및 활용성 증대 • 골목길 등 주요지점에 안내판을 설치하여 보행자 인지도 제고	• 폐가 5동 철거 후 텃밭 조성 • 마을입구 조성 6개소 • 화단조성 5개소
활동의 활성화	• 주요 골목길을 특화가로로 정비하여 보행 활동 활성화 유도 •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주민 접촉 및 교류 증대 유도	• 마을특화가로 조성 • 주민협의체 조직을 통한 공동체 강화
유지관리	• 주민협의체의 지속적 활동을 통해 공동이용시설의 운영 및 마을환경의 자체적 유지 관리 유도	• 주민협의체 조직을 통한 마을환경 관리
방법용 CCTV와 비상벨 설치	• 마을 내 범죄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감시의 효율성(감시범위, 주변인지도 등)을 고려하여 CCTV 및 비상벨 설치 - 방법용 CCTV는 위치번호를 표시하여 위험시 정확하고 신속한 위치 제공	• CCTV 총 23개소 운영 - 기존 12개소+추가 11개소
커뮤니티시설 조성	• 지역 공동체 활동을 위한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여 방법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성	• 주민공동이용시설 1개소 설치

13) 인구 및 주택의 수용계획 : 해당사항 없음

- 주민 스스로 기존주택을 정비·개량·보존하는 사업방식으로 해당사항 없음

14) 역사·문화자원의 보전 및 활용계획 : 해당사항 없음

- 주민 스스로 기존주택을 정비·개량·보존하는 사업방식으로 해당사항 없음

15) 주민 공동체 활성화 방안

구분	계획내용	비고
주민공동체 운영위원회 구성	• 관련법령에 의거 규정장의 승인을 받아 구성 (예정)	-
마을공동체 운영계획	• 주민역량 강화를 위한 사례답사, 교육 등을 실시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발굴 및 운영계획 수립 (서울시 : 지역재생활동가 파견 등)	-

16)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 : 해당사항 없음

- 주민 스스로 기존주택을 정비·개량·보존하는 사업방식으로 해당사항 없음

17) 임대주택 및 소형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 해당사항 없음

- 주민 스스로 기존주택을 정비·개량·보존하는 사업방식으로 해당사항 없음

18) 기존 수목의 현황 및 활용계획 : 해당사항 없음

- 주민 스스로 기존주택을 정비·개량·보존하는 사업방식으로 해당사항 없음

2. 관계도면 : 붙임참조

※ 첨부된 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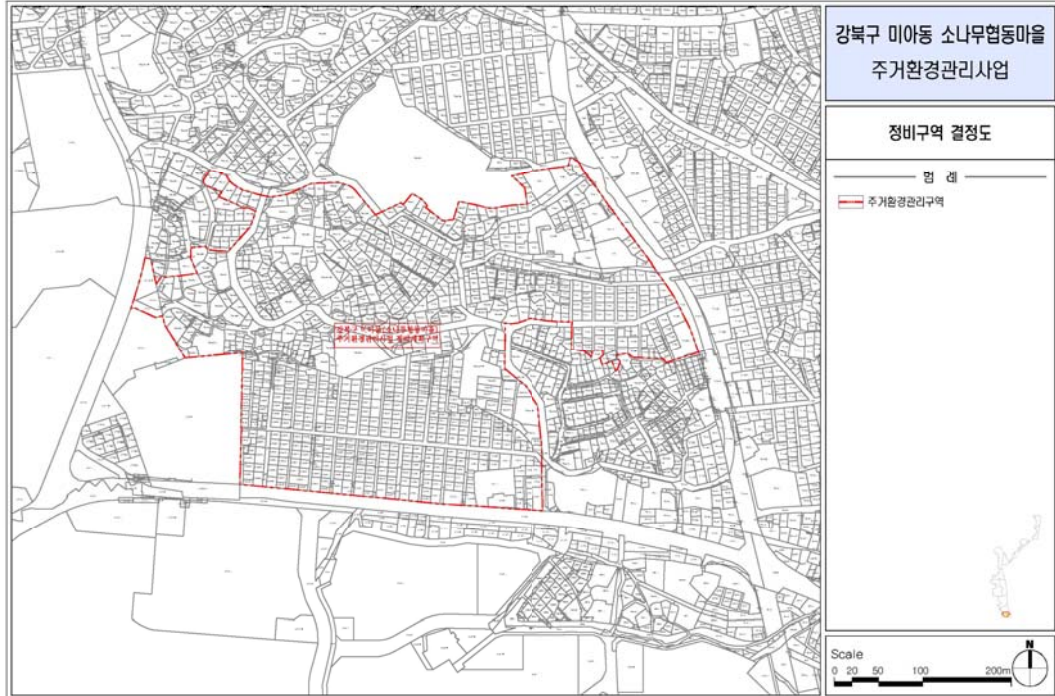
3. 고시 관련된 자세한 세부내용은 주민들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주거환경개선과) 및 강북구(도시재생과)에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습니다.

4. 문의처 : 1) 서울특별시 주거환경개선과(담당자 윤영준 / ☎ 02-2133-72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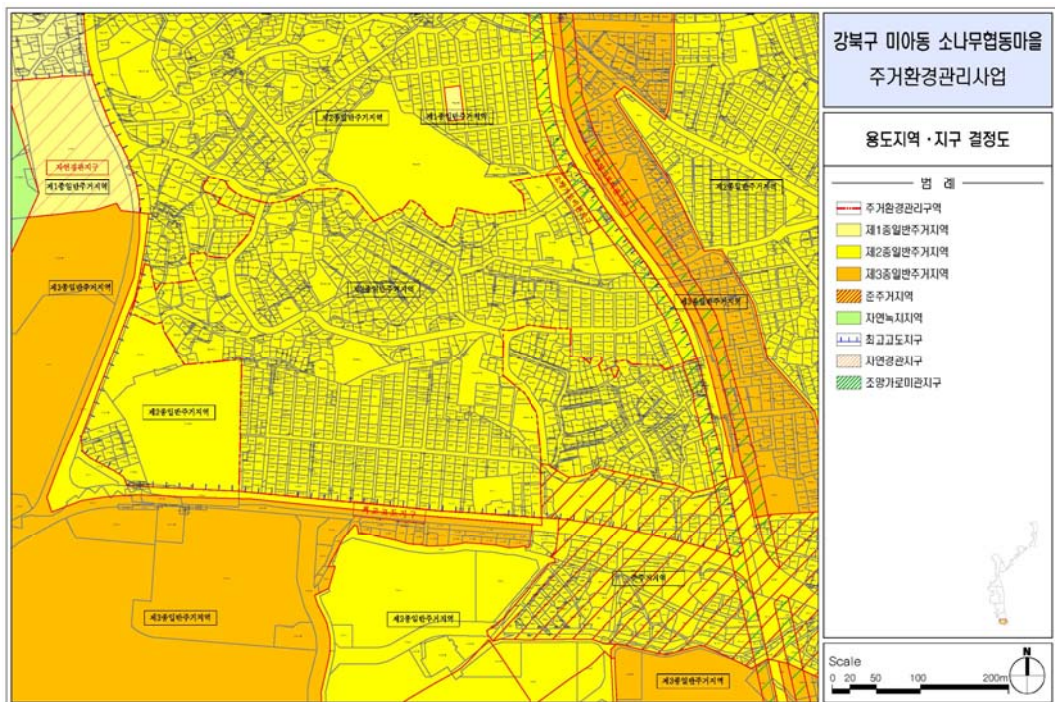
2) 강북구 도시재생과(담당자 조호현 / ☎ 02-901-2572)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 게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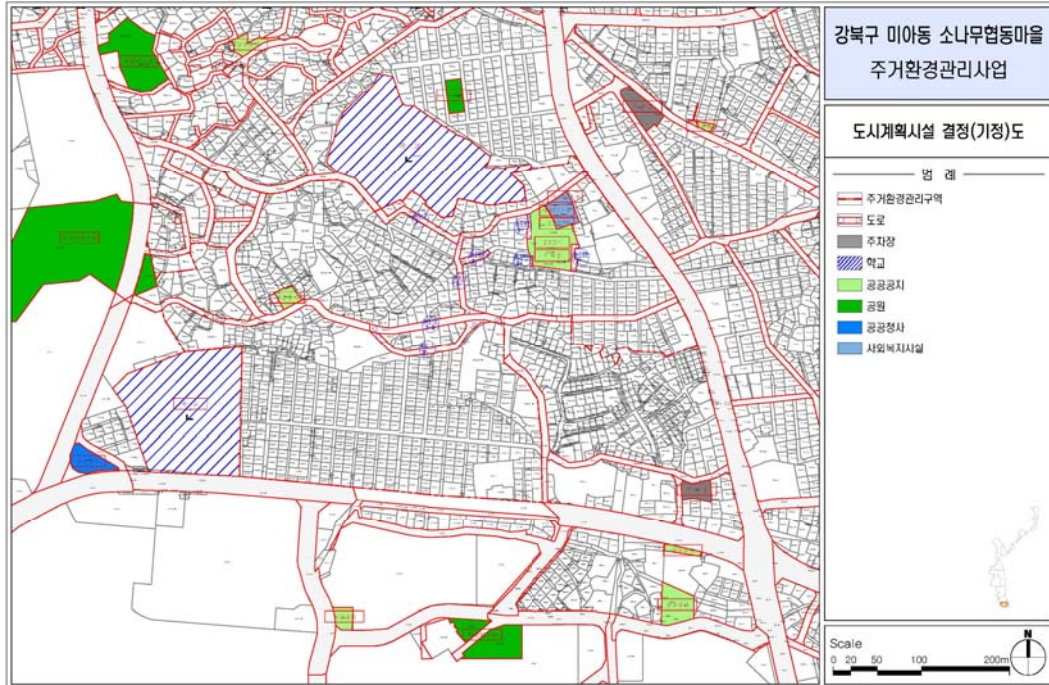
■ 정비구역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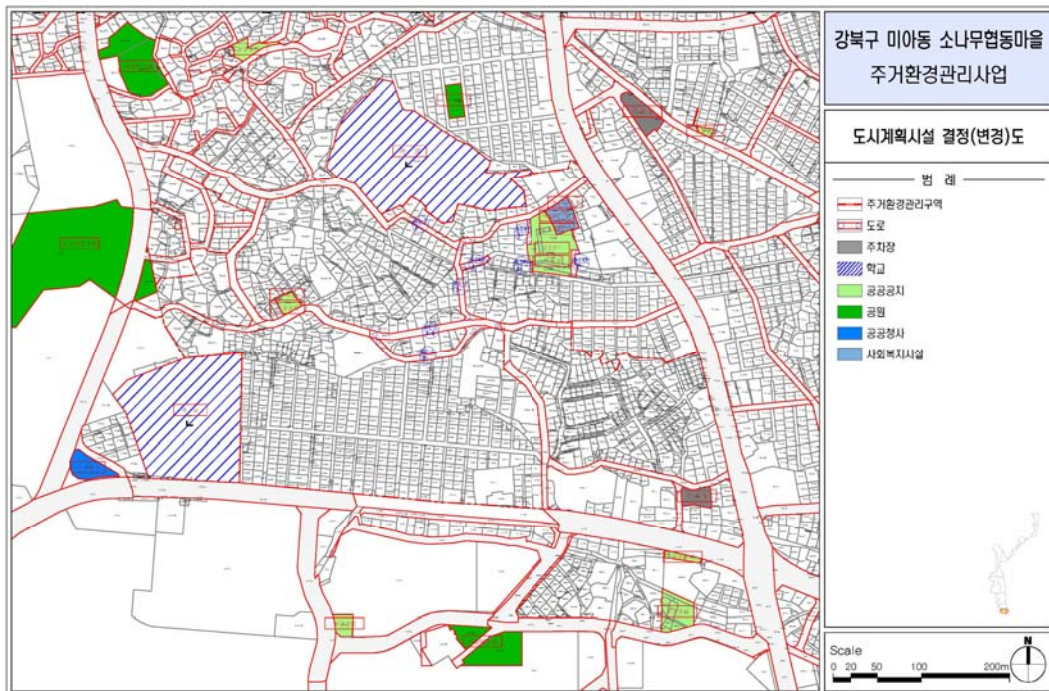
■ 용도지역·지구에 대한 정비계획 결정도(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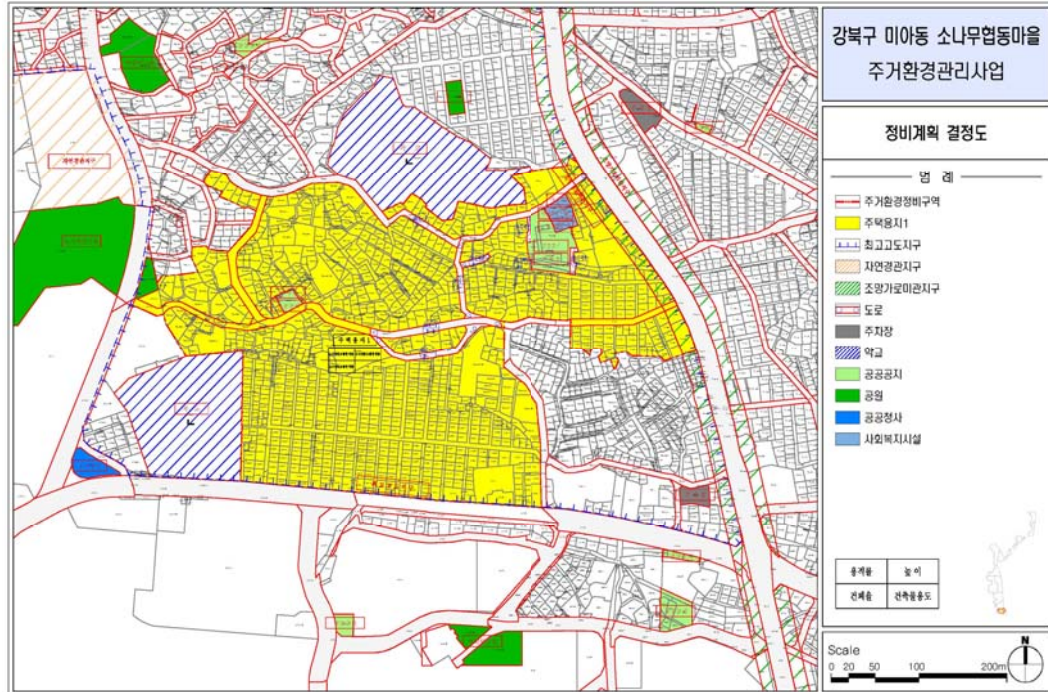
■ 도시계획시설 결정(기정)도



■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도



■ 정비계획 결정도



■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종합도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41호

보라매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건설부고시 제1986-265호(1986.6.20.)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 2016-6호(2016.1.7.)로 공원조성계획 결정된 보라매근린공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 16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8년 2월 19일

서울특별시장

1. 결정취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규정에 의한 보라매근린공원조성계획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공원내 지적장애인복지관 승강기 설치로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확보하고 배드민턴장 등의 시설개선을 통한 시민들에게 편안하고 쾌적한 공원 환경을 제공하고자 함

2. 위 치 : 서울시 동작구 신대방동 395번지 일대

3. 면 적 : 413,352㎡

4. 조성계획결정 조서 및 도면 : 따로 붙임

※ 첨부된 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5. 열람장소

서울특별시 공원조성과(☎ 2133-2075) 및 동부공원녹지사업소 시설과(☎ 2181-1157)에서 관련 도서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보라매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 조서

1. 총괄표 (위치 : 서울시 동작구 신대방동 395번지 일대)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시설면적 증감)	
		부지면적 (㎡)	시설면적 (㎡)	동수 (동)	바닥면적 (㎡)	연 면 적 (㎡)	공작물 (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동수 (동)	바닥면적 (㎡)	연 면 적 (㎡)	공작물 (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동수 (동)	바닥면적 (㎡)	연 면 적 (㎡)	공작물 (기)		
기반 시설	계	415,141.00	163,503.08	19	14,675.62	33,228.09	87	413,352.00	163,514.88	19	14,675.62	33,228.09	87	413,352.00	163,514.88	19	14,675.62	33,228.09	87	증11.8㎡	
	소 계	57,217.94	57,217.94					57,217.94	57,217.94					57,217.94	57,217.94						
	도 로	44,699.94	44,699.94					44,594.94	44,594.94					44,594.94	44,594.94					감 105㎡ 도시계획시설 변경 (서고제2016-74호)	
	목 교	108.50	108.50					108.50	108.50					108.50	108.50						
	광 장	12,409.50	12,409.50					12,409.50	12,409.50					12,409.50	12,409.50						
조경 시 설	휴 양 시 설	2,807.55	2,431.79	2	938.97	3,264.35	14	2,807.55	2,431.79	2	938.97	3,264.35	14	2,807.55	2,431.79	2	938.97	3,264.35	14		
	유 희 시 설	2,402.27	2,402.27				9	2,402.27	2,402.27				9	2,402.27	2,402.27				9		
	운 동 시 설	29,197.73	29,197.73				24	29,305.73	29,305.73				24	29,305.73	29,305.73				24	증 108㎡	
	교 양 시 설	16,327.60	14,495.98	7	10,235.75	21,538.60	12	16,336.40	14,504.78	7	10,235.75	21,538.60	12	16,336.40	14,504.78	7	10,235.75	21,538.60	12	증8.8㎡	
	편 익 시 설	4,931.53	4,931.53	5	429.06	429.06	11	4,931.53	4,931.53	5	429.06	429.06	11	4,931.53	4,931.53	5	429.06	429.06	11		
녹지 및 기타	관 리 시 설	5,152.58	3,071.84	5	3,071.84	7,996.08	2	5,152.58	3,071.84	5	3,071.84	7,996.08	2	5,152.58	3,071.84	5	3,071.84	7,996.08	2		
	녹지	247,349.80						245,549.00						245,549.00						감 1,800.8㎡ (도시계획시설 변경 감 1,884㎡ (서고제2016-74호), 교양시설 증가 감 8.8㎡, 운동시설 증가 감 108㎡)	
	반려견놀이터	1,300	1,300					1,300	1,300					1,300	1,300						
시 설 율 (법정 40%)		(163,503.08 / 415,141.00) × 100 = 39.38%															(163,514.88 / 413,352.00) × 100 = 39.56%				
건 폐 율 (법정 10%)		(14,675.62 / 415,141.00) × 100 = 3.53%															(14,675.62 / 413,352.00) × 100 = 3.55%				

2. 시설조서

구 분	변경				전경				변경				후경				비고 (시설면적 증감)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비대면적 연면적	공작물 (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비대면적 연면적	공작물 (기)			
합계			415,141.00	163,503.08			14,675.62	33,228.09	87		413,352.00	163,514.88			14,675.62	33,228.09	87	증 11.8㎡	
기반시설	소계		57,217.94	57,217.94							57,217.94	57,217.94							
	도로		전지역	44,699.94	44,699.94					전지역	44,594.94	44,594.94						감 105㎡ (도시계획시설 변경 (서고제2016-74호))	
	목교	파		108.50	108.50					파		108.50	108.50						
	보라매광장	가	신대방 395	5,428.00	5,428.00					가	신대방 395	5,428.00	5,428.00						
		나	신대방 395	6,981.50	6,981.50					나	신대방 395	6,981.50	6,981.50						
		나-1	"	(992)	(992)					나-1	"	(992)	(992)						
		나-2	"	(1,653)	(1,653)					나-2	"	(1,653)	(1,653)						
		나-3	"	(677)	(677)					나-3	"	(677)	(677)						
		나-4	"	(197)	(197)					나-4	"	(197)	(197)						
	광장	나-5	"	(556)	(556)					나-5	"	(556)	(556)						
		나-6	"	(418)	(418)					나-6	"	(418)	(418)						
나-7		"	(392)	(392)					나-7	"	(392)	(392)							
나-8		"	(796)	(796)					나-8	"	(796)	(796)							
나-9		"	(551)	(551)					나-9	"	(551)	(551)							
나-10		"	(291)	(291)					나-10	"	(291)	(291)							
소계	나-11	"	(458.50)	(458.50)					나-11	"	(458.50)	(458.50)							
			48,454.00	48,454.00				15			48,454.00	48,454.00				15			
조경시설	보림 잔디광장	다	신대방 395	23,384	23,384					다	신대방 395	23,384	23,384						
	연못· 음악분수	라	신대방 395	11,286	11,286					라	신대방 395	11,286	11,286						
	수경시설	사		2,541	2,541					사		2,541	2,541						
	(계류· 비탈분수)	사-1	신대방 395	(1,538)	(1,538)					사-1	신대방 395	(1,538)	(1,538)						
		사-2	신대방 396	(508)	(508)					사-2	신대방 396	(508)	(508)						
(연못·계류)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시설면적 증감)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비대면적 (㎡)	연면적 (㎡)	공작물 (기)	
(빗물용량)이 노 (스케이트장)	사-3	산 144-8	(495)	(495)					
	자	신대방 395	2,764	2,764					
에어파크	마	신대방 395	4,221	4,221					
	바	신대방 395	783.5	783.5					
벽천	바-1		(374)	(374)					
	바-2		(409.5)	(409.5)					
무궁화원	아	신대방 395	1,020	1,020					
	차	신대방 395	400	400					
조 경	①	전지역	(78.5)	(78.5)					
	①-1	"	(37.5)	(37.5)	목재				3
그늘시령	①-2	"	(25)	(25)	목재				(1)
	①-3	"	(16)	(16)	목재				(1)
필각정자	②	전지역	(35.5)	(35.5)	목재				(1)
	②-1	"	(14.8)	(14.8)	목재				2
데크	②-2	"	(20.7)	(20.7)	목재				(1)
	④	신대방 395	2054.5	2054.5					(1)
육각정자	④-1	신대방 395	(219)	(219)					5
	④-2	신대방 395	(1524)	(1524)					(1)
원두막	④-3	산 143	(85.5)	(85.5)					(1)
	④-4	산 143	(126)	(126)					(1)
사각파고라	④-5	산 144-8	(100)	(100)					(1)
	④	산 143	(15)	(15)					1
	⑤	신대방 395	(23)	(23)					1
	⑧	전지역	(60.75)	(60.75)					3
	⑧1	"	(20.25)	(20.25)					(1)
	⑧2	"	(40.5)	(40.5)					(2)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시설면적 증감)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비대면적 연면적	공작물 (가)	
소 계			2,807.55	2,431.79			938.97 3,264.35	14	
공원휴게소	1	신대방 395	451.70	115.73	철근 콘크리트 지상 1	지하 1	115.73 212.16		
휴 게 소	카		1,338	1,338					
	카-1	"	(133)	(133)					
	카-2	"	(285)	(285)					
	카-3	신대방395	(79)	(79)					
	카-4	"	(232)	(232)					
	카-5	"	(126)	(126)					
	카-6	산 143	(400)	(400)					
임간휴게소	카-7	신대방395	(83)	(83)					
로프명석	타	신대방395	56	56					
	타-2	"	(56)	(56)					
장 의 자	⑥	시설부지내						1	
평상	③	전지역						1	
평의자	⑩	신대방 395	(9)	(9)				1	
	⑪	전지역						11	
남부노인 복지관	2	봉천동 726-3	961.85	922.06	철근 콘크리트 슬라브	지하 1층, 지상 2층	823.24 3,052.19		
소 계			2,402.27	2,402.27				9	
유아 놀이공간	나	신대방395	2,402.27	2,402.27				9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시설면적 증감)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비대면적 연면적	공작물 (기)	
소 계			29,197.73	29,197.73				24	증 108㎡
테니스장	가	신대방395	3,811.5	3,811.5				7	
X-Game World	다	신대방395	880	880				1	
체력단련장	라	신대방395	2,307.23	2,307.23					
	라-1	신대방395	(727.23)	(727.23)					
	라-2	신대방395	(630.00)	(630.00)					
	라-3	산 143	(89.00)	(89.00)					
	라-4	산 143	(151.00)	(151.00)					
	라-5	신대방395	(344.00)	(344.00)					
	라-6	신대방395	(88.50)	(88.50)					
	라-7	신대방395	(173.00)	(173.00)					
체력단련장	라-8	신대방395	(24.50)	(24.50)					
	라-9	신대방395	(80.00)	(80.00)					
	마	신대방395	1,190	1,190					
	바	신대방395	7,350	7,350					
	사	신대방395	5,513.50	5,513.50					
	아	신대방395	928	928					
	자	신대방395	800	800					
	차	신대방395	1,322	1,322					
다목적 운동장 길거리 농구장	카	신대방395	360	360					
	파	신대방395	1,078.0	1,078.0					
	하	신대방395	2,992.5	2,992.5				1	
	다	신대방395	665.0	665.0					증 108㎡
	㉔	전지역						15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시설면적 증감)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기초면적 (㎡)	연면적 (㎡)	공작물 (기)
소 계			16,327.60	14,495.98			10,235.75	21,538.60	12
강 당	5	신대방395	1,979.68	657.85	철근 콘크리트 슬라브	지상 1층	657.85	657.85	
청소년화관	6	신대방 395	3,889.0	3,889.0	철근 콘크리트 리트	지상 2층	3,090.00	5,260.00	
전자도서관	7	신대방 395	1,744.00	1,744.00	라멘조 슬라브	지상 2층	819.42	2,011.02	
전시용 비행기	⑦	8개소	(1553)	(1553)					8
	⑦-1	신대방 395	(573)	(573)					(1)
	⑦-2	"	(106)	(106)					(1)
	⑦-3	"	(79)	(79)					(1)
	⑦-4	"	(95)	(95)					(1)
	⑦-5	"	(272)	(272)					(1)
	⑦-6	"	(106)	(106)					(1)
	⑦-7	"	(145)	(145)					(1)
전시용 비행기	⑦-8	"	(177)	(177)					(1)
	8	신대방395	4,586.00	4,586.00	지하 1층, 지상 3층	지하 1층, 지상 3층	2,171.00	8,020.77	
시민안전 체험관									
기념탑	⑨	신대방 395	103.6	13					1
충혼탑	⑩	신대방 395	53	22					1
예술조형물	⑥	신대방 460-27	148.86	36.19					1
신재희생자 조형물	⑩	신대방 460-9	312	36.48	화강석브론즈스 테인레스틸	지상 2층			1
전시공간	15	신대방 395	392.96	392.96	지상 2층	지상 2층	392.96	413.71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시설면적 증감)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비대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 (기)
지역장애인 복지관	3	신대방395	773.76	773.76	철근 콘크리트 슬라브	지하 1층, 지상 2층	773.76	1,441.56	
	4	신대방395	2,344.69	2,344.69	철근 콘크리트 슬라브	지하 1층, 지상 2층	2,330.76	3,733.69	증 8.8㎡
소 계			4,931.53	4,931.53			429.06	429.06	11
화장실	9	전지역	757.93	757.93				429.06	
	9-1	신대방395	(131.53)	(131.53)	시멘트 벽돌조	지상 1층	(91.96)	(91.96)	
	9-2	"	(91.96)	(91.96)	시멘트 벽돌조	지상 1층	(131.53)	(131.53)	
	9-3	"	(84.91)	(84.91)	시멘트 벽돌조	지상 1층	(84.91)	(84.91)	
	9-4	"	(28.98)	(28.98)	연와조	지상 1층	(28.98)	(28.98)	
	9-5	"	(420.55)	(420.55)	철근콘크 리트조	지상 1층	(91.68)	(91.68)	
	가	"	397.00	397.00					1
	㉔	신대방395	(36)	(36)					9
	㉔-1	"	(4)	(4)					(1)
음수대	㉔-2	"	(4)	(4)					(1)
	㉔-3	"	(4)	(4)					(1)
	㉔-4	"	(4)	(4)					(1)
	㉔-5	"	(4)	(4)					(1)
	㉔-6	"	(4)	(4)					(1)
	㉔-7	"	(4)	(4)					(1)
	㉔-8	"	(4)	(4)					(1)
	㉔-9	"	(4)	(4)					(1)

구 분	변 경				전 경				변 경				후 경				비 고 (시설면적 증감)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구모	바닥면적 (㎡)	건축물(㎡) 연 면 적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구모	바닥면적 (㎡)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 (기)
관 리 시 설	약수터	타 산 143	187	187						타 산 143	187	187	187						
	주차장	나 ¹	전지역	3,589.6						나 ¹	전지역	3,589.6	3,589.6						
		나 ¹ -1	신대방 395	(2349.5)						나 ¹ -1	신대방 395	(2349.5)	(2349.5)						
		나 ¹ -2	신대방 395	(769.04)						나 ¹ -2	신대방 395	(769.04)	(769.04)						
		나 ¹ -3	"	(115.64)						나 ¹ -3	"	(115.64)	(115.64)						
		나 ¹ -4	"	(193.1)						나 ¹ -4	"	(193.1)	(193.1)						
	시계탑	나 ¹ -5	"	(162.32)						나 ¹ -5	"	(162.32)	(162.32)						
		⑤		(1.44)					1	⑤		(1.44)	(1.44)					1	
	소 계			4,761.30	2,680.56			2,680.56	7,527.58	2			5,152.58	3,071.84			3,071.84	7,996.08	2
	변전실	10	신대방395	343.30	133.20		지상 1층	133.20	166.50	10	신대방395	343.30	133.20	133.20		지상 1층	133.20	166.50	
신길 변전실	11	신대방395	747.00	131.95		지하 4층	131.95	3,603.11	11	신대방395	747.00	131.95	131.95		지하 4층	131.95	3,603.11		
관리사무소	12	신대방395	1,507.00	927.81		지하 1층 지상 2층	927.81	2,270.37	12	신대방395	1,507.00	927.81	927.81	철근 콘크리트	지하 1층 지상 2층	927.81	2,270.37		
기타	구민회관	14	신대방395	2,164.00	1,487.60		지상 1층	1,487.60	14	신대방395	2,164.00	1,487.60	1,487.60	철근 콘크리트	지상 1층	1,487.60	1,487.60		
	공원등	⑩	전지역						1	⑩	전지역							1	
	쓰레기통	⑪	전지역						1	⑪	전지역							1	
	현장근로자 대기실, 창고	16	신대방동 395	391.28		지상 2층	391.28	488.50		16	신대방동 395	391.28	391.28	철근콘크리트	지상 2층	391.28	488.50		
	녹 지		전지역	247,349.80							전지역	245,549.00							감 1,800.8㎡ (도시계획시설변경 감 1,684㎡ (서고제2016-74호), 교양시설증가 감 8.8㎡, 운동 시설 증가 감 108㎡)
반려견 놀이터	하	신대방동 395	1,300	1,300						하	신대방동 395	1,300	1,300						

3. 도로조서

- 공원시설 계획도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당초	합 계				10,784.10	44,699.94				
변경					10,742.10	44,594.94				
당초	중로	소 계			368	5,424				
당초		3	1	13	204	2,652	주진입로	공원북측경계	광장 나-1	
당초		3	2	13	32	416	진입로	광장 나-1	광장 나-2	
당초		2	3	17	30	510	진입로	광장 나-5	소로 3-6	
당초		1	1	23	47	1,081	진입로	광장 나-9	광장 나-6	
당초		2	4	15	14	210	진입로	바닥분수	보라매광장	
당초		2	5	15	21	315	진입로	보라매광장	소로3-24	
당초		3	3	12	20	240	진입로	소3-3	관리사무소	
당초		소 계			4,241.9	26,927				
당초	소로	2	1	8	41	328	보차도	광장 나-1	광장 나-4	
당초		3	29	6	179	1,074	보차도	부지경계	부지북측	
당초		2	3	10	444	4,440	보도	부지경계	광장 나-8	
당초		2	4	10	25	250	보도	산책로21	소로 2-3	
당초		3	1	6	56	336	보차도	전자도서관	광장 나- 4	
당초		3	2	4	11	44	보도	광장나-4	관리사무소	
당초		3	3	6	320	1,920	보도	광장 나- 2	광장 나-5	
당초		3	4	5	23	115	보차도	소로 3-5	청소년회관	
당초		3	5	7	67	469	보차도	광장 나-6	광장 나-5	
당초		3	6	8	60.5	484	보차도	중로 2-3	주차장-2	
당초		3	7	7	47	329	보도	구민회관	소로 3-29	
당초		3	8	4	66	264	산책로	구민회관	소로 3-29	
당초		3	9	5	125.4	627	보도	광장 나- 3	바닥분수	
당초		3	10	5	342	1,710	보도	바닥분수	소로 2-3	
당초		3	11	8	171	1,368	산책로	광장 나-6	소로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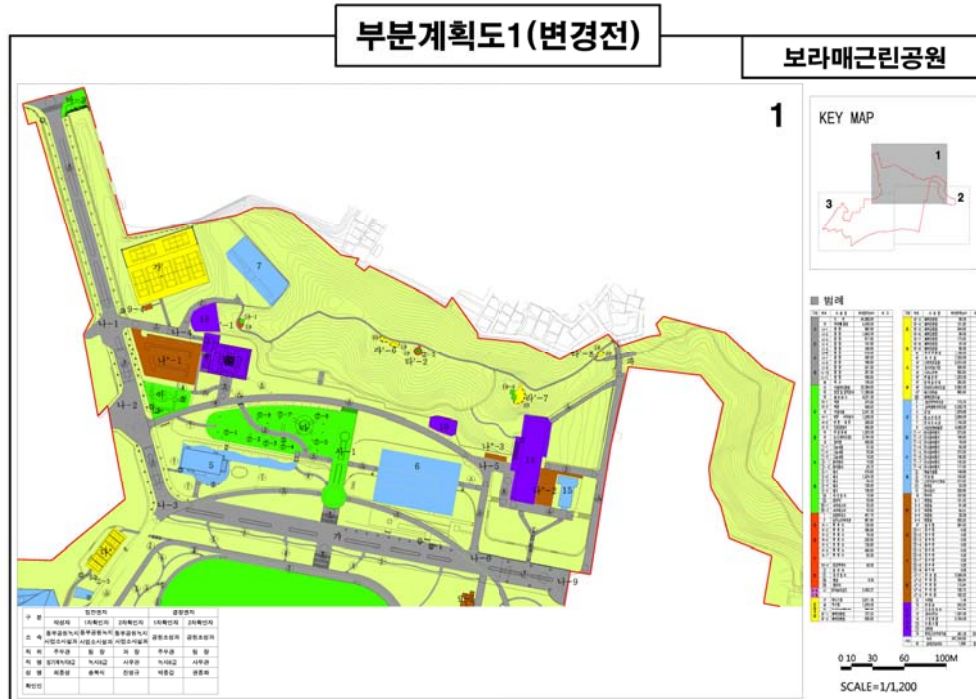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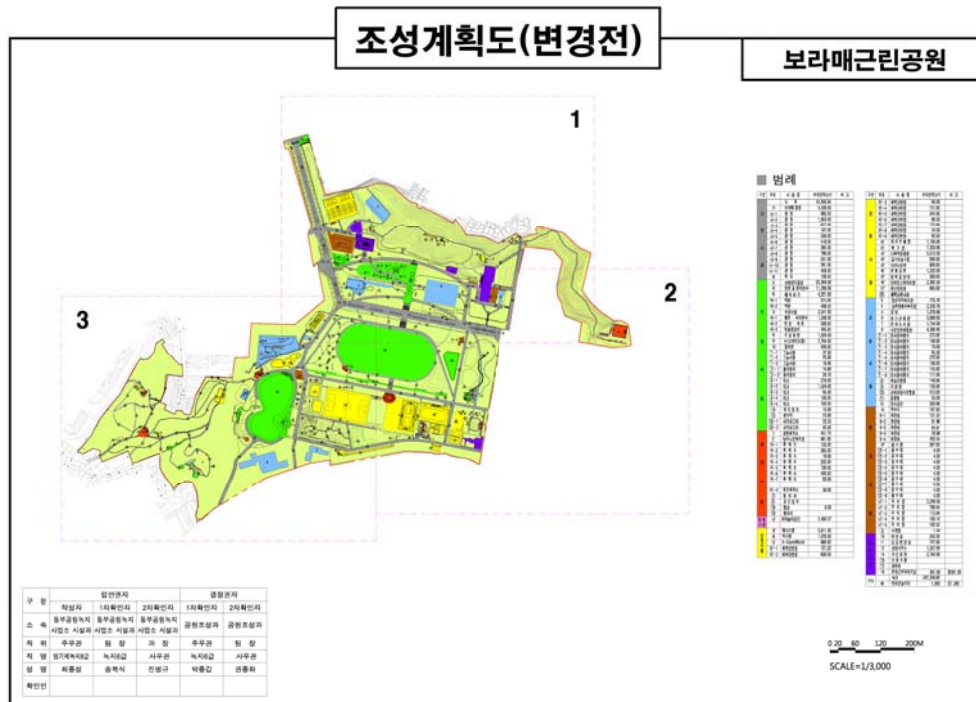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당초	소로	3	12	6	90	540	산책로	소로 2-3	소로 3-13	
당초		3	13	6	467	2,802	보도	공원 동남측경계	장미원	
당초		3	14	6	21	126	보도	공원 남측경계	소로 3-13	
당초		3	15	5	117	585	보차도	공원 남측경계	소로 3-16	
당초		3	16	5	156	780	보차도	장미원	광장 나-7	
당초		3	17	6	250	1,500	보도	광장 나-7	장미원	
당초		3	18	8	23.5	188	보차도	소로3-31	소로 3-22	
당초		3	19	6	16	96	보도	소로 3-20	장미원	
당초		3	20	8	132	1,056	보차도	소로 3-13	광장 나-8	
당초		3	22	8	152	1,216	보도	광장 나-8	광장 나-3	
당초		1	1	11.5	36	414	시설간 연결로	광장 나-2	광장 나-3	
당초		3	24	5	503	2,515	보차도	광장 나-8	소로 3-11	
당초		3	25	4	25	100	보도	산39	중3-3	
당초		3	26	5	83	415	보도	소로 3-3	소로 3-27	
당초		3	27	5	36	180	보도	에어파크	바닥분수	
당초		3	28	5	30	150	보도	바닥분수	청소년회관	
당초		3	30	4	10	40	보도	소3-3	중3-3	
당초		3	31	4	116.5	466	보차도	산책로35	소로3-18	
당초	산책로	소 계			6,174.20	12,348.94				
변경					6,132.20	12,243.94				
당초			1	2.4	38	91.2	산책로	소로 3-3	에어파크	
당초			2	4.4	13	57.2	산책로	산책로 109		
당초			3	2.5	27	67.5	산책로	테니스장 바"	소로 2-1	
당초			4	3	8	24	산책로	소로 1-1	강당	
당초			5	5	19	95	산책로	광장 나-3	강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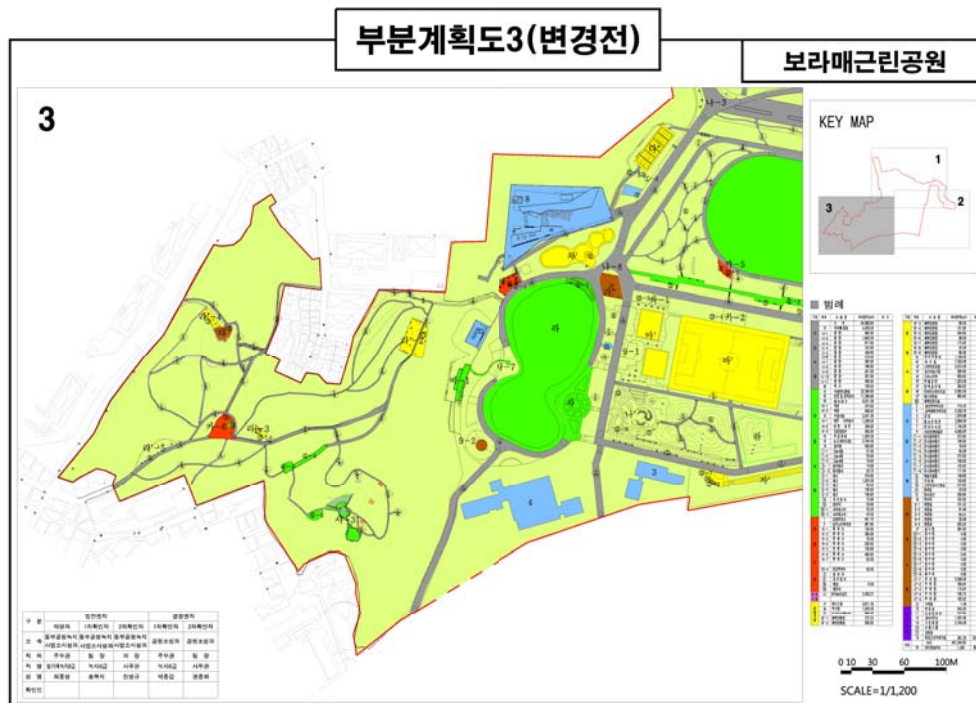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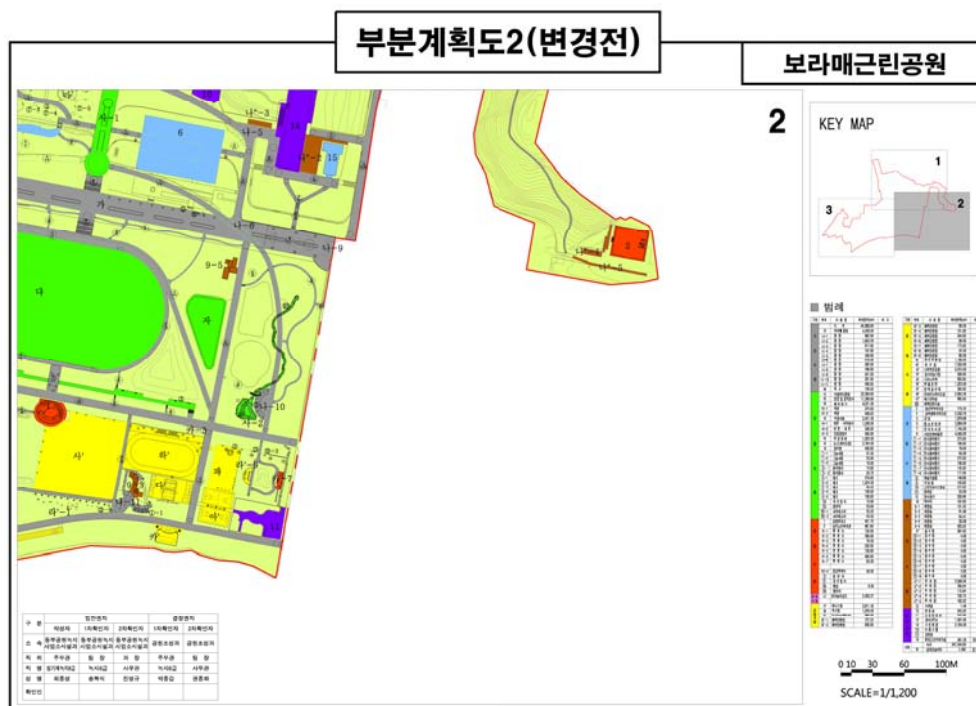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당초	산책로		6	1.5	22	33	산책로	소로 3-9	강당	
당초			7	2	55.5	111	산책로	소로 2-3	녹지	
당초			8	2	70.5	141	산책로	산책로 7	산책로 7	
당초			9	1.8	27	48.6	산책로	광장 나-11	광장 나-11	
당초			10	1.5	423	634.5	산책로	전자도서관 7		
당초			11	1.5	272.5	408.75	산책로	산책로 108	산책로 108	
당초			12	1.5	168	252	산책로	광장 나-3	중로 2-5	
당초			13	1.5	163	244.5	산책로	중로 2-5	소로 3-11	
당초			14	1.5	22	33	산책로	소로 3-24	산책로 12	
당초			15	2.5	22	55	산책로	소로 3-24	소로 3-22	
당초			16	4	178	712	산책로	산책로 21	산책로 17	
당초			17	4	129	516	산책로	산책로 16	산책로 23	
당초			18	1.5	56	84	산책로	산책로 109	구민회관 14	
당초			19	1.5	10.5	15.75	산책로	산책로 108	목교 다"	
당초			20	1.5	360	540	산책로	목교다"	주차장 나-4	
당초			21	4	120	480	산책로	산책로 23	산책로 16	
당초			22	1	12.5	12.5	산책로	휴게소카-7	녹지	
당초			23	4	178	712	산책로	산책로 17	산책로 21	
당초			24	1	8.5	8.5	산책로	화장실9-4	산책로 3	
당초			29	2	54	108	산책로	소로 2-3	소로 3-13	
당초			30	3	183	549	산책로	소로 3-20	산책로 29	
당초			31	3	61	183	산책로	소로 3-13	산책로 30	
당초			32	3	9	27	산책로	소로 3-20	장미원	
당초			33	2	12	24	산책로	소로 3-20	소로 3-17	
당초			34	1.5	67	100.5	산책로	소로 3-17	산책로 54	
당초			35	2.5	62	155	산책로	소로 3-18	신대방 460-29	
변경			35	2.5	20	50	산책로	소로 3-18	신대방 460-29	감 105㎡ (도시계획시설 변경 (서고제2016-74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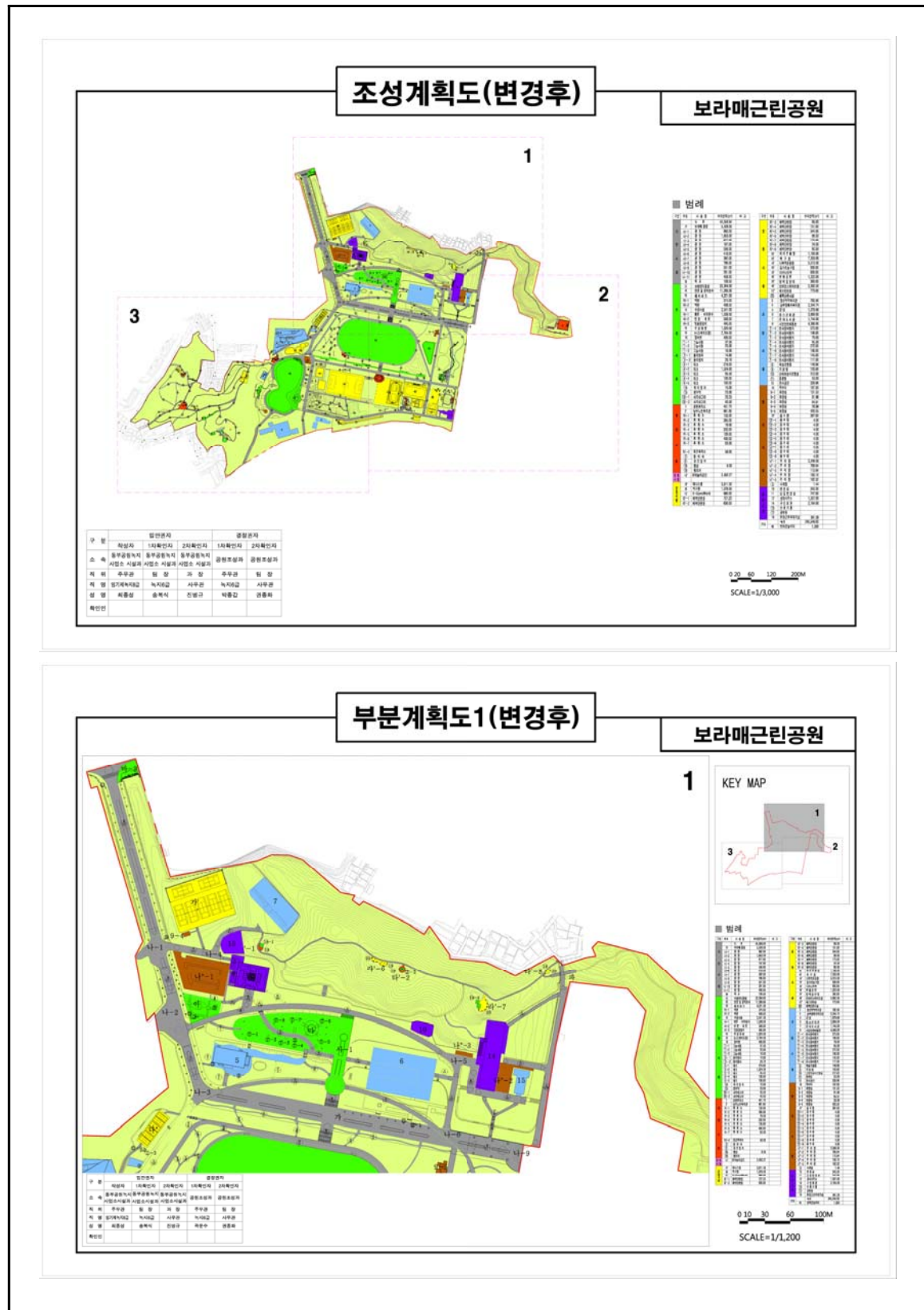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당초	산책로		36	2	29	58	산책로	산책로 35	소로 3-17	
당초			39	1.5	57	85.5	산책로	무궁화원	소로3-25	
당초			40	1.5	46	69	산책로	소로3-25	관리사무소	
당초			41	2.5	39	97.5	산책로	강당	바닥분수	
당초			42	1.5	17	25.5	산책로	소로 3-24	산책로 12	
당초			43	1.5	23	34.5	산책로	소로 3-24	산책로 13	
당초			44	2	188	376	산책로	소로 3-10	소로 3-10	
당초			45	2	9	18	산책로	공원동쪽 경계	산책로 44	
당초			46	2	31	62	산책로	소로 3-10	소로 3-11	
당초			47	2	30	60	산책로	연못	소로 3-11	
당초			48	1.5	13	19.5	산책로	데크	산책로 16	
당초			49	1.5	4	6	산책로	소로 2-3	데크	
당초			50	1.5	7	10.5	산책로	데크	산책로 21	
당초			51	1.5	13	19.5	산책로	데크	산책로 23	
당초			52	1.5	4	6	산책로	소로 2-3	데크	
당초			53	1.5	4	6	산책로	소로 2-3	데크	
당초			54	1.5	25	37.5	산책로	산책로 34	산책로 55	
당초			55	5	2.5	12.5	산책로	산책로 54	남부 수도사업소	
당초			56	1.5	24.5	36.75	산책로	산책로 55	남부 수도사업소	
당초			57	1.5	62.2	93.3	산책로	산책로 54	산책로 61	
당초			58	1.5	195.6	293.4	산책로	산책로 57	휴게공간5	
당초			59	1.5	92	138	산책로	산책로 58	산책로 58	
당초			60	1.5	60.6	90.9	산책로	산책로 58	체력단련장4	
당초			61	2.5	114.24	285.6	산책로	산책로 57	데크 4	
당초			62	3	164.6	493.8	산책로	산책로 61	휴게공간 5	
당초			63	2	15	30	산책로	산책로 62	산책로 61	
당초			64	2	65	130	산책로	휴게공간 5	산책로 76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당초	산책로		65	2	87	174	산책로	산책로 64	산책로 68	
당초			66	2	52	104	산책로	산책로 65	산책로 73	
당초			67	2	8	16	산책로	산책로 65	산책로 66	
당초			68	1.5	101.7	152.55	산책로	산책로 65	신동아 아파트	
당초			69	3	22.6	67.8	산책로	산책로 65	산책로 70	
당초			70	2	50	100	산책로	산책로 66	약수터	
당초			71	2	46	92	산책로	산책로 70	우성1차 아파트	
당초			72	1	66	66	산책로	체력단련장 4	산책로 74	
당초			73	1.5	47.8	71.7	산책로	산책로 66	산책로 74	
당초			74	1	87	87	산책로	산책로 64	산책로 72	
당초			75	1.5	71.3	106.95	산책로	산책로 73	산책로 64	
당초			76	3	110	330	산책로	휴게공간 5	부진입로	
당초			77	1.5	58	87	산책로	휴게공간 5	대천교회	
당초			78	1.5	57.2	85.8	산책로	산책로 77	산책로 76	
당초			79	1.5	46.8	70.2	산책로	산책로 77	산책로 86	
당초			80	1.5	36	54	산책로	데크 3	산책로 86	
당초			81	1	357	357	산책로	산책로 61	데크 3	
당초			82	1	34	34	산책로	산책로 81	산책로 81	
당초			83	1	10	10	산책로	산책로 81	부지내	
당초			84	1	7.8	7.8	산책로	산책로 81	부지내	
당초			85	1	3.1	3.1	산책로	산책로 81	부지내	
당초			86	1	4.4	4.4	산책로	산책로 62	체력단련장3	
당초			87	3	55	165	산책로	소로 3-6	소로 3-6	
당초			88	3.5	25	87.5	산책로	산책로 87	중로1-1	
당초			89	2	28	56	산책로	공원휴게소	축구장	
당초			90	1.5	67	100.5	산책로	소로 3-24	소로 3-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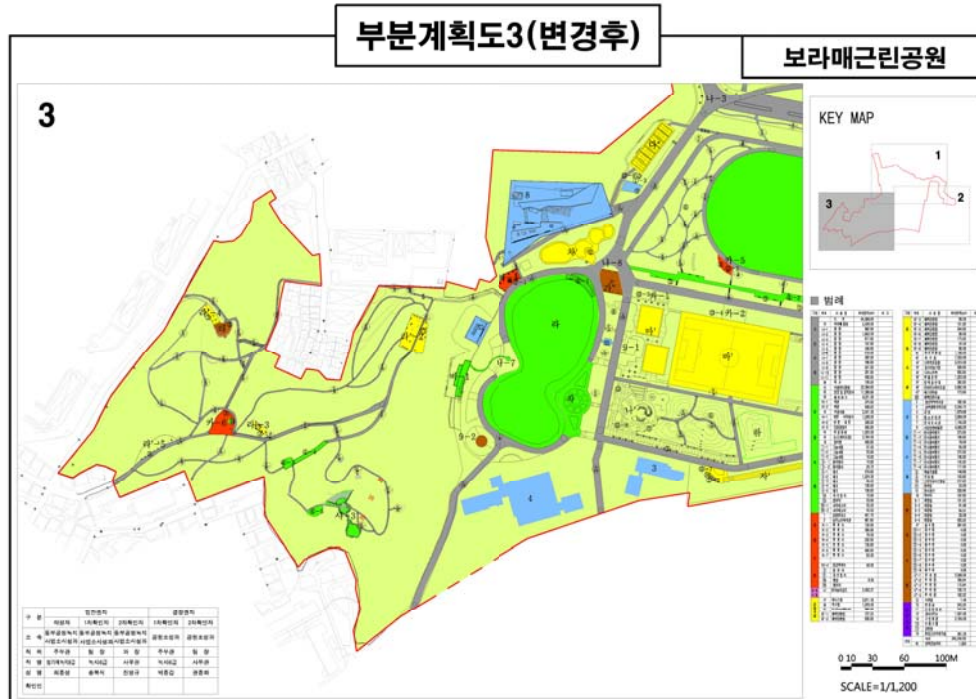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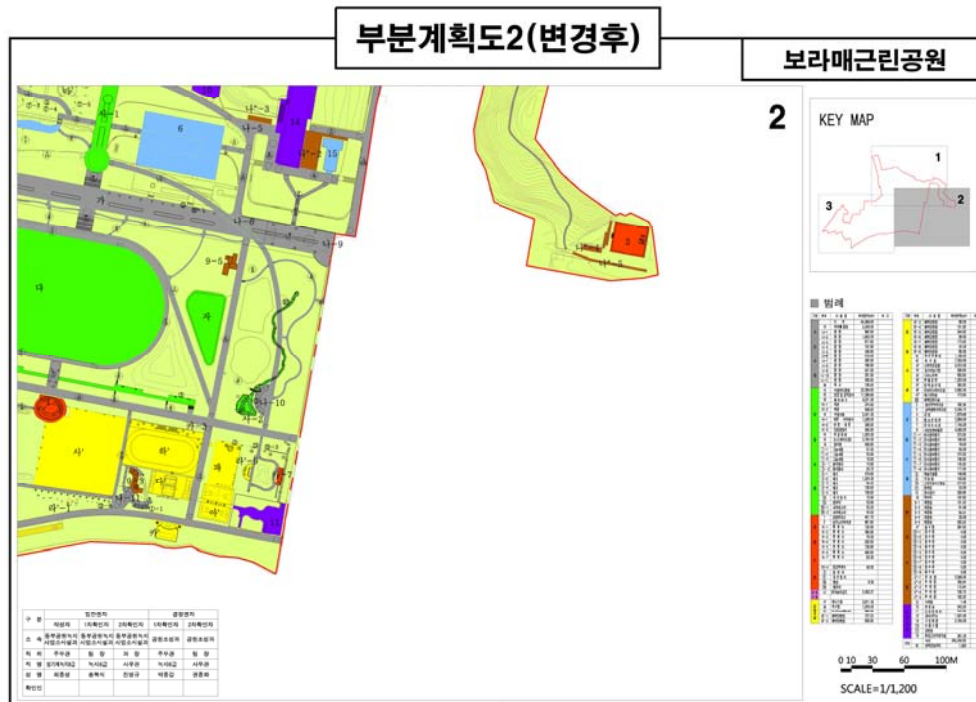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당초	산책로		91	1.5	120	180	산책로	산책로 90	산책로 16	
당초			92	1.5	13	19.5	산책로	산책로 91	소로 3-24	
당초			93	1.5	18	27	산책로	산책로 91	소로 3-24	
당초			94	1.5	8	12	산책로	산책로 91	산책로 16	
당초			95	1.5	4	6	산책로	산책로 91	소로 3-24	
당초			96	1.5	34	51	산책로	산책로 90	산책로 97	
당초			97	3	13	39	산책로	산책로 96	산책로 98	
당초			98	1.5	27	40.5	산책로	산책로 97	산책로 99	
당초			99	1.5	24	36	산책로	산책로 98	산책로 16	
당초			100	1.5	15	22.5	산책로	산책로 97	데크 2	
당초			101	1.5	18	27	산책로	산책로 97	산책로 16	
당초			102	1.5	45.26	67.89	산책로	산책로 31	유아 놀이공간	
당초			103	1.5	26	39	산책로	산책로102	소로 3-13	
당초			104	1.5	53	79.5	산책로	산책로 102	산책로 31	
당초			105	3	31	93	산책로	소로3-3	관리사무소	






부분계획도1(변경후)
보라매근린공원
1 KEY MAP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M
 SCALE=1/1,200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42호
도시관리계획(독산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183호(2008.5.29.),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297호(2011.10.6.)로 결정(변경)된 “독산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2017년 제19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2017.12.13)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2월 19일
서울특별시

I. 결정 취지

신안산선 지하철역 건설 등 지역 여건 변화에 따른 선제적 대응,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타당성 재검토 및 재정비 방안 마련, 역세권 활성화 및 중심지 기능 강화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하는 사항임.

II.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독산 지구단위계획구역	금천구 독산동 1030번지 일대	198,388	-	198,388	서울특별시고시 제1998-232호('98.7.2)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조서

가. 용도지역·지구 결정조서 : 변경없음

1) 용도지역 결정조서

구분		면적 (㎡)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198,388	-	198,388	100.0	-
주거지역	소계	71,283	-	71,283	35.9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5,997	-	5,997	3.0	-
	제2종일반주거지역	840	-	840	0.4	-
	제3종일반주거지역	64,446	-	64,446	32.5	-
상업지역	소계	58,821	-	58,821	29.7	-
	일반상업지역	12,116	-	12,116	6.1	-
	근린상업지역	46,705	-	46,705	23.6	-
공업지역	소계	68,284	-	68,284	34.4	-
	준공업지역	68,284	-	68,284	34.4	-

2) 용도지구 결정조서

■ 미관지구 결정조서

구 분	도면표시 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 치	면 적 (㎡)	연 장 (m)	폭 원 (m)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	미관 지구	중심지 미관 지구	신길동~시흥동 (독산동1031~ 159-18)	236,960 (20,000)	8,000 (900)	양측 12~20 (12)	서고제194호 (84.04.17)	-

주) ()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사항임

■ 고도지구 결정조서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 치	고도제한 내용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	고도 지구	최고 고도 지구	김포 국제공항 주변지구	진입표면 해발12.50~372.86m미만 (272.86~322.50m)	33,204,000 (198,388)	서고 제138호 (94.05.03)	구역 전체

주) ()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사항임

나.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1) 교통시설

■ 도로

○ 도로 총괄표

류별	합 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합계	25	3,935	76,830	8	1,819	60,304	14	1,863	14,969	3	253	1,557
광로	1	900	45,000	1	900	45,000	-	-	-	-	-	-
중로	3	520	11,131	3	520	11,131	-	-	-	-	-	-
소로	21	2,515	20,699	4	399	4,173	14	1,863	14,969	3	253	1,557

○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광로	1	15	50	주 간선	6,800 (900)	대림동 삼거리 (독산동 152-2)	시흥동 시계 (독산동 1031-27)	일반 도로	건고 제381호 (1967.5.24)	시흥 대로
기정	중로	1	108	20	집산	1,250 (170)	가리봉동(광2-19) (독산동 152-11)	독산동(중1-107) (독산동 287-13)	일반 도로	건고 제198호 (1971.4.7)	가산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1	109	20	집산	900 (110)	독산동(광1-15)	독산동(중2-114) (독산동 289-19)	일반 도로	"	두산로
기정	중로	1	111	20 ~ 34 (20~25)	집산	1,500 (240)	독산동(중1-107) (독산동 1082-27)	안양천시계 (독산동 293-6)	일반 도로	"	범안로
변경	중로	1	111	20 ~ 34 (20~25)	집산	1,500 (240)	독산동(중1-107) (독산동 1082-27)	안양천시계 (독산동 293-6)	일반 도로	"	일부 구간 확폭
기정	소로	1	1	10	국지	51	독산동 152-2	독산동 150-8	일반 도로	서고 제2008-183호 (2008.05.29)	-
기정	소로	1	2	11	국지	94	독산동 289-14	독산동 289-1	일반 도로	"	-
기정	소로	1	3	10	국지	143	소로2-7 (독산동 1007-17)	중로1-111 (독산동 1008)	일반 도로	"	-
변경	소로	1	3	10	국지	139	소로2-7 (독산동 1007-17)	중로1-111 (독산동 1008)	일반 도로	"	연장 축소
기정	소로	1	4	10	국지	115	중로1-111 (독산동1007-3)	소로2-15 (독산동1007-14)	일반 도로	서고 제2011-297호 (2011.10.06.)	-
기정	소로	2	1	8	국지	135	독산동152-11	독산동 151-1	일반 도로	서고 제2008-183호 (2008.05.29)	-
기정	소로	2	2	8	국지	86	독산동 296-19	독산동 288-11	일반 도로	서고 제2008-183호 (2008.05.29)	-
기정	소로	2	3	8	국지	131	독산동 288-6	독산동 289-1	일반 도로	"	-
기정	소로	2	4	8	국지	197	독산동 292-3	독산동 293-1	일반 도로	"	-
기정	소로	2	5	8	국지	172	독산동 293-5	독산동 292-1	일반 도로	"	-
기정	소로	2	7	8	국지	59	독산동 1008-10	독산동 1009-25	일반 도로	"	-
기정	소로	2	8	8	국지	188	독산동 1031-30	독산동 1032	일반 도로	"	-
기정	소로	2	9	8	국지	50	독산동 1012-18	독산동 1030	일반 도로	"	-

주) 폭원 및 연장의 ()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사항임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2	10	8	국지	314	독산동 1030-10	독산동 1013	일반 도로	"	-
기정	소로	2	11	8	국지	58	독산동 1012-1	독산동 286-8	일반 도로	"	-
기정	소로	2	12	8	국지	203	독산동 286-7	독산동 200-10	일반 도로	"	-
기정	소로	2	13	8	국지	137	독산동 159-25	독산동 160-1	일반 도로	"	-
기정	소로	2	14	8	국지	59	독산동 159-1	독산동 983-15	일반 도로	"	-
기정	소로	2	15	8~16	국지	74	소로2-7 (독산동 1009-25)	독산동 1007-14	일반 도로	"	-
기정	소로	3	1	6	국지	152	독산동 293-19	독산동 293-1	일반 도로	"	-
기정	소로	3	3	6	국지	51	독산동 1054-2	독산동 1031-27	일반 도로	"	-
기정	소로	3	4	6	국지	50	독산동 286-1	독산동 287-7	일반 도로	"	-

주) 폭원 및 연장의 ()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사항임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중로 1-111	중로 1-111	- 도로 확폭 - 구간 : 말미사거리~독산2-1 특별계획구역 - 폭원 : 20m → 25m	- 독산2-1 세부개발계획 결정시 특별계획 구역 내 중로 1-111 폭원 확폭(20→ 25m)[서고 제 2011-297호(2011.10.06.)] - 교차로부터의 원활한 교통흐름 및 도로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 일부구간 도로 확폭
소로 1-3	소로 1-3	- 연장축소 - 폭원 : 143m → 139m	중로 1-111호선 확폭(5m)에 따른 연장 축소

2) 유통 및 공급시설(변경없음)

■ 전기공급설비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전기 공급 설비	154KV 변전소	독산동 152-6	1,000 (지하29.1m ~ 지상5.4m)	-	1,000 (지하29.1m ~ 지상5.4m)	서고 제1995-157호 (1995.5.31)	-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1) 가구 결정(변경)조서

구 분	가구번호		비 고
	기 정	변 경	
가 구	A1, A2, A3, B1, B2, B3, B4, B5, B6 C1, C2-1, C2-2, C3, C4, C5	A1, A2, A3, B1, B2, B3, B4, B5, B6 C1, C2-1, C3, C4, C5	-

○ 가구 결정(변경) 사유서

구 분	도면표시 번호	변경전	변경후	변경내용	비 고
가 구	①	C2-2	-	해 제	• 특별계획구역 해제에 따라 가구 B6으로 편입

2) 획지 결정(변경)조서

가) 단위대지의 최대개발규모(변경없음)

구 분	계획내용	비 고
최대개발규모	3,000㎡	• 최대개발규모를 초과하는 기존대지 및 획지, 특별계획구역 제외

나) 대지의 분할

가 구	위 치	계획내용		비 고
		기 정	변 경	
A3	1031-17	필지분할가능선	-	• 공동개발지정 해제에 따라 불필요한 필지 분할가능선 폐지
B1	152-3	필지분할가능선	필지분할가능선	• 적정개발규모 유도를 위해 필지분할가능선 유지
B6	1008-3	-	필지분할가능선	• 과도한 세장비 및 맹지 해소를 위해 필지 분할가능선 지정

다)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구 번호	가구 면적	위 치	면 적 (㎡)	계획내용		비 고
				기 정	변 경	
A1	7,843.5	1012대,1012-1대, 1012-2대,1012-3대, 1012-4대,1012-5대, 1012-6대,1012-7대, 1012-8대,1012-9대, 1012-10대, 1012-11대	4,735.9	① 1012,1012-2,5,4 공동개발 지정 ② 1012-1,3 공동개발 지정 ①,② 공동개발 권장 ③ 1012-6,7,8,9,10 공동개발 지정 ④ 1012-11과 ③ 공동 개발 권장	① 1012,1012-1,2,3, 4,5,6,7,8,9,10 공동개발 지정 (특별계획구역) ② 1012-11 공동개발 해제	· 동일소유 · 역세권 적정 개발 규모유 도
		1012-12대, 1012-15대	1,245.6	공동개발 권장	공동개발 해제	· 개발제약 요 소 최소화
		1012-13대, 1012-14대 1012-18대	816.5	① 1012-13,14 공동개발 지정 ② 1012-18과 ① 공동 개발 권장	① 1012-13,14 공동개발 지정 ② 1012-18 공동개발 해제	· 기공동건축 · 개발제약 요 소 최소화
		1012-16대, 1012-17대	872.4	공동개발 지정	공동개발 해제	· 개발제약 요 소 최소화
A2	7,675.8	1030-2대,1030-3대, 1030-4대,1030-5대, 1030-6대,1030-7대, 1030-8대, 1030-10대	2,738.5	① 1030-2,3,6 공동개 발 지정 및 1030-4 와 공동개발 권장 ② 1030-7, 8 공동개발 지정 ③ 1030-5,10 공동개발 지정 ①,②,③ 공동개발 권장	① 1030-2,3,6 공동개발 지정 ② 1030-4,5,7,8,10 공동개발 해제	· 기공동건축 · 개발제약 요 소 최소화
A3	9,253.7	1031대,1031-1대 1031-2대,1031-3대, 1031-4대,1031-5대, 1031-38대	2,262.4	① 1031,1031-1 공동개발 지정 ② 1031-3,4 공동개발 지정 ③ 1031-5,38 공동개발 지정 ④ 1031-2와 ①,②,③ 공동개발 권장	① 1031,1031-1 공동 개발 지정 ② 1031-5,38 공동개 발 지정 ③ 1031-2,3,4 공동개 발 해제	· 기공동건축 · 개발제약 요소 최소화

가구 번호	가구 면적	위 치	면 적 (㎡)	계획내용		비 고
				기 정	변 경	
A3	9,253.7	1031-6대,1031-7대 1031-8대,1031-9대	1,173.5	① 1031-6,7,8,36 공 동개발 지정 ② 1031-9와 ① 공동 개발 권장	① 1031-6,7 공동개발 지정 ② 1031-8,9 공동개발 해제 ※1031-8,36 → 1031-8로 합필	· 기공동건축 · 개발계약 요 소 최소화
		1031-10대, 1031-11대	1,616.6	공동개발 지정 (1031-10,11,31)	공동개발 해제 ※1031-11,31 → 1031-11로 합필	· 개발계약 요 소 최소화
		1031-12대, 1031-32대	169.3	공동개발 지정	변경없음	· 과소필지 해 소 · 동일소유
		1031-13대, 1031-33대	418.6	공동개발 지정	변경없음	· 과소필지 해 소 · 동일소유
		1031-16대, 1031-17도, 1031-18대, 1031-19대	640.3	공동개발 지정	공동개발 해제	· 개발계약 요 소 최소화 · 필지분할 가 능선 해제
		1031-14대, 1031-15대	251.5	공동개발 지정	공동개발 해제	· 개발계약 요 소 최소화
		1031-20대, 1031-21대	254.7	공동개발 지정	변경없음	· 기공동건축
		1031-22대, 1031-25대	1,263.9	① 1031-22,23,24 공 동개발 지정 ② 1031-25와 ① 공동 개발 권장	공동개발 해제 ※1031-22,23,24 → 1031-22로 합필	· 개발계약 요 소 최소화
		1031-28대, 1031-29대, 1031-30대	505.6	공동개발 지정	공동개발 해제	· 개발계약 요 소 최소화
B1	6,721.5	152-1대,152-2대, 152-3대	2,380.1	공동개발 지정	변경없음	· 기공동건축
		152-3대	1,680.0	필지분할가능선	필지분할가능선	-
		152-10대	774.5	공동개발지정 (152-10,11)	공동개발 해제 ※152-10,11 → 152-10로 합필	-

가구 번호	가구 면적	위 치	면 적 (㎡)	계획내용		비 고
				기 정	변 경	
B2	9,332.3	288-1대,288-2대, 288-11대	2,630.7	① 288-1,2 공동개발 지정 ② 288-11와 ① 공동 개발 권장	① 288-1,2 공동개발 지정 ② 288-11 공동개발 해제	· 기공동건축 · 개발제약 요 소 최소화
		288-3대,288-4대	1,231.4	공동개발 지정	변경없음	· 기공동건축
		288-5대,288-6대, 288-7대	1,636.8	① 288-6,7 공동개발 지정 ② 288-5와 ① 공동개 발권장	변경없음	· 적정개발 규 모 유도
B3	6,988.4	289-1대,289-14대, 289-19대	2,080.8	289-14,19 공동개발 지정	공동개발 지정	· 기공동건축
		289-7대,289-8대, 289-9대	1,042.5	공동개발 권장	① 289-8,9 공동개발 지정 ② 289-7 공동개발 해제	· 기공동건축 · 개발제약 요 소 최소화
B4	20,266.6	291-5대,291-6대	4,270.1	공동개발 지정	변경없음	· 기공동건축
B5	9,148.2	293-1대,293-9대	753.8	공동개발 권장	공동개발 해제	· 개발제약 요 소 최소화
		293-5대,293-6대	2,452.9	공동개발 지정	변경없음	· 기공동건축
B6	7,367.7	1008-2대,1008-3대	1,418.3	공동개발 지정 (특별계획구역)	① 1008-3 필지분할 가능선 지정 ② 1008-2,3 공동개발 지정	· 기공동건축 · 적정개발 규 모 유도 · 맹지,세장형 해소
		1008-3대,1008-8대, 1008-9대	1,180.0	공동개발 지정 (특별계획구역)	1008-3,8,9 공동개발 지정	· 기공동건축 · 적정개발 규 모 유도
		1008-6대,1008-7대	984.8	공동개발 지정 (특별계획구역)	1008-6,7 공동개발 지정	· 기공동건축
		1008-11대,1008-12 대, 1008-13대,	1,063.2	공동개발 지정	변경없음	· 기공동건축

가구 번호	가구 면적	위 치	면 적 (㎡)	계획내용		비 고
				기 정	변 경	
C1	14,152.5	292-1대,292-36대	771.2	공동개발 지정 (특별계획구역)	공동개발 권장	· 특별계획 구역 해제 · 기공동건축 · 개발제약 요소 최소화
		292-3대,292-33대, 292-34대	1,432.7		공동개발 지정	
		292-4대,292-5대, 292-17대,292-27대	1,996.0		공동개발 지정	
		292-6대,292-7대, 292-12대,292-13대, 292-16대,292-28대, 292-29주,292-31대, 292-32대,292-37대, 292-38대,292-39주	2,942.2		① 292-6,7,12,13,16, 28,29,31,32 공동개발 지정 ② 292-37,38,39 공동개발 지정 ①,② 공동개발 권장	
		292-8대,292-9대, 292-10대	1,321.4		① 292-8,9 공동개발 지정 ② 292-10과 ① 공동개발 권장	
		292-11대,292-30대	1,520.0		공동개발 지정	
		292-2대,292-14대, 292-21대	4,169.0		공동개발 해제 ※ 292-2,26 → 292-2로 합필	· 특별계획 구역 해제
C2-1	9,537.4	1007-13대, 1007-14대, 1007-17대, 1007-19대	9,537.4	공동개발 지정 (특별계획구역)	변경없음	-
C3	6,833.4	159-1대,159-2대, 159-3대,159-4대, 159-5대,159-6대, 159-7대,159-8대, 159-9대,159-10도, 159-11도,159-12대, 159-13대,159-14대, 159-15대,159-18대, 159-19대,159-20대, 159-21대,159-30대	3,977.3	공동개발 지정 (특별계획구역)	공동개발 지정 (특별계획구역)	· 특별계획 구역 분할
		159-22대, 159-23대,159-26대, 159-27대,159-28대	2,856.1		공동개발 지정 (특별계획구역) ※ 159-23,25 → 292-23로 합필	· 특별계획 구역 분할

가구 번호	가구 면적	위 치	면 적 (㎡)	계획내용		비 고
				기 정	변 경	
C4	5,243.1	287-1대, 287-2대, 287-3대, 287-4대, 287-5대, 287-13대	2,407.9	공동개발 지정 (특별계획구역)	공동개발 지정 (특별계획구역) ※ 287-7, 11 → 287-7로 합필	· 특별계획 구 역 분할
		287-6대, 287-7대	2,835.2		공동개발 지정 (특별계획구역)	· 특별계획 구 역 분할
C5	4,335.8	286-1대, 286-2대, 286-3대, 286-4대, 286-5대, 286-6대, 286-7대, 286-8대, 286-9대, 286-13대, 286-14대	4,335.8	공동개발 지정 (특별계획구역)	변경없음	-

나. 건축물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1) 건축물의 불허용도 결정(변경)조서

■ 기정

구 분	전층 불허용도	저층부 불허용도	비 고
공통적용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장의사, 옥외에 철타이 있는 골프연습장, 제조업소, 안마시술소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8호의 운수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병원(정신병원 및 요양소, 격리병원에 한함)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옥외에 철타이 있는 골프연습장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8호의 장례식장	-	-
A 준공업지역 시흥대로변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액화 가스충전소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시설(주차장, 세차장 제외)	-	-

구 분	전층 불허용도	저층부 불허용도	비 고
B 준공업지역 이면가로변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비디오물감상실, 게임제공업소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비디오물감상실에 한함)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액화가스 충전소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시설(주차장, 세차장 제외)	-	-
C 준주거지역 (독산3,4,5 특별계획구역)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주거복합 건축물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비디오물감상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비디오물감상실에 한함)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시설(주차장 제외)	-	-
D 근린상업지역 시흥대로변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시설(주차장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비디오물감상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비디오물감상실에 한함)	-
E 일반상업지역 독산동길변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시설(주차장 제외)	-	-

구 분	전층 불허용도	저층부 불허용도	비 고
F 근린상업지역 시흥대로변 (독산1 특별계획구역)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비디오물감상실, 단란주점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 연장(비디오물감상실에 한함)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시설	-	-
E 일반상업지역 독산동길변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시설(주차장 제외)	-	-
F 근린상업지역 시흥대로변 (독산1 특별계획구역)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비디오물감상실, 단란주점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 연장(비디오물감상실에 한함)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시설	-	-
G 간선가로변 (일반상업지역, 준공업지역, 근린상업지역) · 독산2-1 특별계획구역 · 독산2-2 특별계획구역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비디오물감상실, 단란주점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 연장(비디오물감상실에 한함)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시설	-	-

■ 변경

구 분	전층 불허용도	저층부 불허용도	비 고
공통적용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주거복합 건축물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장의사, 옥외에 철타이 있는 골프연습장, 제조업소, 안마시술소, 다중생활시설(고시원), 수리점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마권 장외 발매소, 마권 전화투표소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8호의 운수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병원(정신병원 및 요양병원에 한함), 격리병원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옥외에 철타이 있는 골프연습장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8호의 장례식장	-	-
A 준공업지역 시흥대로변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임대주택²)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액화가스 충전소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시설(주차장 제외)	-	-
B 준공업지역 이면가로변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임대주택²)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에 한함), 게임제공업소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에 한함)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게임제공업소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액화가스 충전소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시설(주차장 제외)	-	-

구 분	전층 불허용도	저층부 불허용도	비 고
C 준주거지역 (독산3-1,3-2, 4-1,4-2,5 특별계획구역)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주거복합 건축물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에 한함)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에 한함)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시설(주차장 제외)	-	-
D 근린상업지역 시흥대로변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 (관광숙박시설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주유소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시설(주차장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 생활시설 중 공연장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에 한함)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에 한함)	-
E 일반상업지역 범안로변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 (관광숙박시설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시설(주차장 제외)	-	-
F 근린상업지역 (독산6 특별계획구역)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에 한함), 단란주점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에 한함)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 (관광숙박시설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시설	-	-

구 분	전층 불허용도	저층부 불허용도	비 고
G 일반상업지역 (독산2-1 특별계획구역)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에 한함), 단란주점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에 한함)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 (관광숙박시설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시설	-	-

주 1) 저층부 : 건축물 1층 바닥을 기준으로 1~3층 구간

2) 임대주택이라 함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의 공공임대주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의 기업형임대주택 및 제5호의 준공공임대주택을 말함

3) 독산3-1,3-2,4-1,4-2,5 특별계획구역의 불허용도는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변경되는 용도지역을 기준으로 함

4) 관계법령(용도지역, 미관지구)에 따른 불허용도는 원칙적으로 불허

2) 건축물의 권장용도 결정(변경)조서

■ 기 정

구 분	전층 권장용도	저층부 권장용도	비고
1 준공업지역 시흥대로변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시설 (업무시설 내 영유아보육시설에 한함)	-
2 준공업지역 이면가로변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시설(영유아보육시설, 유치원에 한함), 노인복지시설	-	-
3 준주거지역 (독산3,4,5 특별계획구역)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상점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시설 (업무시설 내 영유아보육시설에 한함)	-
4 근린상업지역 시흥대로변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시설 (업무시설 내 영유아보육시설에 한함)	-
5 일반상업지역 독산동길변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소매시장, 상점	-	-

구 분	전층 권장용도	저층부 권장용도	비고
6 근린상업지역 시흥대로변 (독산1 특별계획구역)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학원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시설 (영유아보육시설, 유치원에 한함), 노인복지시설	-	-
7 간선가로변 (일반상업지역, 준공업지역, 근린상업지역) · 독산2-1 특별계획구역, 독산2-2 특별계획구역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학원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시설 (영유아보육시설, 유치원에 한함), 노인복지시설	-	-

주 1) 전층 권장용도 : 저층부(1~3층)를 제외한 구간에 한해 적용
2) 저층부 : 건축물 1층 바닥을 기준으로 1~3층 구간

■ 변경

구 분	전층 권장용도	저층부 권장용도	비고
1 준공업지역 시흥대로변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게임제공업소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 (오피스텔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
2 준공업지역 이면가로변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 (오피스텔 제외)	-	-
3 준주거지역 (독산3-1,3-2, 4-1,4-2,5 특별계획구역)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학원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도서관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 노인복지시설(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에 한함)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 (오피스텔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소매점, 휴게음식점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상점	-

구 분	전층 권장용도	저층부 권장용도	비고
4 근린상업지역 시흥대로변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게임제공업소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 (오피스텔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 시설 중 공연장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
5 일반상업지역 범안로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소매시장, 상점	-	-
6 근린상업지역 (독산6 특별계획구역)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게임제공업소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 노인복지시설(노인 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에 한함)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 (오피스텔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 시설 중 소매점, 휴게음식점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 시설 중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공연장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
7 일반상업지역 (독산2-1 특별계획구역)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게임제공업소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 노인복지시설(노인 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에 한함)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 (오피스텔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 시설 중 공연장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
8 근린상업지역 시흥대로 이면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 노인복지시설(노인 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에 한함)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 시설 중 소매점, 휴게음식점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 시설 중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상점	-

주 1) 저층부 : 건축물 1층 바닥을 기준으로 1~3층 구간

3) 건축물의 지정용도 결정(변경)조서

■ 신설

구 분	전층 지정용도	1층부 지정용도	비고
가 근린상업지역, 준공업지역 특화가로변	-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소매점(육류 도·소매업²)에 한함), 휴게음식점 (육류 음식점³)에 한함)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육류 음식점³)에 한함), 일반음식점 (육류 음식점³)에 한함)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육류 도·소매업²), 육류 음식점³)에 한함)	-

- 주 1) 지정용도가 1층부 바닥면적의 50%이상인 경우 수용 된 것으로 봄
 2) 육류 도·소매업이란 육류 및 부산물 등을 주로 취급하는 소매점 및 판매시설을 말함
 3) 육류 음식점이란 육류 및 부산물 등을 주재료로 조리하는 음식점을 말함
 4) 세부용도(업종)는 건축법상 용도분류 범위 내에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허용)할 수 있음

4) 건축물의 허용용도 결정(변경)조서

■ 신설

구 분	전층 허용용도	1층부 허용용도	비고
a 근린상업지역, 준공업지역 특화가로변	• 불허용도²) 이외의 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소매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공공업무시설, 주민공동 이용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비디오물 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제외), 휴게 음식점, 일반음식점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제외), 전시장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게임제공업소³)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공공업무 시설에 한함)	-

- 주 1) 전층 허용용도 : 1층부를 제외한 구간에 한해 적용
 2) 불허용도란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하는 불허용도 및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불허용도를 포함
 3) 게임제공업소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 다목 2)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함

5) 건축물의 밀도 결정(변경)조서

가) 건폐율 결정조서(변경없음)

구 분	건 폐 율	비 고
일반상업지역	60% 이하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4조 준용
근린상업지역	60% 이하	
준공업지역	60% 이하	
준주거지역	60% 이하	

나) 용적률 결정조서(변경)

■ 기 정

구 분	종전용도지역	변경용도지역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A	일반상업	일반상업	600%	800% 이하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제7조 적용
B	준공업	근린상업	400%	530% 이하	
C	일반주거	근린상업	300%	500% 이하	
D	준공업	준공업	300%	400% 이하	
E	¹⁾ 3종일반주거	준주거	250%	350% 이하	

주 1) 사업시행시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되는 독산3,4,5 특별계획구역의 용적률 적용기준은 아래와 같다.

■ 변 경

구 분	종전용도지역	변경용도지역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A	일반상업	일반상업	600%	800% 이하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제7조 및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B	준공업	근린상업	400%	530% 이하	
C	일반주거	근린상업	300%	500% 이하	
D	준공업	준공업	300%	400% 이하	
E	3종일반주거	준주거	250%	350% 이하	

주 1)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제7조 및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적용한다.

- 2)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시 용적률 체계는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내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에 따른다.
- 3) 준공업지역 내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공공임대주택, 기업형임대주택, 준공공임대주택 건립시 용적률 체계는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2015.08.28.) 준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 및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 제4항에 따른다.
- 4)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 제17항에 따른 관광숙박시설을 건축하고자 할 경우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내 관광숙박시설 건립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에 따른다.
- 5) 준공업지역 내 산업재생형, 주거재생형 등 준공업지역 관리계획의 재생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용적률은 「서울시 2030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에 따른다.

다) 용적률 완화항목 및 내용

■ 기 정

○ 기본형적용

- 허용용적률과 기준용적률 차이가 200% 미만인 경우에 적용
- 혼합형 적용대상지 외 지역에 적용
- 적용기준 : $\text{기준용적률} + \sum(\text{각 항목별 용적률 인센티브}) \leq \text{허용용적률}$

○ 혼합형적용

- 용도지역이 일반주거지역에서 근린상업지역으로 상향 변경된 지역과 기존 일반상업지역

으로서 허용용적률과 기준용적률 차이가 200% 이상인 경우에 적용(독산 2 특별계획구역의 일반상업지역은 기본형을 적용)

- 획지에 계획된 규제성격의 기본항목 (공동개발 지정, 공개공지 위치준수, 최고높이계획, 건축한계선 및 벽면한계선)을 모두 준수할 경우 150%의 기본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4항 및 조례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사항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도 인센티브 부여
- 적용기준 : 기준용적률+기본용적률 인센티브+ $\sum$ (각 항목별 용적률 인센티브, 기본용적률 인센티브 항목 제외) $\leq$ 허용용적률

○ 용적률 인센티브 - 기본형

내 용			항 목	완 화 기 준	비 고
공동개발	공동개발 (지정/권장)	준수시		기준용적률 $\times 0.5a$	· $n=2 \rightarrow a=0.2$ $n=3 \sim 4 \rightarrow a=0.25$, $n=5$ 이상 $\rightarrow a=0.3$ (n =획지 내 필 지수)
건축물 용도	권장용도	전층권장		기준용적률 $\times$ (권장용도면적 $\div$ 건축연면적) $\times 0.2$	-
		저층부 권장		기준용적률 $\times$ (권장용도면적 $\div$ 1~3층 바닥면적 합) $\times 0.1$	-
대지 내 공지	공개공지	위치준수		기준용적률 $\times 0.1$	-
		조성형태 및 규모 준수시		기준용적률 $\times$ {(설치면적-의무면적)/대지면적} $\times a$	· 피로티구조 : $a = 0.5$ · 개방형구조 : $a = 1.2$
	쌈지형공지	조성형태 및 규모 준수시		기준용적률 $\times$ (제공면적/대지면적) $\times a$	· 피로티구조 : $a = 0.5$ · 개방형구조 : $a = 1.2$
	건축한계선 벽면한계선	전면공지		기준용적률 $\times$ (제공면적/대지면적) $\times a$	· 피로티구조 : $a = 0.5$ · 개방형구조 : $a = 1.2$
대지 내 통로	공공보행통로	준수시		기준용적률 $\times$ (조성면적/대지면적) $\times a$	· 피로티구조 : $a = 0.5$ · 개방형구조 : $a = 1.2$
건축물형 태 및 외관	옥외광고물 및 통합간판설치	준수시		기준용적률 $\times 0.05$	·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등 준수시
	자연지반보존	보존시		기준용적률 $\times$ (보존면적/대지면적) $\times$ 0.2 이내	-
	옥상녹화	준수시		기준용적률 $\times$ (녹화면적/대지면적) $\times$ 0.1 이내	· 녹화면적은 대지면적의 20% 까지 만 허용 · 법정조경으로 산입된 면적 제외
	녹색주차장, 투수성 포장	준수시		기준용적률 $\times$ (설치면적 /대지면적) 으로서 기준용적률 $\times 0.05$ 이내	-

항 목		내 용	완 화 기 준	비 고
환경 친화적 건축물	중수도시설 설치	준수시	기준용적률 × 0.04 이내	· 총 사용수량의 10% 이상을 재사용 할 수 있는 시설 설치 · 관련법에 의해 의무적으로 시설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외
	빗물이용 시설 설치	준수시	기준용적률 × 0.04 이내	· 빗물저류탱크용량(ton)이 건축면적×0.05 또는 대지면적×0.02 이상 설치
	신재생에너지 사용	준수시	기준용적률 × 0.05 이내	· 건축공사비의 1%이상 또는 총에너지 사용량의 1%이상을 부담
	에너지절감율	1등급	기준용적률 × 0.08 이내	· 대상 : 일반건축물(주상복합 건축물 포함) · 「에너지 절감율」, 「에너지 성능지표」 및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의 등급 설정 및 등급별 인센티브량 차등 적용 · 각 요소의 인센티브 산정시 중복 계산 불허
		2등급	기준용적률 × 0.05 이내	
	에너지 성능지표	1등급	기준용적률 × 0.08 이내	
		2등급	기준용적률 × 0.05 이내	
	친환경 건축물 인증	1등급	기준용적률 × 0.08 이내	
		2등급	기준용적률 × 0.05 이내	

- 주 1) 용적률 산출: 기준용적률+Σ(각 항목별 용적률 인센티브) ≤ 허용용적률
 2) 권장용도 중 전충권장은 당해 용도의 바닥면적 합이 건물전체 바닥면적합의 20%이상인 경우, 저층부권장은 1~3층 바닥면적합의 30%이상 시에만 인정(면적산정 시 주차장 면적 제외)
 3) 미관지구 내 건축선 후퇴부분은 인센티브 면적 산정 시 제외함
 4) 대지 내 공지 및 대지 내 통로에 관한 인센티브는 중복하여 적용치 않음
 5) 인센티브로 제공되는 용적률의 최소20%는 친환경계획요소의 사용시에만 제공됨
 6) 에너지 절감율은 '건축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정'에 의함
 7) 에너지 성능지표는 '건축물에너지 설계기준'에 의함
 8) 친환경 건축물 인증은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 세부지침'에 의함

○ 용적률 인센티브 - 혼합형

항 목		내 용	완 화 기 준	비 고
공동개발	공동개발 (지정)	준수시	기본용적률 인센티브 항목	-
	공동개발 (권장)	준수시	기준용적률 × 0.5a	· n=2→a=0.2 n=3~4→ a=0.25, n=5이상→ a=0.3(n=획지내 필지수)
건축물 용도	권장용도	전충권장	기준용적률 × (권장용도면적 ÷ 건축면적) × 0.2	-
		저층부권장	기준용적률×(권장용도면적÷1~3층 바닥면적 합) × 0.1	-
대지 내 공지	공개공지	위치준수	기본용적률 인센티브 항목	-
		조성형태 및 규모 준수시	기준용적률 × {(설치면적-의무면적)/대지면적} × a	· 피로티구조 : a = 0.5 · 개방형구조 : a = 1.2
	쌈지형공지	조성형태 및 규모 준수시	기준용적률 × (제공면적/대지면적) × a	· 피로티구조 : a = 0.5 · 개방형구조 : a = 1.2
	건축한계선 벽면한계선	지침 준수시	기본용적률 인센티브 항목	-

항 목		내 용	완 화 기 준	비 고
대지 내 통로	공공보행통로	준수시	기준용적률 × (조성면적/대지면적) × a	· 피로티구조 : a = 0.5 · 개방형구조 : a = 1.2
건축물형 태 및 외관	옥외광고물 및 통합간판설치	준수시	기준용적률 × 0.05	·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등 준수시
환경 친화적 건축물	자연지반보존	보존시	기준용적률 × (보존면적/대지면적) × 0.2 이내	-
	옥상녹화	준수시	기준용적률 × (녹화면적/대지면적) × 0.1 이내	· 녹화면적은 대지면적의 20% 까지만 허용 · 법정조경으로 산입된 면적 제외
	녹색주차장, 투수성 포장	준수시	기준용적률 × (설치면적 /대지면적) 으로서 기준용적률 × 0.05 이내	-
	중수도시설 설치	준수시	기준용적률 × 0.04 이내	· 총 사용수량의 10% 이상을 재사용 할 수 있는 시설 설치 · 관련법에 의해 의무적으로 시 설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외
	빗물이용시설 설치	준수시	기준용적률 × 0.04 이내	· 빗물저류탱크용량(ton)이 건 축면적 × 0.05 또는 대지면 적 × 0.02 이상 설치
	신재생에너지 사용	준수시	기준용적률 × 0.05 이내	· 건축공사비의 1%이상 또는 총에너지 사용량의 1%이상 을 부담
	에너지절감율	1등급	기준용적률 × 0.08 이내	· 대상 : 일반건축물(주상복합 건축물 포함) · 「에너지 절감율」, 「에너지 가능지표」 및 「친환경 건축 물 인증제」의 등급 설정 및 등급별 인센티브량 차등 적용 · 각 요소의 인센티브 산정시 중복 계산 불허
		2등급	기준용적률 × 0.05 이내	
	에너지 성능지표	1등급	기준용적률 × 0.08 이내	
		2등급	기준용적률 × 0.05 이내	
	친환경 건축물 인증	1등급	기준용적률 × 0.08 이내	
		2등급	기준용적률 × 0.05 이내	
	최고높이계획		준수시	기본용적률 인센티브 항목

- 주 1) 용적률 산출: 기준용적률+기본용적률 인센티브+Σ(각 항목별 용적률 인센티브) ≤ 허용용적률
- 2) 기본용적률 인센티브란 대지에 계획된 규제성격의 기본항목(공동개발 지정, 공개공지 위치준수, 건축한계선 및 벽면한계선, 최고높이계획)을 모두 준수할 경우에 기본적으로 부여되는 용적률 인센티브 150%를 말함. 계획된 기본항목이 4가지 이하일 경우에도 당해 대지에 계획된 기본항목을 모두 준수할 경우 기본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 받을 수 있음
-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4항 및 조례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사항(민간부문 시행지침 참조)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도 기본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 단, 당초 계획된 공동개발 지정이 권장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기본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지 않음. 기본용적률 인센티브 외에 추가로 공동개발 권장 준수시 인센티브 부여함
- 4) 권장용도 중 전층권장은 당해 용도의 바닥면적 합이 건물전체 바닥면적합의 20%이상인 경우, 저층부권장은 1-3층 바닥면적합의 30%이상 시에만 인정(면적산정 시 주차장 면적 제외)
- 5) 대지 내 공지 및 대지 내 통로에 관한 인센티브는 중복하여 적용치 않음
- 6) 미관지구 내 건축선 후퇴부분은 인센티브 면적 산정 시 제외함
- 7) 인센티브로 제공되는 용적률의 최소20%는 친환경계획요소의 사용시에만 제공됨
- 8) 에너지 절감율은 '건축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정'에 의함
- 9) 에너지 성능지표는 '건축물에너지 설계기준'에 의함
- 10) 친환경 건축물 인증은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 세부지침'에 의함

■ 변 경

- 허용용적률 산정을 위한 인센티브 계획용적률은 친환경 인센티브는 100분의 30 이상, 계획유도 인센티브 합은 100분의 70 이내로 하고, 기준용적률과 인센티브 계획용적률의 합은 허용용적률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 친환경 인센티브인 친환경 건축물 항목은 해당 인센티브의 100분의 30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계획유도 인센티브 항목 준수를 통하여 부족한 친환경 인센티브의 대체 적용은 인정하지 않는다. 단, 소규모 건축물(대지면적 500㎡이하)에 한하여 친환경 인센티브 항목으로 총 인센티브량의 100분의 30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계획유도 항목으로 대체하여 적용이 가능하다.
- 전층 권장용도의 경우는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합계가 전체 연면적(주차장 제외)의 20% 이상일 경우에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 저층부 권장용도의 경우는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합계가 1~3층 바닥면적 합계(주차장 제외)의 30%이상 설치할 경우에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 특화가로변 저층부(1층) 지정용도의 경우는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합계가 1층 바닥면적 합계(주차장 제외)의 50%이상 설치할 경우에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 구분지상권 제공이란 건축물 내 일부 공간에 공연장, 전시장 등을 설치하고 공공에 사용권(구분지상권)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사용범위 등 대하여는 입안권자 등과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 미관지구 내 건축선 보다 추가하여 건축한계선으로 결정된 부분에 한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미관지구 내 건축선 후퇴부분은 제공면적 산정시 제외)
- 유사한 계획요소가 중복되는 경우 인센티브 적용은 중복하여 계산할 수 없다.
(세부개발계획과 공동개발, 공개공지와 건축한계선, 자연지반보존과 녹색주차장 등)
- 공동개발에 의해 적용되는 인센티브 유형이 둘 이상일 경우 전면도로폭이 넓은 도로에 면한 인센티브 유형을 준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건축물 내 공익시설 설치시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기부채납하여 상한용적률에 적용될 경우 중복하여 인센티브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공동주차장 설치시 차량출입구는 1개소를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건축협정에 의한 공동주차장 설치를 포함한다.
- 친환경 인센티브 항목은 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동일하게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항목	세분	완화기준	비고
환경친화 및 에너지 효율화	녹색건축물 인증	· 최우수(그린 1등급) : 기준용적률 x 0.12 · 우수(그린 2등급) : 기준용적률 x 0.08 · 우량(그린 3등급) : 기준용적률 x 0.04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른 녹색건축물 인증 기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기준 준용 ※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에 따른 의무 대상 준수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 에너지 효율 1등급 : 기준용적률 x 0.08 · 에너지 효율 2등급 : 기준용적률 x 0.06 · 에너지 효율 3등급 : 기준용적률 x 0.04	
	신재생 에너지 공급률	· 공급률 20%초과 : 기준용적률 x 0.12 · 공급률 20%이하 15%초과 : 기준용적률 x 0.10 · 공급률 15%이하 10%초과 : 기준용적률 x 0.08 · 공급률 10%이하 5%초과 : 기준용적률 x 0.06 · 공급률 5%이하 3%초과 : 기준용적률 x 0.04	
	중수도 시설설치	· 기준용적률 x 0.04	※ 건축물의 총에너지사용량 중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되는 에너지의 비율
	빗물관리 시설설치	· 기준용적률 x 0.04	- 총 사용량의 10% 이상 처리시설 설치시 적용 - 관련법상 의무시설인 경우 제외
	옥상녹화	· 기준용적률 x (녹화면적 / 대지면적) x 0.1	- 빗물저류·이용시설 용량(ton) 및 빗물침투시설 - 침투량(ton/hr)의 합이 건축면적 x 0.05 또는 대지면적 x 0.02 이상이 되도록 설치
	자연지반 보존	· 기준용적률 x (보존면적 / 대지면적) x 0.2	- 법정 조경으로 산입된 면적 제외 - 녹화면적은 대지면적 30%까지만 허용
	녹색주차장	· 기준용적률 x (설치면적 / 대지면적) x 0.2	- 자연토양 및 투수성 포장 - 지하구조물 미설치시 - 기준용적률 x 0.05 이내

○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유형

용도지역	유형	건폐율	기준 용적률	허용 용적률	계획방향
준주거지역1) (독산3-1,3-2,4-1,4-2,5 특별계획구역)	D1	60%	250%	350%	- 배후 주거지역 서비스 기능 유도 - 권장용도 도입 유도 - 역세권 기능강화 및 간선변 활성화 - 세부개발계획 수립 및 자율적 공동개발 유도
준공업지역		60%	300%	400%	
근린상업지역 (시흥대로 서측)	D2	60%	400%	530%	- 간선변 활성화 및 이면부 특화 - 간선변 활성화 기능 유도 및 이면부 보차 혼용통로 개설 - 통합개발을 통한 지역 활성화 - 세부개발계획 수립 및 공동개발 지정
일반상업지역 (독산2-1 특별계획구역)		60%	600%	800%	
근린상업지역 (독산6 특별계획구역, 시흥대로 동측)	D3	60%	300%	500%	- 개발규모 확대 및 배후 주거지역 서비스 기능 유도 - 자율적 공동개발유도 및 권장용도 도입 유도 - 역세권 기능강화 및 간선변 활성화 - 세부개발계획 수립 및 간선변 활성화 기능 유도
일반상업지역 (범안로 북측)		60%	600%	800%	
준공업지역 (특화가로변)	D4	60%	300%	400%	-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거리 조성 - 기능 보존을 위한 권장 및 지정용도 도입 - 건축선을 활용한 가로 활성화 기반 마련
근린상업지역 (특화가로변)		60%	400%	530%	

주 1)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되는 독산3-1,3-2,4-1, 4-2,5 특별계획 구역을 말한다.

○ 인센티브 유형 (D1)

항 목	세 분	완화기준	비 고
계획 유도	공동 개발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기준용적률 × 0.2
		공동개발 지정	기준용적률 × 0.4 × α
		공동개발 권장	기준용적률 × 0.4 × α
		자율적 공동개발	기준용적률 × 0.3 × α
	대지내 공지	공개공지 및 쌈지형공지	기준용적률 × {(설치면적-의무면적)/대지면적} × α
		건축한계선	기준용적률 × (설치면적/대지면적) × 0.4
		공공보행통로	기준용적률 × (조성면적/대지면적) × α
	건축물 용도	전층 권장	기준용적률 × (권장용도 면적/주차장 제외 건축연면적) × 0.5
		저층부 권장	기준용적률 × (해당용도 면적/주차장 제외 1~3층바닥면적) × 0.05
		꼭대기층(옥상) 개방	기준용적률 × (설치면적/해당층 바닥면적) × 0.03
	보행 개선	지하철 연결통로 (출입구) 건축물내 또는 대지내 설치	기준용적률 × 0.05
	주차 계획	공동주차통로(출입구) 및 공동주차장	기준용적률 × 0.04
	건축물 개방	건축물 내 공익시설 설치	기준용적률 × (제공면적/연면적) × 0.5
친환경	환경친화	녹색건축물 인증, 자연지반보존 등(공통사항 참조)	

○ 인센티브 유형 (D2)

항 목	세 분	완화기준	비 고
계획 유도	공동 개발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기준용적률 × 0.1
		공동개발 지정	기준용적률 × 0.4 × α
		공동개발 권장	기준용적률 × 0.4 × α
		자율적 공동개발	기준용적률 × 0.3 × α
	대지내 공지	공개공지 및 쌈지형공지	기준용적률 × {(설치면적-의무면적)/대지면적} × α
		건축한계선	기준용적률 × (설치면적/대지면적) × 0.1
		보차혼용통로	기준용적률 × (조성면적/대지면적) × α
	건축물 용도	전층 권장	기준용적률 × (권장용도 면적/주차장 제외 건축연면적) × 0.3
		저층부 권장	기준용적률 × (해당용도 면적/주차장 제외 1~3층바닥면적) × 0.2
		꼭대기층(옥상) 개방	기준용적률 × (설치면적/해당층 바닥면적) × 0.02
	주차 계획	공동주차통로(출입구) 및 공동주차장	기준용적률 × 0.03
	건축물 개방	건축물 내 공익시설 설치	기준용적률 × (제공면적/연면적) × 0.4
친환경	환경친화	녹색건축물 인증, 자연지반보존 등(공통사항 참조)	

○ 인센티브 유형 (D3)

항목		세 분	완화기준	비 고
계획 유도	공동 개발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또는 공동개발(지정)	기본용적률 인센티브 ²⁾ 사항	-
		자율적공동개발	기준용적률 $\times 0.2 \times \alpha$	· 2필지 $\alpha=0.2$ · 3~4필지 $\alpha=0.25$ · 5필지 이상 $\alpha=0.3$
	대지내 공지	공개공지	기준용적률 $\times \{(\text{설치면적}-\text{의무면적})/\text{대지면적}\} \times \alpha$	· 개방형 $\alpha=2$ · 필로티형 $\alpha=1$
		쌈지형공지	기준용적률 $\times \{(\text{조성면적}-\text{의무면적})/\text{대지면적}\} \times \alpha$	· 개방형 $\alpha=0.4$ · 필로티형 $\alpha=0.2$
		건축한계선	기본용적률 인센티브 ²⁾ 사항	-
		공공보행통로	기준용적률 $\times (\text{조성면적}/\text{대지면적}) \times 2$	
	건축물 용도	전층 권장	기준용적률 $\times (\text{권장용도 면적}/\text{주차장 제외 건축면적}) \times 0.3$	-
		저층부 권장	기준용적률 $\times (\text{해당용도 면적}/\text{주차장 제외 1~3층바닥면적}) \times 0.4$	-
		꼭대기층(옥상) 개방	기준용적률 $\times (\text{설치면적}/\text{해당층 바닥면적}) \times 0.03$	· 10층이상 건축물
	보행 개선	지하철 연결통로 (출입구) 건축물내 또는 대지내 설치	기준용적률 $\times 0.1$	-
	주차 계획	공동주차통로(출입구) 및 공동주차장	기준용적률 $\times 0.02$	-
	건축물 개방	건축물 내 공익시설 설치	기준용적률 $\times (\text{제공면적}/\text{연면적}) \times 0.3$	· 특별계획구역 제외
친환경	환경친화		녹색건축물 인증, 자연지반보존 등(공통사항 참조)	

주 1) 허용용적률 산출 : 기준용적률 + 기본용적률 인센티브 + $\sum(\text{각 항목별 용적률 인센티브}) \leq \text{허용용적률}$

2) 기본용적률 인센티브란 대지에 계획된 규제성격의 기본항목(세부개발계획 수립시 또는 공동개발(지정), 공개공지 위치준수, 건축한계선)을 모두 준수할 경우에 기본적으로 부여되는 용적률 인센티브 100%를 말함. 계획된 기본항목이 2가지 이하일 경우에도 당해 대지에 계획된 기본항목을 모두 준수할 경우 기본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 받을 수 있음

○ 인센티브 유형 (D4)

항 목		세 분	완화기준	비 고
계획 유도	공동 개발	공동개발 지정	기준용적률 $\times 0.4 \times \alpha$	· 2필지 $\alpha=0.2$
		공동개발 권장	기준용적률 $\times 0.4 \times \alpha$	· 3~4필지 $\alpha=0.25$
		자율적 공동개발	기준용적률 $\times 0.3 \times \alpha$	· 5필지 이상 $\alpha=0.3$
	대지내 공지	공개공지 및 쌈지형공지	기준용적률 $\times \{(\text{설치면적}-\text{의무면적})/\text{대지면적}\} \times \alpha$	· 개방형 $\alpha=0.8$ · 필로티형 $\alpha=0.4$
		건축한계선 및 벽면지정선	기준용적률 $\times (\text{설치면적}/\text{대지면적}) \times 0.1$	-
		보차혼용통로	기준용적률 $\times (\text{조성면적}/\text{대지면적}) \times \alpha$	· 개방형 $\alpha=0.1$ · 필로티형 $\alpha=0.05$
	건축물 용도	저층부 지정	기준용적률 $\times (\text{해당용도 면적}/\text{주차장 제외 1층 바닥면적}) \times 0.2$	-
		꼭대기층(옥상) 개방	기준용적률 $\times (\text{설치면적}/\text{해당층 바닥면적}) \times 0.05$	· 10층이상 건축물
	주차 계획	공동주차통로(출입구) 및 공동주차장	기준용적률 $\times 0.05$	-
친환경	환경친화		녹색건축물 인증, 자연지반보존 등(공통사항 참조)	

주) 저층부 지정은 1층부 지정용도를 말함

6) 건축물의 높이 결정(변경)조서

가) 건축물의 높이 결정(변경)조서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기준	최고	기준	최고	
시흥 대로 서측	간선부	역주변 대형필지	－	80m	80m	100m	－
		근린상업지역	－	100m	－	100m	
		준공업지역	－	80m	－	80m	
	이면부	일반상업지역	－	80m	－	80m	
		근린상업지역	－	100m	－	80m	
		준공업지역	－	65m	－	65m	
시흥 대로 동측	간선부(근린상업지역)		－	100m	－	100m	－
	이면부(근린상업지역)				－	40(48)m	
특별 계획 구역	독산1특별계획구역		－	120m	－	－	특별계획구역 해제
	독산2-1특별계획구역		－	120m	－	120m	－
	독산3-1,3-2,4-1,4-2,5 특별계획구역		－	80m	－	80m	－
	독산6특별계획구역		－	100m	－	100m	특별계획구역 신설

나) 높이 완화항목 및 내용(신설)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기 정	변 경	
기준높이 완화1)	-	- 건축물 내 공익시설 설치 - 기준높이 × (제공면적 / 연면적) × 9	도시재생 연계시설, 커뮤니티 시설, 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등 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인정하는 경우
최고높이 완화2)	-	- 기부채납 - 기준높이 또는 최고높이 × [1 + (공공시설을 제공하는 면적 ÷ 공공시설을 제공하기 전의 대지면적)]	-

- 주 1) 완화된 기준높이는 최고높이를 초과할 수 없다.
 2) 완화된 최고높이는 대지별로 지정된 최고높이의 1.2배를 초과할 수 없다.
 3) 최고높이 완화는 특별계획구역 및 특별계획가능구역에 한하여 적용한다.
 4) 높이 및 용적률 완화항목은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다.

7)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건축선

가) 건축선에 관한 계획

○ 건축선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가구 번호	계 획 내 용		비고
	기 정	변 경	
A1	- 건축한계선 3m (시흥대로변) - 건축한계선 1m (동·남측 8m 도로변) - 건축한계선 3m (북측 8m 도로변)	- 건축한계선 5m (북측 8m 도로변) - 건축한계선 3m (시흥대로변, 독산6특별계획구역 동·남측변) - 건축한계선 2m (남측 8m 도로변) - 건축한계선 1m (동측 8m 도로변)	-
A2	- 건축한계선 3m (시흥대로변 및 20m 도로변) - 건축한계선 1m (8m 도로변)	- 건축한계선 3m (시흥대로변 및 범안로변) - 건축한계선 2m (북측 8m 도로변) - 건축한계선 1m (동측 8m 도로변)	-
A3	- 건축한계선 3m (시흥대로변 및 20m 도로변) - 건축한계선 1m (8m 도로변) - 건축한계선 2m (6m 도로변)	- 건축한계선 3m (시흥대로변 및 범안로변) - 건축한계선 1m (8m 도로변) - 건축한계선 1m (6m 도로변)	-
B1	- 건축한계선 3m (시흥대로변 및 구로동길변) - 건축한계선 1m (8m, 10m 도로변)	- 건축한계선 3m (시흥대로변 및 가산로변) - 건축한계선 1m (8m, 10m 도로변)	-

가구 번호	계획내용		비고
	기 정	변 경	
B2	• 건축한계선 3m (시흥대로변 및 구로동길변) • 건축한계선 2m (서측 8m 도로변) • 건축한계선 1m (남측 8m 도로변)	• 건축한계선 3m (시흥대로변 및 가산로변) • 건축한계선 1m (서측 8m 도로변) • 건축한계선 1m (남측 8m 도로변)	—
B3	• 건축한계선 3m (시흥대로변 및 20m 도로변) • 건축한계선 2m (서측 11m 도로변) • 건축한계선 1m (북측 8m 도로변)	• 건축한계선 3m (시흥대로변, 두산로변) • 건축한계선 1m (서측 11m 도로변) • 건축한계선 1m (북측 8m 도로변)	—
B4	• 건축한계선 6m (홈플러스부지 북측 20m도로 인접부) • 건축한계선 5m (시흥대로변) • 건축한계선 3m (20m 도로변, 서측 4m 도로변) • 건축한계선 2m (남측 8m 도로변) • 건축한계선 1m (기타)	• 건축한계선 6m1) (두산로변) • 건축한계선 5m1) (시흥대로변) • 건축한계선 3m (서측 4m 및 남측 8m 도로변)	—
B5	• 건축한계선 8m (독산역길 변) • 건축한계선 1m (6m, 8m 도로변)	• 건축한계선 8m (범안로변) • 건축한계선 1m (6m, 8m 도로변) • 저층부 벽면지정선 2m (동측 8m 도로변)	—
B6	• 건축한계선 3m (시흥대로변) • 건축한계선 1m (8m 도로변)	• 건축한계선 3m (시흥대로변, 범안로변) • 건축한계선 1m (8m 도로변)	—
C1	• 건축한계선 5m (시흥대로변) • 건축한계선 3m (독산역길 변) • 건축한계선 3m (기타 8m 도로변) • 건축한계선 1m (공공보행통로변)	• 건축한계선 3m (시흥대로변, 범안로변) • 건축한계선 2m (북측 8m 도로변) • 건축한계선 1m (서측 8m 도로변) • 건축한계선 1~6m (보차혼용통로변) • 저층부 벽면지정선 2m (서측 8m 도로변)	—
C2-1	• 건축한계선 3m (독산역길변, 서측4m 도로변, 남측6m 도로변, 동측8m 도로변)	• 건축한계선 3m (범안로변, 서측 4m 도로변, 남측 6m 도로변, 동측 8m 도로변)	—
C3	• 건축한계선 3m (시흥대로변) • 건축한계선 1m (8m 도로변) • 건축한계선 1m (공공공지변, 공공보행통로변)	• 건축한계선 3m (시흥대로변, 가산로변) • 건축한계선 1m (8m 도로변)	—
C4	• 건축한계선 3m (시흥대로변) • 건축한계선 1m (6m, 8m 도로변) • 건축한계선 1m (공공공지변, 공공보행통로변)	• 건축한계선 3m (시흥대로변, 가산로변) • 건축한계선 1m (6m, 8m 도로변)	—
C5	• 건축한계선 3m (시흥대로변) • 건축한계선 1m (6m, 8m 도로변) • 건축한계선 1m (공공공지변)	• 건축한계선 5m (남측 8m 도로변) • 건축한계선 3m (시흥대로변) • 건축한계선 1m (6m 도로변, 동측 8m 도로변)	—

나) 건축물 형태 및 외관 등에 관한 계획

구 분		계획내용	비 고	
건축물 형 태	지붕층 및 옥상부	• 단순 박스형 스라브 지붕 지양 • 건물 전체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디자인 된 미관시설 이용 권장	-	
	저층부 형태	• 폭20m이상 도로인접 건축물의 1층은 투시벽 및 투시형 셔터설치, 유색유라·반사유라·필름썬팅 등 사용금지 • 1층 개구부 높이는 인접건물과 조화유도 • 개구부 없는 벽면의 도로변 노출금지	-	
건축물 외 관	재료/색채	• 외벽면의 재료, 의장, 색채는 주변건물과 조화 • 견고하고 표면오염이 잘되지 않는 재료의 사용 • 원색 계통사용 지양, 따뜻한 색, 무채색계통의 밝은색 권장	-	
	설치시설 관련	• 폭20m이상 도로인접 건축물 건축설비 도로변 노출 금지 • 건물 입면에 건축설비 노출 자재, 옥상부에 설비설치 가능 공간 확보 권장	-	
	측벽 이격공지	• 폭20m이상 도로에 인접하는 건축물의 측면공지의 경우 통로로 사용하지 않으며 이격거리 3m이상 일 때 조경, 담장 등으로 차폐	-	
	야간조명	• 10층 이상의 건축물 건축 시 상향식 야간조명 설치 권장 • 옥외설치 미술작품의 야간조명 설치 권장	-	
옥외 광고물	권장 사항	형태 및 재료	• 자연소재 중심의 재료와 재활용을 염두에 둔 재료의 사용을 권장 • 입체형간판 설치 권장	-
		크기	• 광고물크기 최소화 권장	-
		색채사용	• 원색적 적색 간판배경 사용 금지, 주변을 고려한 창의적 색상 사용	-
		표현방식	• 가독성, 디자인완성도등 고려 서체 선택, 광고물 서체 크기의 최소화 • 픽토그램 사용 및 광고물 내 업체명과 픽토그램만 표기 권장	-
	규제 사항	통합간판	• 1층 부 연립간판 설치·운용	-
		기타	•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등 관련규정 준수	-
기 타 사 항	담장 및 옹벽의 처리	• 담장 설치시 식재 담장 또는 투시형 담장 설치 권장 • 옹벽은 자연석, 조경석 등을 사용하여 계단식으로 조성, 개방성을 고려	-	
	자연지반 보존	• 저층부의 바닥, 비건폐지 등을 자연재료, 투수성재료 등으로 조성하되 지하부 인공구조물 미설치시만 인정	용적률 인센 티브 부여	
	중수도시스템	• 관련 법률 및 지침에 따른 중수도 및 빗물 이용시설의 설치 권장		
	빗물이용시설	• 관련 법률 및 서울특별시 빗물저수조 설치지침에 의한 설치 권장		
	옥상녹화	• 서울시 보급형 옥상녹화 조성기법에 의한 설치 권장		
	녹색주차장, 투수성포장	• 서울특별시 기준에 따라, 잔디 등 투수성 재료를 사용한 녹색 주차장 설치 권장		
	신재생에너지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및 관련 지침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시설의 설치 권장		

다.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1) 대지 내 공지 및 통로에 대한 계획

구 분	계획내용		비고
전면공지	보도형 전면공지	• 보도와 접하는 전면공지 • 보도기능을 담당하도록 조성	-
	차도형 전면공지	• 보도가 없는 도로에 접하는 전면공지 • 차도 및 보도기능을 담당하도록 조성	-
	조성지침	• 인접보도 또는 차도와 단차 없이 조성 • 담장, 계단, 화단 등 차량 및 보행에 지장을 주는 시설물 설치 금지 • 공공부문 포장패턴을 우선 준용 • 인접지역 포장패턴과 조화, 내구성 있는 바닥재료로 포장 • 건축물 신축시 개발주체가 조성	-
공개공지	• 전면 도로변 가각부 및 주요 보행결절점 주변에 설치 • 일반인의 접근 및 이용에 편리하고 가로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쌈지공원 형태로 조성 • 2개소 이내로 설치, 최소폭 5m이상 • 1개소 최소면적 45㎡이상 조성 • 필로티 구조로 할 경우 유효높이 6m이상 • 조경, 벤치, 파고라, 시계탑, 분수 등 다중이용에 편리한 시설 설치		-
쌈지형 공지	• 전면 도로변 가각부 및 주요 보행결절점에 확보 • 최소폭 4m이상, 최소면적 25㎡이상 • 인접대지의 쌈지형 공지와 일체형으로 조성 • 필로티 구조로 할 경우 유효높이 6m 이상 • 보행공간은 접한 보도와 단차 없이 연속하여 조성		-
공공보행 통로	• 일반인에게 상시 개방되어 보행자만通行할 수 있도록 조성 • 필로티 구조로 할 경우 유효높이 6m이상 • 공공부문 포장패턴을 우선 준용		-
보차혼용 통로	• 일반인에게 상시 개방되어 보행 및 차량의通行에 이용될 수 있도록 조성 • 공공부문 포장패턴을 우선 준용		-

가) 공개공지(위치지정)

가구번호	계획내용		비 고
	기 정	변 경	
A1	1개소	변경없음	• 시흥대로와 북측 8m도로 교차 가각부에 1개소 지정
A2	1개소	-	• 공개공지 위치지정 폐지
B1	1개소	변경없음	• 152-3번지 필지의 남측 시흥대로변에 1개소 지정
B2	1개소	2개소	• 시흥대로와 가산로 교차 가각부에 1개소 지정 • 시흥대로와 남측 8m도로 교차 가각부에 1개소 지정(신설)
B4	1개소	2개소	• 시흥대로와 두산로 교차 가각부에 1개소 지정 • 시흥대로와 남측 8m도로 교차 가각부에 1개소 지정(신설)
C1	1개소	-	• 공개공지 위치지정 폐지
C2-1	1개소	변경없음	• 시흥대로와 범안로 교차 가각부 1개소 지정
C3	1개소	2개소	• 시흥대로와 북측 8m도로 교차 가각부에 1개소 지정 • 시흥대로와 가산로 교차 가각부에 1개소 지정(신설)
C4	1개소	2개소	• 시흥대로와 가산로 교차 가각부에 1개소 지정(신설) • 시흥대로와 남측 6m도로 교차 가각부에 1개소 지정
C5	1개소	2개소	• 시흥대로와 북측 6m도로 교차 가각부에 1개소 지정 • 시흥대로와 남측 8m도로 교차 가각부에 1개소 지정(신설)

나) 공공보행통로

가구번호	계획내용		비 고
	기 정	변 경	
C1	폭6m(1개소)	-	• 독산1 특별계획구역 해제에 따라 공공보행통로 폐지
C3	폭6m(1개소)	변경없음	-
C4	폭6m(1개소)	변경없음	-

다) 보차혼용통로

가구번호	계획내용		비 고
	기 정	변 경	
C1	-	폭6m(1개소)	• 독산1 특별계획구역 해제에 따라 신규 지정

2) 차량동선 및 주차계획에 관한 결정조서

구 분	계획내용	비 고
차량출입 불허구간	원활한 차량소통 및 차량 진출입으로 인한 보행공간단절 최소화, 보행연속성 확보	시흥대로변, 가산로, 두산로, 범안로 지정
공동주차 출입구	간선도로 내 잦은 진출입으로 인한 교통체증 및 보행환경저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필지는 이웃하는 필지와 공동주차통로 설치	-
주차 출입구	간선변 대지 중 이면부에서의 차량출입이 불가능한 대지에 한하여 주차출입구 지정	-

가) 차량출입불허구간

가구번호	계획내용		비 고
	기 정	변 경	
A1	차량출입불허구간지정	변경없음	-
A2	차량출입불허구간지정	변경없음	-
A3	차량출입불허구간지정	변경없음	-
B1	차량출입불허구간지정	변경없음	-
B2	차량출입불허구간지정	변경없음	-
B3	차량출입불허구간지정	변경없음	-
B4	차량출입불허구간지정	변경없음	-
B5	차량출입불허구간지정	변경없음	-
B6	차량출입불허구간지정	변경없음	-
C1	차량출입불허구간지정	변경없음	-
C2-1	차량출입불허구간지정	변경없음	-
C3	차량출입불허구간지정	변경없음	-
C4	차량출입불허구간지정	변경없음	-
C5	차량출입불허구간지정	변경없음	-

나) 공동주차출입구 및 주차출입구

가구번호	계획내용		비 고
	기 정	변 경	
A1	—	• 공동주차출입구 : 1개소	• 1012-15,16번지 공동주차출입구 지정
A2	—	• 공동주차출입구 : 1개소 • 주차출입구 : 1개소	• 1030-6(2,3),7번지 공동주차출입구 지정 • 1030-8번지 주차출입구 지정
A3	—	• 공동주차출입구 : 2개소 • 주차출입구 : 2개소	• 1031-5(38),9번지 공동주차출입구 지정 • 1031-10,18번지 공동주차출입구 지정 • 1031(1)번지 주차출입구 지정 • 1031-25번지 주차출입구 지정
B1	—	• 주차출입구 : 1개소	• 152-8번지 주차출입구 지정
B2	—	• 공동주차출입구 : 1개소	• 288-1(2),3(4)번지 공동주차출입구 지정
B3	—	• 공동주차출입구 : 2개소	• 289-8(9),11번지 공동주차출입구 지정 • 289-12,18번지 공동주차출입구 지정
B4	—	• 주차출입구 : 1개소	• 291-5(6) 주차출입구 지정
B6	—	• 공동주차출입구 : 1개소	• 1008-2(3),8(3,9) 공동주차출입구 지정
C1	—	• 주차출입구 : 2개소	• 292-8(9) 주차출입구 지정 • 292-37(38,39) 주차출입구 지정

4.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특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역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폐지	독산1 특별계획구역	금천구 독산동 292-5번지 일대	14,152.5	감)14,152.5	—	구역 해제
기정	독산2-1 특별계획구역	금천구 독산동 1007-19번지 일대	9,537.4	—	9,537.4	—
폐지	독산2-2 특별계획구역	금천구 독산동 1008-3번지 일대	5,463.1	감)5,463.1	—	특별계획 가능구역 변경

구역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독산3 특별계획구역	금천구 독산동 159-1번지 일대	6,833.4	감)6,833.4	-	-
변경	독산3-1 특별계획구역	금천구 독산동 159-1번지 일대	-	증)3,977.3	3,977.3	구역분할
변경	독산3-2 특별계획구역	금천구 독산동 159-22번지 일대	-	증)2,856.1	2,856.1	구역분할
기정	독산4 특별계획구역	금천구 독산동 287-1번지 일대	5,243.1	감)5,243.1	-	-
변경	독산4-1 특별계획구역	금천구 독산동 287-1번지 일대	-	증)2,407.9	2,407.9	구역분할
변경	독산4-2 특별계획구역	금천구 독산동 287-6번지 일대	-	증)2,835.2	2,835.2	구역분할
기정	독산5 특별계획구역	금천구 독산동 286-2번지 일대	4,335.8	-	4,335.8	-
신설	독산6 특별계획구역	금천구 독산동 1012번지 일대	-	증)4,735.9	4,735.9	구역 신설

주) 본 특별계획구역 면적은 사업시행단계에서 지적측량결과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음

1) 독산1 특별계획구역(특별계획구역 해제)

구 분		계획지침
토지이용		도심부적격시설 및 노후불량건축물 밀집지역을 정비하고 지역 활성화와 지구중심으로서의 이미지를 확립하기 위하여, 주변 산업단지의 기능을 보완하는 복합개발을 유도
면 적		14,153.0㎡
용도지역		근린상업지역
용도지구		중심지미관지구(시흥대로변), 최고고도지구
기반시설		- 구역면적의 10%이상 기반시설로 확보(5%이상은 소공원으로 조성) - 구역 북측 8m도로 확폭 → 10m도로 조성 - 구역 남측 20m도로 확폭 → 30m도로 조성 (독산역길 도로중심선을 기준으로,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남북방향으로 각각 5m구간을 도로 확폭)
용도	권장 용도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학원 - 판매시설 -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시설(영유아보육시설, 유치원에 한함), 노인복지시설
	저층부권장	-

구 분			계획지침	
용도	불허 용도	전층불허	• 단독주택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장의사, 옥외에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제조업소, 안마시술소, 비디오물 감상실, 단란주점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비디오물감상실에 한함) • 운수시설 • 의료시설 중 병원(정신병원 및 요양소, 격리병원에 한함) • 운동시설 중 옥외에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 숙박시설 • 위락시설 • 공장 • 창고시설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자동차관련시설 • 장례식장	
		저층부불허	-	
밀도	건폐율		60% 이내	
	용적률	기준/허용용적률	400% / 530%이하	
		상한용적률	• 허용용적률$\times(1+1.3X\text{가중치}\alpha)$ 이내 * 가중치=공공시설제공부지용적률 / 사업부지용적률 * α=공공시설제공면적 / 공공시설제공 후 대지면적	
최고높이		120m 이하		
기타	건축한계선	시흥대로변		5m
		독산역길변, 8m도로변, 소공원변		3m
		공공보행통로변		1m
	대지 내 공지	공개공지 1개소 (위치지정)		
	차량출입불허구간	시흥대로변, 독산역길변		
	인센티브	기본형 적용		
	공공보행통로	• 구역 내·외부 보행자들이 통과하여 지나갈 수 있는 공공보행통로(6m 이상) 조성		
운용기준		• 기반시설의 설치 및 조성은 사업시행자 부담을 원칙으로 함 • 기부채납에 의한 상한용적률 적용시 이면도로를 우선적으로 확폭하여 12m이하의 이면 도로를 확보하도록 함 • 본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은 사업추진을 위한 예시안으로서 계획지침내용 변경에 대한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조정이 가능함 • 시흥대로 및 독산역길 인접부에 3층 이하의 저층부 구간을 형성, 상업시설 등의 입지 권장 • 폭 20m이상 도로 변에 대하여 담장설치를 불허하도록 하며, 그 외에 대하여는 담장의 설치가 부득이하다고 사업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1.2m이하의 화목류 생울타리 설치를 허용하도록 함		

2) 독산2-1 특별계획구역

가) 기 정

구 분			계획지침	
토지이용			● 도심 부적격시설인 정육도매시장 일대를 정비하여 지역 활성화 및 이미지 제고를 위해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주변 산업단지의 기능을 보완하는 복합개발 유도	
면 적(㎡)			9,537.4㎡	
용도지역			일반상업지역	
용도지구			최고고도지구	
기반시설			● 구역면적의 15%이상 기반시설로 확보 ● 구역 서측 4m도로 확폭 → 10m도로 조성 ● 구역 동측 8m도로 확폭 → 10m도로 조성 ● 구역 남측 6m도로 확폭 → 8~16m도로 조성 ● 구역 북측 20m도로 확폭 → 25m도로 조성	
부하	권장 용도	전층권장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학원 ● 판매시설 ●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시설(영유아보육시설, 유치원에 한함), 노인복지시설	
	불허 용도	전층불허	● 단독주택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장의사, 옥외에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제조업소, 안마시술소, 비디오물 감상실, 단란주점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비디오물감상실에 한함) ● 운수시설 ● 의료시설 중 병원(정신병원 및 요양소, 격리병원에 한함) ● 운동시설 중 옥외에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 숙박시설 ● 위락시설 ● 공장 ● 창고시설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자동차관련시설 ● 장례식장	
밀도	건폐율		60% 이내	
	용적률	기준/허용용적률	600% / 800%이하	
		상한용적률	● 허용용적률 $\times(1+1.3\times\text{가중치}\times\alpha)$ 이내 * 가중치=공공시설제공부지용적률/사업부지용적률 * α =공공시설제공면적/공공시설제공 후 대지면적	
최고높이			120m	
기타	건축한계선	독산역길변, 서측 4m도로변, 남측 6m도로변, 동측 8m도로변		3m
	차량출입불허구간	독산역길변		
	대지 내 공지	공개공지 1개소 (위치지정)		
	인센티브	기본형 적용		
운용기준			● 기반시설의 설치 및 조성은 사업시행자 부담을 원칙으로 함 ● 본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은 사업추진을 위한 예시안으로서 계획지침내용 변경에 대한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조정이 가능함 ● 높이 완화는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기부채납의 공공기여도를 고려하여 위원회 심의를 통해 150m 이하로 조정이 가능함 ● 시흥대로 및 독산역길 인접부에 3층 이하의 저층부 구간을 형성, 상업시설 등의 입지 권장 ● 폭 20m이상 도로 변에 대하여 담장설치를 불허하도록 하며, 그 외에 대하여는 담장의 설치가 부득이하다고 사업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1.2m이하의 화목류 생울타리 설치를 허용하도록 함	

나) 변 경

구 분		계획지침	
토지이용		• 도심 부적격시설인 정육도매시장 일대를 정비하여 지역 활성화 및 이미지 제고 • 간선변 기능 강화 및 주변 지역의 기능을 보완하는 복합개발 유도	
면 적(㎡)		9,537.4㎡	
용도지역		일반상업지역	
용도지구		최고고도지구	
기반시설 (공공시설)		• 순부담률 15%이상 기부채납 • 도로 확폭 계획 : 구역 서측 4m도로 확폭 → 10m도로 조성 구역 동측 8m도로 확폭 → 10m도로 조성 구역 남측 6m도로 확폭 → 8~16m도로 조성 구역 북측 20m도로 확폭 → 25m도로 조성	
용도	권장 용도	전층권장	• 판매시설(게임제공업소 제외) •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시설, 노인복지시설(노인여가복지 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에 한함) •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저층부 권장 ¹⁾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불허 용도	전층불허	• 단독주택(주거복합 건축물 제외)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장의사, 욕외에 철타이 있는 골프연습장, 제조업소, 안마시술소, 공연장(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에 한함), 단란주점, 다중생활시설(고시원),수리점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에 한함),마권 장외 발매소, 마권 전 화투표소 • 운수시설 • 의료시설 중 병원(정신병원 및 요양병원에 한함), 격리병원 • 운동시설 중 욕외에 철타이 있는 골프연습장 • 숙박시설(관광숙박시설 제외) • 위락시설 • 공장 • 창고시설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자동차관련시설 • 장례식장
		건폐율	60% 이내
밀도	용적률	기준/허용용적률	600% / 800%이하
		상한용적률	• 허용용적률$\times(1+1.3\times\text{가중치}\times\alpha)$ 이내 * 가중치=공공시설제공부지용적률/사업부지용적률 * α=공공시설제공면적/공공시설제공 후 대지면적
최고높이		120m 이하	
기타	건축한계선	범안로변, 서측 4m도로변, 남측 6m도로변, 동측 8m도로변	
	차량출입불허구간	범안로변	
	대지 내 공지	공개공지 1개소 (위치지정)	
	인센티브	D2 적용	
운용기준		• 기반시설의 설치 및 조성은 사업시행자 부담을 원칙으로 함 • 기반시설의 위치, 용도, 규모 등 공공시설 기부채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세부개발계획 수립 이전에 관련부서와 사전 협의하여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결정되며, 변동될 수 있음 • 구역 외 독산동 1008-1번지(면적 384.3㎡) 범안로 확폭구간(5m)에 대한 설치 조성은 독산2-1 특별계획구역 사업시행자가 시행하여 기부채납 - 도로조성 부분을 제외한 독산동 1008-1번지 잔여 토지는 독산2-1 특별계획구역 사업시행자가 사용승인 전까지 기부채납 • 본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은 사업추진을 위한 예시안으로서 계획지침내용 변경에 대한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조정이 가능함 • 시흥대로 및 범안로 인접부에 3층 이하의 저층부 구간을 형성, 상업시설 등의 입지 권장 • 폭 20m이상 도로 변에 대하여 담장설치를 불허하도록 하며, 그 외에 대하여는 담장의 설치가 부득이하다고 사업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1.2m이하의 화목류 생울타리 설치를 허용하도록 함	

주) 저층부 : 건축물 1층 바닥을 기준으로 1~3층 구간

3) 독산2-2 특별계획구역(특별계획구역 해제)

가) 기 정

구 분			계획지침	
토지이용			• 도심 부적격시설인 정육도매시장 일대를 정비하여 지역 활성화 및 이미지 제고를 위해 특별계획 구역으로 지정하고 주변 산업단지의 기능을 보완하는 복합개발 유도	
면 적(㎡)			5,463.1㎡	
용도지역			근린상업지역	
용도지구			최고고도지구, 중심지미관지구(시흥대로변)	
기반시설			• 구역면적의 15%이상 기반시설로 확보 ※ 공원면적은 790.3㎡ 이상 확보 • 구역 북측 20m도로 확폭 → 30m도로 조성 (독산역길 도로중심선을 기준으로, 인접대지 경계선 으로부터 남북방향으로 각각 5m구간을 도로 확폭)	
용도	권장 용도	전층권장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학원 • 판매시설 •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시설(영유아보육시설, 유치원에 한함), 노인복지시설	
	불허 용도	전층불허	• 단독주택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장의사, 옥외에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제조업소, 안마시술소, 비디오물 감상실, 단란주점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비디오물감상실에 한함) • 운수시설 • 의료시설 중 병원(정신병원 및 요양소, 격리병원에 한함) • 운동시설 중 옥외에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 숙박시설 • 위락시설 • 공장 • 창고시설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자동차관련시설 • 장례식장	
밀도	건폐율		60% 이내	
	용적률	기준/허용용적률	400% / 530%이하	
		상한용적률	• 허용용적률 $X(1+1.3X\text{가중치}X\alpha)$ 이내 * 가중치=공공시설제공부지용적률/사업부지용적률 * α =공공시설제공면적/공공시설제공 후 대지면적	
최고높이			120m	
기타	건축한계선	시흥대로변		5m
		북측 공원경계, 서측8m 도로변, 남측대지 경계부		3m
	차량출입불허구간		독산역길변, 시흥대로변	
	인센티브		기본형 적용	
운용기준			• 기반시설의 설치 및 조성은 사업시행자 부담을 원칙으로 함 • 본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은 사업추진을 위한 예시안으로서 계획지침내용 변경에 대한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조정이 가능함 • 높이 완화는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기부채납의 공공기여도를 고려하여 위원회 심의를 통해 150m 이하로 조정이 가능함 • 시흥대로 및 독산역길 인접부에 3층 이하의 저층부 구간을 형성, 상업시설 등의 입지 권장 • 폭 20m이상 도로 변에 대하여 담장설치를 불허하도록 하며, 그 외에 대하여는 담장의 설치가 부득이하다고 사업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1.2m이하의 화목류 생울타리 설치를 허용하도록 함	

4) 독산3 특별계획구역(독산3-1,3-2특별계획구역 분리)

가) 기 정

구 분			계획지침	
토지이용			• 신안산선(예정) 등 광역교통시설 입지에 따른 지구기능 확대를 고려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 시흥대로변으로 업무상업기능으로의 토지이용변화 등 도시여건 변화를 고려한 복합개발 유도	
면 적			• 6,833.0㎡	
용도지역			• 현재 : 제3종일반주거지역 •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	
용도지구			• 중심지미관지구(시흥대로변), 최고고도지구	
기반시설			• 구역면적의 15%이상 기반시설로 확보 • 도로확폭계획 : 구역 북측, 동측 8m도로 확폭 → 10m도로 조성 • 공공공지 확보	
용도	권장 용도	전층권장	• 업무시설	
		저층부권장	• 판매시설 중 상점 •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시설(업무시설 내 영유아보육시설에 한함)	
	불허 용도	전층불허	• 단독주택 • 공동주택(주거복합 건축물 제외)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장의사, 옥외에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제조업소, 안마시술소, 비디오물 감상실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비디오물감상실에 한함) • 운수시설 • 의료시설 중 병원(정신병원 및 요양소, 격리병원에 한함) • 운동시설 중 옥외에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 공장 • 창고시설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 • 장례식장	
		저층부불허	-	
밀도	건폐율		60% 이내	
	용적률	기준/허용용적률	250% / 350% 이하	
		상한용적률 (400% 이하)	• 허용용적률 $X(1+1.3X\text{가중치}X\alpha)$ 이내 * 가중치=공공시설제공부지용적률 / 사업부지용적률 * α =공공시설제공면적 / 공공시설제공 후 대지면적	
최고높이			80m 이하	
기타	건축한계선	시흥대로변		3m
		8m도로변		1m
		공공공지변, 공공보행통로변		1m
	차량출입불허구간		시흥대로변, 20m도로변	
	대지 내 공지		공개공지 1개소 (위치지정)	
	인센티브		기본형 적용	
	공공보행통로		• 구역 내·외부 보행자들이 통과하여 지나갈 수 있는 공공보행통로(6m이상) 조성	
운용기준			• 기반시설의 설치 및 조성은 사업시행자 부담을 원칙으로 함 • 기부채납에 의한 상한용적률 적용시 이면도로를 우선적으로 확폭하여 12m이하의 이면도로를 확보 하도록 함 • 공동주택 건립시에는 주거부분의 용적률은 250%이하로 하도록 함 • 상한용적률 적용에 있어 공공시설제공면적은 용도지역상향에 따른 공공시설제공 면적은 제외함 • 본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은 사업추진을 위한 예시안으로서 계획지침내용 변경에 대한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조정이 가능함 • 시흥대로 및 20m 도로변에 면하는 건축물은 3층이하의 저층부구간을 형성하도록 함 • 폭 20m이상 도로 변에 대하여 담장설치를 불허하도록 하며, 그 외에 대하여는 담장의 설치가 부득이하다고 사업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1.2m이하의 화목류 생물타리 설치를 허용하도록 함	

나) 변경

① 독산3-1특별계획구역

구 분		계획지침		
토지이용		● 신안산선 신설(예정)에 따른 역세권 기능 강화 ● 도시여건 변화를 고려한 시흥대로변 활성화 및 주변 이면부 주거기능 지원		
면 적		● 3,977.3㎡		
용도지역		● 현재 : 제3종일반주거지역 ●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		
용도지구		● 중심지미관지구(시흥대로변), 최고고도지구		
기반시설 (공공시설)		● 순부담률 15%이상 기부채납 ● 도로 확폭 계획 : 구역 북·동측 8m도로 확폭 → 10m도로 조성 ● 건축물 내 기반시설 등		
용도	권장 용도	전충권장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학원 ●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도서관 ●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시설, 노인복지시설(노인여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에 한함) ●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저층부 권장 ¹⁾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소매점, 휴게음식점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 판매시설 중 상점	
	불허 용도	전충불허	● 단독주택(주거복합 건축물 제외) ● 공동주택(주거복합 건축물 제외)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장의사, 옥외에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제조업소, 안마시술소, 공연장(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에 한함), 다중생활시설(고시원), 수리점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에 한함), 마권 장외 발매소, 마권 전 화투표소 ● 운수시설 ● 의료시설 중 병원(정신병원 및 요양병원에 한함), 격리병원 ● 운동시설 중 옥외에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 공장 ● 창고시설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 ● 장례식장	
		저층부불허	-	
밀도	건폐율		60% 이내	
	용적률	기준/허용용적률	250% / 350% 이하	
		상한용적률 (400% 이하)	● 허용용적률 $X(1+1.3X\text{가중치}X\alpha)$ 이내 * 가중치=공공시설제공부지용적률 / 사업부지용적률 * α =공공시설제공면적 / 공공시설제공 후 대지면적	
최고높이		80m 이하		
기타	건축한계선	시흥대로변		3m
		동측 8m도로변, 북측 8m도로변		1m
	차량출입불허구간	시흥대로변, 가산로변		
	대지 내 공지	공개공지 1개소 (위치지정)		
	인센티브	D1 적용		
공공보행통로		● 구역 내·외부 보행자들이 통과하여 지나갈 수 있는 공공보행통로(6m이상) 조성		
운용기준		● 기반시설의 설치 및 조성은 사업시행자 부담을 원칙으로 함 ● 기반시설의 위치, 용도, 규모 등 공공시설 기부채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세부개발계획 수립 이전에 관련부서와 사전 협의하여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결정되며, 변동될 수 있음 ● 기부채납에 의한 상한용적률 적용시 이면도로를 우선적으로 확폭하여 12m이하의 이면도로를 확보 하도록 함 ● 본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은 사업추진을 위한 예시안으로서 계획지침내용 변경에 대한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조정이 가능함 ● 시흥대로 및 20m 도로변에 면하는 건축물은 3층이하의 저층부구간을 형성하도록 함 ● 폭 20m이상 도로 변에 대하여 담장설치를 불허하도록 하며, 그 외에 대하여는 담장의 설치가 부득이하다고 사업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1.2m이하의 화목류 생울타리 설치를 허용하도록 함 ● 다음의 획지분할요건에 충족 할 경우 획지분할에 의한 세부개발계획 수립 가능 - 획지의 최소개발규모는 2,000㎡ 내외로 하며 분할 된 획지의 잔여면적이 최소 2,000㎡ 내외 일 경우 분할 가능(급전구 및 서울시 관련부서 사전협의 필요) - 간선도로변 차량출입 불허(간선/이면 필지를 포함하여 구역 지정) - 부정형, 요철형 구역 개발 불허		

주) 저층부 : 건축물 1층 바닥을 기준으로 1~3층 구간

② 독산3-2특별계획구역

구 분		계획지침
토지이용	면 적	• 신안산선 신설(예정)에 따른 역세권 기능 강화 • 도시여건 변화를 고려한 시흥대로변 활성화 및 주변 이면부 주거기능 지원
	용도지역	• 현재 : 제3종일반주거지역 •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
	용도지구	• 중심지미관지구(시흥대로변), 최고고도지구
	기반시설 (공공시설)	• 순부담률 15%이상 기부채납 • 도로 확폭 계획 : 구역 동측 8m도로 확폭 → 10m도로 조성 • 건축물 내 기반시설 등
	권장 용도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학원 •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도서관 •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시설, 노인복지시설(노인여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에 한함) •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용도	저층부 권장 ¹⁾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소매점, 휴게음식점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 판매시설 중 상점
	불허 용도	• 단독주택(주거복합 건축물 제외) • 공동주택(주거복합 건축물 제외)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장의사, 옥외에 철타이 있는 골프연습장, 제조업소, 안마시술소, 공연장(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에 한함), 다중생활시설(고시원), 수리점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에 한함), 마권 장외 발매소, 마권 전화투표소 • 운수시설 • 의료시설 중 병원(정신병원 및 요양병원에 한함), 격리병원 • 운동시설 중 옥외에 철타이 있는 골프연습장 • 공장 • 창고시설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 • 장례식장
	저층부불허	-
	건폐율	60% 이내
밀도	용적률	기준/허용용적률 250% / 350% 이하
	상한용적률 (400% 이하)	• 허용용적률 $X(1+1.3X\text{가중치}X\alpha)$ 이내 * 가중치=공공시설제공부지용적률 / 사업부지용적률 * α =공공시설제공면적 / 공공시설제공 후 대지면적
최고높이		80m 이하
기타	건축한계선	시흥대로변, 가산로변 3m 동측 8m도로변 1m
	차량출입불허구간	시흥대로변, 가산로변
	대지 내 공지	공개공지 1개소 (위치지정)
	인센티브	D1 적용
	공공보행통로	• 구역 내·외부 보행자들이 통과하여 지나갈 수 있는 공공보행통로(6m이상) 조성
운용기준		• 기반시설의 설치 및 조성은 사업시행자 부담을 원칙으로 함 • 기반시설의 위치, 용도, 규모 등 공공시설 기부채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세부개발계획 수립 이전에 관련부서와 사전 협의하여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결정되며, 변동될 수 있음 • 기부채납에 의한 상한용적률 적용시 이면도로를 우선적으로 확폭하여 12m이하의 이면도로를 확보하도록 함 • 본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은 사업추진을 위한 예시안으로서 계획지침내용 변경에 대한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조정이 가능함 • 시흥대로 및 20m 도로변에 면하는 건축물은 3층이하의 저층부구간을 형성하도록 함 • 폭 20m이상 도로 변에 대하여 담장설치를 불허하도록 하며, 그 외에 대하여는 담장의 설치가 부득이하다고 사업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1.2m이하의 화목류 생울타리 설치를 허용하도록 함

주) 저층부 : 건축물 1층 바닥을 기준으로 1~3층 구간

5) 독산4 특별계획구역(독산4-1,4-2특별계획구역 분리)

가) 기 정

구 분			계획지침		
토지이용			• 신안산선(예정) 등 광역교통시설 입지에 따른 지구기능 확대를 고려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 시흥대로변으로 업무상업기능으로의 토지이용변화 등 도시여건 변화를 고려한 복합개발 유도		
면 적			• 5,243.0㎡		
용도지역			• 현재 : 제3종일반주거지역 •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		
용도지구			• 중심지미관지구(시흥대로변), 최고고도지구		
기반시설			• 구역면적의 15%이상 기반시설로 확보 • 도로확폭계획 : 구역 동측 8m도로 확폭 → 10m도로 조성, 남측 6m도로 확폭 →8m(독산4, 5에서 1m씩 확폭하여 총 2m를 확폭함) • 공공공지 확보		
용도	권장 용도	전층권장	• 업무시설		
		저층부권장	• 판매시설 중 상점 •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시설(업무시설 내 영유아보육시설에 한함)		
	불허 용도	전층불허	• 단독주택 • 공동주택(주거복합 건축물 제외)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장의사, 옥외에 철타이 있는 골프연습장, 제조업소, 안마시술소, 비디오물감상실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비디오물감상실에 한함) • 운수시설 • 의료시설 중 병원(정신병원 및 요양소, 격리병원에 한함) • 운동시설 중 옥외에 철타이 있는 골프연습장 • 공장 • 창고시설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 • 장례식장		
			저층부불허	-	
			건폐율		60% 이내
밀도	용적률	기준/허용용적률	250% / 350% 이하		
		상한용적률 (400% 이하)	• 허용용적률 $\times(1+1.3\times\text{가중치}\times\alpha)$ 이내 * 가중치=공공시설제공부지용적률 / 사업부지용적률 * α =공공시설제공면적 / 공공시설제공 후 대지면적		
최고높이			80m 이하		
기타	건축한계선	시흥대로변	3m		
		6m, 8m도로변	1m		
		공공공지변, 공공보행통로변	1m		
기타	차량출입불허구간	시흥대로변, 20m도로변			
	대지 내 공지	공개공지 1개소 (위치지정)			
	인센티브	기본형 적용			
	공공보행통로	• 구역 내·외부 보행자들이 통과하여 지나갈 수 있는 공공보행통로(6m이상) 조성			
운용기준			• 기반시설의 설치 및 조성은 사업시행자 부담을 원칙으로 함 • 기부채납에 의한 상한용적률 적용시 이면도로를 우선적으로 확폭하여 12m이하의 이면도로를 확보하도록 함 • 공동주택 건립시에는 주거부분의 용적률은 250%이하로 하도록 함 • 상한용적률 적용에 있어 공공시설제공면적은 용도지역상향에 따른 공공시설제공 면적은 제외함 • 본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은 사업추진을 위한 예시안으로서 계획지침내용 변경에 대한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조정이 가능함 • 시흥대로 및 20m 도로변에 면하는 건축물은 3층이하의 저층부구간을 형성하도록 함 • 폭 20m이상 도로 변에 대하여 담장설치를 불허하도록 하며, 그 외에 대하여는 담장의 설치가 부득이하다고 사업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1.2m이하의 화목류 생울타리 설치를 허용하도록 함		

나) 변경

① 독산4-1특별계획구역

구 분		계획지침	
토지이용		● 신안산선 신설(예정)에 따른 역세권 기능 강화 ● 도시여건 변화를 고려한 시흥대로변 활성화 및 주변 이면부 주거기능 지원	
면 적		● 2,407.9㎡	
용도지역		● 현재 : 제3종일반주거지역 ●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	
용도지구		● 중심지미관지구(시흥대로변), 최고고도지구	
기반시설 (공공시설)		● 순부담률 15%이상 기부채납 ● 도로 확폭 계획 : 구역 동측 8m도로 확폭 → 10m도로 조성 ● 건축물 내 기반시설 등	
용도	권장 용도	전충권장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학원 ●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도서관 ●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시설, 노인복지시설(노인여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에 한함) ●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저층부 권장 ¹⁾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소매점, 휴게음식점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 판매시설 중 상점
	불허 용도	전충불허	● 단독주택(주거복합 건축물 제외) ● 공동주택(주거복합 건축물 제외)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장의사, 옥외에 철타이 있는 골프연습장, 제조업소, 안마시술소, 공연장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에 한함), 다중생활시설(고시원), 수리점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에 한함), 마권 장외 발매소, 마권 전화투표소 ● 운수시설 ● 의료시설 중 병원(정신병원 및 요양병원에 한함), 격리병원 ● 운동시설 중 옥외에 철타이 있는 골프연습장 ● 공장 ● 창고시설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 ● 장례식장
		저층부불허	-
밀도	건폐율	60% 이내	
	용적률	기준/허용용적률	250% / 350% 이하
		상한용적률 (400% 이하)	● 허용용적률X(1+1.3X가중치Xα) 이내 * 가중치=공공시설제공부지용적률 / 사업부지용적률 * α=공공시설제공면적 / 공공시설제공 후 대지면적
최고높이		80m 이하	
기타	건축한계선	시흥대로변, 가산로변	3m
		동측 8m도로변	1m
	차량출입불허구간	시흥대로변, 가산로변	
	대지 내 공지	공개공지 1개소 (위치지정)	
	인센티브	D1 적용	
공공보행통로		● 구역 내·외부 보행자들이 통과하여 지나갈 수 있는 공공보행통로 조성 ● 독산4-1구역 내 3m이상, 독산4-2구역 내 3m이상으로 총 6m이상 공공보행통로 조성	
운영기준		● 기반시설의 설치 및 조성은 사업시행자 부담을 원칙으로 함 ● 기반시설의 위치, 용도, 규모 등 공공시설 기부채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세부개발계획 수립 이전에 관련부서와 사전 협의하여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결정되며, 변동될 수 있음 ● 기부채납에 의한 상한용적률 적용시 이면도로를 우선적으로 확보하여 12m이하의 이면도로를 확보하도록 함 ● 본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은 사업추진을 위한 예시안으로서 계획지침내용 변경에 대한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조정이 가능함 ● 시흥대로 및 20m 도로변에 면하는 건축물은 3층이하의 저층부구간을 형성하도록 함 ● 폭 20m이상 도로 변에 대하여 담장설치를 불허하도록 하며, 그 외에 대하여는 담장의 설치가 부득이하다고 사업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1.2m이하의 화목류 생울타리 설치를 허용하도록 함	

주) 저층부 : 건축물 1층 바닥을 기준으로 1~3층 구간

② 독산4-2특별계획구역

구 분		계획지침
토지이용		- 신안산선 신설(예정)에 따른 역세권 기능 강화 - 도시여건 변화를 고려한 시흥대로변 활성화 및 주변 이면부 주거기능 지원
면 적		2,835.2㎡
용도지역		- 현재 : 제3종일반주거지역 -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
용도지구		중심지미관지구(시흥대로변), 최고고도지구
기반시설 (공공시설)		- 순부담률 15%이상 기부채납 - 도로 확폭 계획 : 구역 동측 8m도로 확폭 → 10m도로 조성, 구역 남측 6m도로 확폭 → 8m(독산4-2,5에서 1m씩 확폭하여 총 2m를 확폭함) - 건축물 내 기반시설 등
용도	권장 용도	전층권장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학원 •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도서관 -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시설, 노인복지시설(노인여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에 한함) -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저층부 권장 ¹⁾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소매점, 휴게음식점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 판매시설 중 상점
	불허 용도	전층불허 - 단독주택(주거복합 건축물 제외) • 공동주택(주거복합 건축물 제외)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장의사, 옥외에 철타이 있는 골프연습장, 제조업소, 안마시술소, 공연장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에 한함), 다중생활시설(고시원), 수리점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에 한함), 마권 장외 발매소, 마권 전화투표소 - 운수시설 • 의료시설 중 병원(정신병원 및 요양병원에 한함), 격리병원 - 운동시설 중 옥외에 철타이 있는 골프연습장 • 공장 • 창고시설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 • 장례식장
		저층부불허 -
밀도	건폐율	60% 이내
	용적률	기준/허용용적률 250% / 350% 이하
		상한용적률 (400% 이하)
최고높이		80m 이하
기타	건축한계선	시흥대로변 3m
		동측 8m도로변, 남측 6m도로변 1m
	차량출입불허구간	시흥대로변
	대지 내 공지	공개공지 1개소 (위치지정)
	인센티브	D1 적용
공공보행통로		- 구역 내·외부 보행자들이 통과하여 지나갈 수 있는 공공보행통로 조성 - 독산4-1구역 내 3m이상, 독산4-2구역 내 3m이상으로 총 6m이상 공공보행통로 조성
운용기준		- 기반시설의 설치 및 조성은 사업시행자 부담을 원칙으로 함 - 기반시설의 위치, 용도, 규모 등 공공시설 기부채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세부개발계획 수립 이전에 관련부서와 사전 협의하여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결정되며, 변동될 수 있음 - 기부채납에 의한 상한용적률 적용시 이면도로를 우선적으로 확폭하여 12m이하의 이면도로를 확보하도록 함 - 본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은 사업추진을 위한 예시안으로서 계획지침내용 변경에 대한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조정이 가능함 - 시흥대로 및 20m 도로변에 면하는 건축물은 3층이하의 저층부구간을 형성하도록 함 - 폭 20m이상 도로 변에 대하여 담장설치를 불허하도록 하며, 그 외에 대하여는 담장의 설치가 부득이하다고 사업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1.2m이하의 화목류 생울타리 설치를 허용하도록 함

주) 저층부 : 건축물 1층 바닥을 기준으로 1~3층 구간

6) 독산5 특별계획구역

가) 기 정

구 분		계획지침	
토지이용		• 신안산선(예정) 등 광역교통시설 입지에 따른 지구기능 확대를 고려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 시흥대로변으로 업무·상업기능으로의 토지이용변화 등 도시여건 변화를 고려한 복합개발 유도	
면 적(㎡)		• 4,336.0㎡	
용도지역		• 현재 : 제3종일반주거지역 •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	
용도지구		• 중심지미관지구(시흥대로변), 최고고도지구	
기반시설		• 구역면적의 15%이상 기반시설로 확보 • 도로확폭계획 : 구역 동측 8m도로 확폭 → 10m도로 조성, 북측 6m도로 확폭 → 8m도로 조성, 남측 8m도로 확폭 → 10m도로 조성 • 공공공지 확보	
용도	권장 용도	전층권장	• 업무시설
		저층부권장	• 판매시설 중 상점 •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시설(업무시설 내 영유아보육시설에 한함)
	불허 용도	전층불허	• 단독주택 • 공동주택(주거복합 건축물 제외)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장의사, 옥외에 철타이 있는 골프연습장, 제조업소, 안마시술소, 비디오물 감상실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비디오물감상실에 한함) • 운수시설 • 의료시설 중 병원(정신병원 및 요양소, 격리병원에 한함) • 운동시설 중 옥외에 철타이 있는 골프연습장 • 공장 • 창고시설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 • 장례식장
			저층부불허
밀도	건폐율		60% 이내
	용적률	기준/허용용적률	250% / 350% 이하
		상한용적률 (400% 이하)	• 허용용적률 $\times(1+1.3\times\text{가중치}\times\alpha)$ 이내 * 가중치=공공시설제공부지용적률 / 사업부지용적률 * α =공공시설제공면적 / 공공시설제공 후 대지면적
최고높이		80m 이하	
기타	건축한계선	시흥대로변	3m
		6m, 8m도로변	1m
		공공공지변	1m
	차량출입불허구간	시흥대로변	
	대지 내 공지	공개공지 1개소 (위치지정)	
인센티브		기본형 적용	
공공보행통로		• 구역 내·외부 보행자들이 통과하여 지나갈 수 있는 공공보행통로(6m이상) 조성 권장	
운영기준			
• 기반시설의 설치 및 조성은 사업시행자 부담을 원칙으로 함			
• 기부채납에 의한 상한용적률 적용시 이면도로를 우선적으로 확폭하여 12m이하의 이면도로를 확보하도록 함			
• 공동주택 건립시에는 주거부분의 용적률은 250%이하로 하도록 함			
• 상한용적률 적용에 있어 공공시설제공면적은 용도지역상향에 따른 공공시설제공 면적은 제외함			
• 본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은 사업추진을 위한 예시안으로서 계획지침내용 변경에 대한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조정이 가능함			
• 시흥대로변에 면하는 건축물은 3층이하의 저층부구간을 형성하도록 함			
• 폭 20m이상 도로 변에 대하여 담장설치를 불허하도록 하며, 그 외에 대하여는 담장의 설치가 부득이하다고 사업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1.2m이하의 화목류 생물타리설치를 허용하도록 함			

나) 변 경

구 분		계획지침
토지이용		• 신안산선 신설(예정)에 따른 역세권 기능 강화 • 도시여건 변화를 고려한 시흥대로변 활성화 및 주변 이면부 주거기능 지원
면 적(㎡)		• 4,336.0㎡
용도지역		• 현재 : 제3종일반주거지역 •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
용도지구		• 중심지미관지구(시흥대로변), 최고고도지구
기반시설 (공공시설)		• 순부담률 15%이상 기부채납 • 도로 확폭 계획 : 구역 동측 8m도로 확폭 → 10m도로 조성 구역 북측 6m도로 확폭 → 8m도로 조성(독산4-2,5에서 1m씩 확폭하여 총 2m를 확폭함) 구역 남측 8m도로 확폭 → 12m도로 조성(독산5,6에서 2m씩 확폭하여 총 4m를 확폭함) • 건축물 내 기반시설,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설치 등 • 지하철 연결도로(출입구)의 건축물 내 또는 대지 내 설치 검토
용도	권장용도	전층권장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학원 •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도서관 •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시설, 노인복지시설(노인여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에 한함) •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저층부권장¹⁾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소매점, 휴게음식점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 판매시설 중 상점
	불허용도	• 단독주택(주거복합 건축물 제외) • 공동주택(주거복합 건축물 제외)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장의사, 욕외에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제조업소, 안마시술소, 공연장(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에 한함), 다중생활시설(고시원), 수리점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에 한함), 마권 장외 발매소, 마권 전 화투표소 • 운수시설 • 의료시설 중 병원(정신병원 및 요양병원에 한함), 격리병원 • 운동시설 중 욕외에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 공장 • 창고시설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 • 장례식장
	저층부불허	-
	건폐율	60% 이내
밀도	용적률	기준/허용용적률 250% / 350% 이하 상한용적률 (400% 이하) • 허용용적률$\times(1+1.3X\text{가중치}\alpha)$ 이내 * 가중치=공공시설제공부지용적률 / 사업부지용적률 * α=공공시설제공면적 / 공공시설제공 후 대지면적
	최고높이	80m 이하
기타	건축한계선	시흥대로변 3m 남측 8m도로변 5m 동측 8m도로변, 북측 6m도로변 1m
	차량출입불허구간	시흥대로변
	대지 내 공지	공개공지 2개소 (위치지정)
	인센티브	D1 적용
공공보행통로		• 구역 내·외부 보행자들이 통과하여 지나갈 수 있는 공공보행통로(6m이상) 조성 권장
운용기준		• 기반시설의 설치 및 조성은 사업시행자 부담을 원칙으로 함 • 기반시설의 위치, 용도, 규모 등 공공시설 기부채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세부개발계획 수립 이전에 관련부서와 사전 협의하여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결정되며, 변동될 수 있음 • 기부채납에 의한 상한용적률 적용시 이면도로를 우선적으로 확폭하여 12m이하의 이면도로를 확보하도록 함 • 본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은 사업추진을 위한 예시안으로서 계획지침내용 변경에 대한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조정이 가능함 • 시흥대로변에 면하는 건축물은 3층이하의 저층부구간을 형성하도록 함 • 폭 20m이상 도로 변에 대하여 담장설치를 불허하도록 하며, 그 외에 대하여는 담장의 설치가 부득이하다고 사업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1.2m이하의 화목류 생울타리 설치를 허용하도록 함

주) 저층부 : 건축물 1층 바닥을 기준으로 1~3층 구간

7) 독산6 특별계획구역 - 신설

구 분			계획지침	
토지이용			● 신안산선 신설(예정)에 따른 역세권 기능 강화 ● 도시여건 변화를 고려한 시흥대로변 활성화 및 주변 이면부 주거기능 지원	
면 적(㎡)			● 4,735.9㎡	
용도지역			● 근린상업지역	
용도지구			● 중심지미관지구(시흥대로변), 최고고도지구	
기반시설 (공공시설)			● 순부담률 15%이상 기부채납 ● 도로 확폭 계획 : 구역 북측 8m도로 확폭 → 12m도로 조성(독산5,6에서 2m씩 확폭하여 총 4m를 확폭함) ● 건축물 내 기반시설,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설치 등 ● 지하철 연결통로(출입구)의 건축물 내 또는 대지 내 설치 검토	
용도	권장 용도	전층권장	● 판매시설(게임제공업소 제외) ●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시설, 노인복지시설(노인여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에 한함) ●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저층부 권장 ¹⁾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소매점, 휴게음식점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공연장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불허 용도	전층불허	● 단독주택(주거복합 건축물 제외)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장의사, 욕외에 철타이 있는 골프연습장, 제조업소, 안마시술소, 공연장(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에 한함), 단란주점, 다중생활시설(고시원), 수리점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에 한함), 마권 장외 발매소, 마권 전 화투표소 ● 운수시설 ● 의료시설 중 병원(정신병원 및 요양병원에 한함), 격리병원 ● 운동시설 중 욕외에 철타이 있는 골프연습장 ● 숙박시설(관광숙박시설 제외) ● 위락시설 ● 공장 ● 창고시설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자동차관련시설 ● 장례식장	
		저층부불허	-	
		밀도	건폐율	60% 이내
용적률	기준/허용용적률	300% / 500% 이하		
	상한용적률	● 허용용적률 $\times(1+1.3X\text{가중치}\alpha)$ 이내 * 가중치=공공시설제공부지용적률 / 사업부지용적률 * α =공공시설제공면적 / 공공시설제공 후 대지면적		
최고높이			100m 이하	
기타	건축한계선	시흥대로변		3m
		북측 8m도로변		5m
		동측 8m도로변, 남측 대지 경계부		3m
	차량출입불허구간		시흥대로변	
	대지 내 공지		공개공지 1개소 (위치지정)	
인센티브		D3 적용		
운영기준			● 기반시설의 설치 및 조성은 사업시행자 부담을 원칙으로 함 ● 기반시설의 위치, 용도, 규모 등 공공시설 기부채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세부개발계획 수립 이전에 관련부서와 사전 협의하여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결정되며, 변동될 수 있음 ● 기부채납에 의한 상한용적률 적용시 이면도로를 우선적으로 확폭하여 12m이하의 이면도로를 확보하도록 함 ● 본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은 사업추진을 위한 예시안으로서 계획지침내용 변경에 대한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조정이 가능함 ● 시흥대로 인접부에 3층 이하의 저층부 구간을 형성, 상업시설 등의 입지 권장 ● 폭 20m이상 도로 변에 대하여 담장설치를 불허하도록 하며, 그 외에 대하여는 담장의 설치가 부득이하다고 사업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1.2m이하의 화목류 생울타리 설치를 허용하도록 함	

주) 저층부 : 건축물 1층 바닥을 기준으로 1~3층 구간

5. 특별계획가능구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특별계획가능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역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독산2-2 특별계획가능구역	금천구 독산동 1008-3번지 일대	-	증)5,463.1	5,463.1	

주) 본 특별계획가능구역 면적은 사업시행단계에서 지적측량결과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음

1) 독산2-2 특별계획가능구역 - 신설

구 분			계획지침	
토지이용			• 도심 부적격시설인 정육도매시장 일대를 정비하여 지역 활성화 및 이미지 제고 • 간선변 기능 강화 및 주변 지역의 기능을 보완하는 복합개발 유도	
면 적(㎡)			• 5,463.1㎡	
용도지역			• 근린상업지역	
용도지구			• 최고고도지구, 중심지미관지구(시흥대로변)	
기반시설 (공공시설)			• 순부담률 15%이상 기부채납 • 도로 확폭 계획 : 구역 북측 20m도로 확폭 → 25m도로 조성 • 건축물 내 기반시설 등	
용도	권장 용도	전층권장	• 판매시설(계입제공업소 제외) •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시설, 노인복지시설(노인여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에 한함) •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저층부 권장 ¹⁾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용도	불허 용도	전층불허	• 단독주택(주거복합 건축물 제외)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장의사, 옥외에 철타이 있는 골프연습장, 제조업소, 안마시술소, 공연장(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에 한함), 단란주점, 다중생활시설(고시원), 수리점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에 한함), 마권 장외 발매소, 마권 전 화투표소 • 운수시설 • 의료시설 중 병원(정신병원 및 요양병원에 한함), 격리병원 • 운동시설 중 옥외에 철타이 있는 골프연습장 • 숙박시설(관광숙박시설 제외) • 위락시설 • 공장 • 창고시설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자동차관련시설 • 장례식장	
밀도	건폐율		60% 이내	
	용적률	기준/허용용적률	400% / 530%이하	
		상한용적률	• 허용용적률$X(1+1.3X가중치X\alpha)$ 이내 * 가중치=공공시설제공부지용적률/사업부지용적률 * α=공공시설제공면적/공공시설제공 후 대지면적	
최고높이			120m 이하	
기타	건축한계선	시흥대로변, 법안로변, 서측 8m도로변, 남측대지 경계부		3m
	차량출입불허구간	시흥대로변, 법안로변		
	대지 내 공지	공개공지 1개소 (위치지정)		
	인센티브	D2 적용		

구 분	계획지침
운용기준	• 기반시설의 설치 및 조성은 사업시행자 부담을 원칙으로 함 • 기반시설의 위치, 용도, 규모 등 공공시설 기부채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세부개발계획 수립 이전에 관련부서와 사전 협의하여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결정되며, 변동될 수 있음 • 구역 외 독산동 1008-1번지(면적 384.3㎡) 범안로 확폭구간(5m)에 대한 설치 조성은 독산2-1 특별계획구역 사업시행자가 시행하여 기부채납 - 도로조성 부분을 제외한 독산동 1008-1번지 잔여 토지는 독산2-1 특별계획구역 사업시행자가 사용승인 전까지 기부채납 • 독산2-2 특별계획가능구역 내 범안로(중로 1-111호선) 개설 이전에 독산2-2 특별계획가능구역 세부개발계획을 수립 할 경우, 기부채납에 의한 상한용적률 적용시 범안로를 우선적으로 확폭하여 기반시설을 확보하도록 함 • 본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은 사업추진을 위한 예시안으로서 계획지침내용 변경에 대한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조정이 가능함 • 시흥대로 및 범안로 인접부에 3층 이하의 저층부 구간을 형성, 상업시설 등의 입지 권장 • 폭 20m이상 도로 변에 대하여 담장설치를 불허하도록 하며, 그 외에 대하여는 담장의 설치가 부득이하다고 사업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1.2m이하의 화목류 생물타리 설치를 허용하도록 함

주) 저층부 : 건축물 1층 바닥을 기준으로 1~3층 구간

6. 경미한 변경에 관한 계획

-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5조 제4항,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제18조 등의 규정에 의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4항 제9호」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 계획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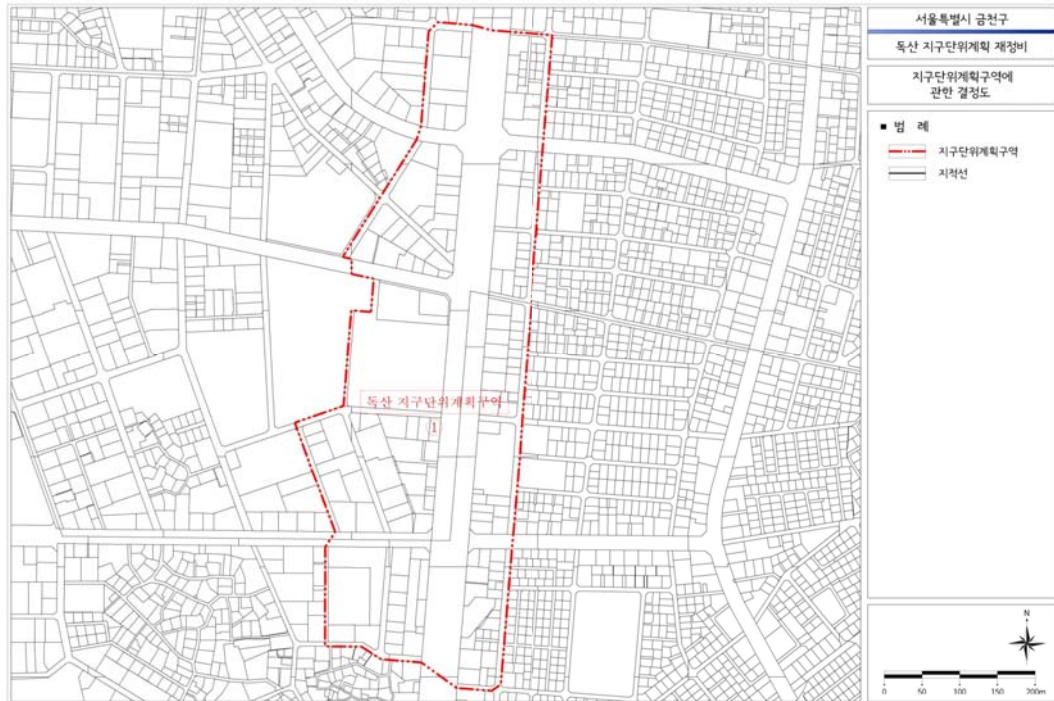
1. 대지의 분할교환에 관한 사항
2. 대지안의 공지(공개공지, 씬지형공지, 전면공지, 공공보행통로 등)의 위치변경 및 조성방법 (신설·폐지 포함)의 변경
3. 공동개발 변경시 차량출입불허구간의 변경
4. 지정된 차량출입구 위치변경에 따른 차량출입불허구간의 변경
5. 건축협정 등에 의한 공동주차장 설치에 따른 차량출입불허구간의 변경
6.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의 변경(관련 법규상 경미한 변경 범위 이내)

III. 관계도면 : 붙임 참조(세부 관계도면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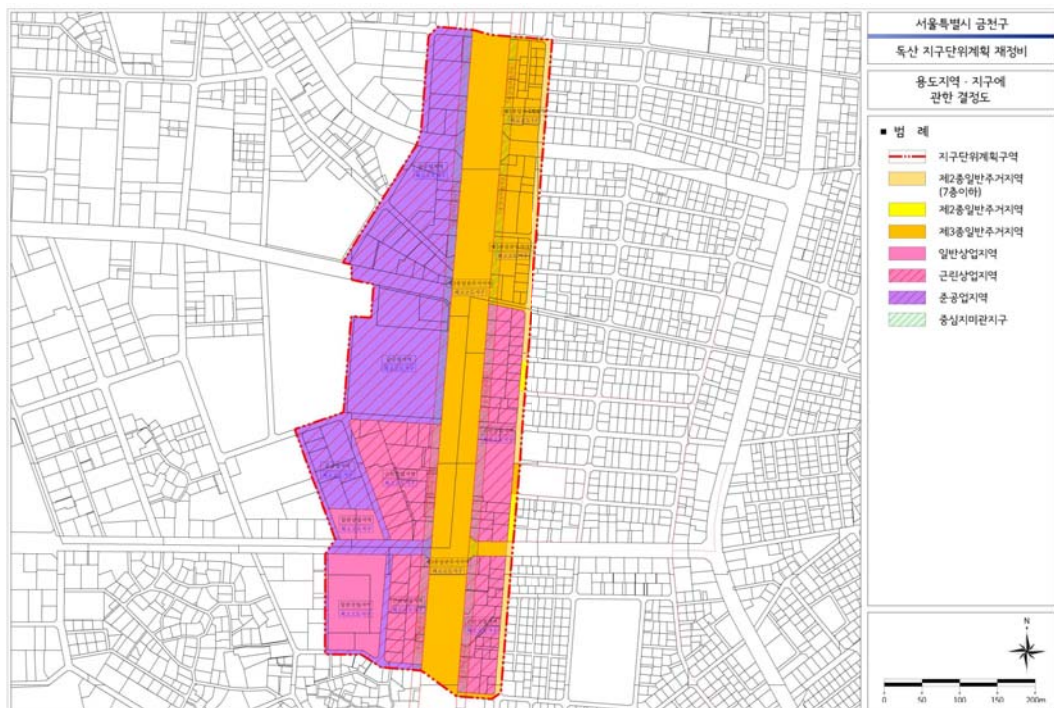
※ 첨부된 결정도면 등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IV. 고시 관련 세부내용은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과(☎2133-8385) 및 금천구 도시계획과 (☎2627-2062)에 관계 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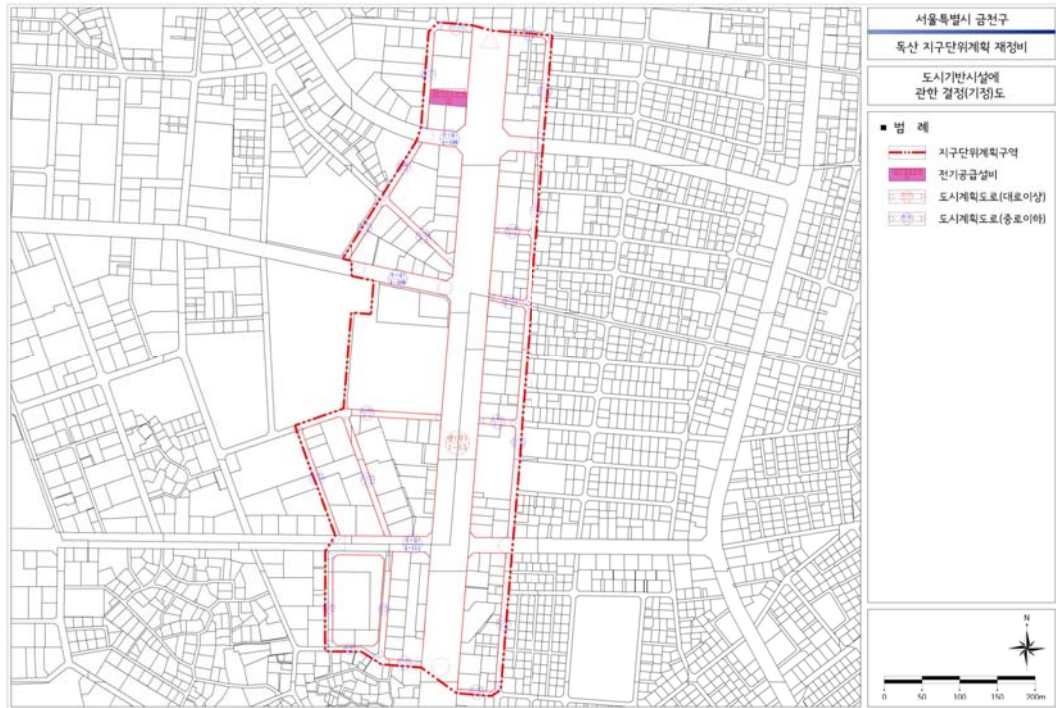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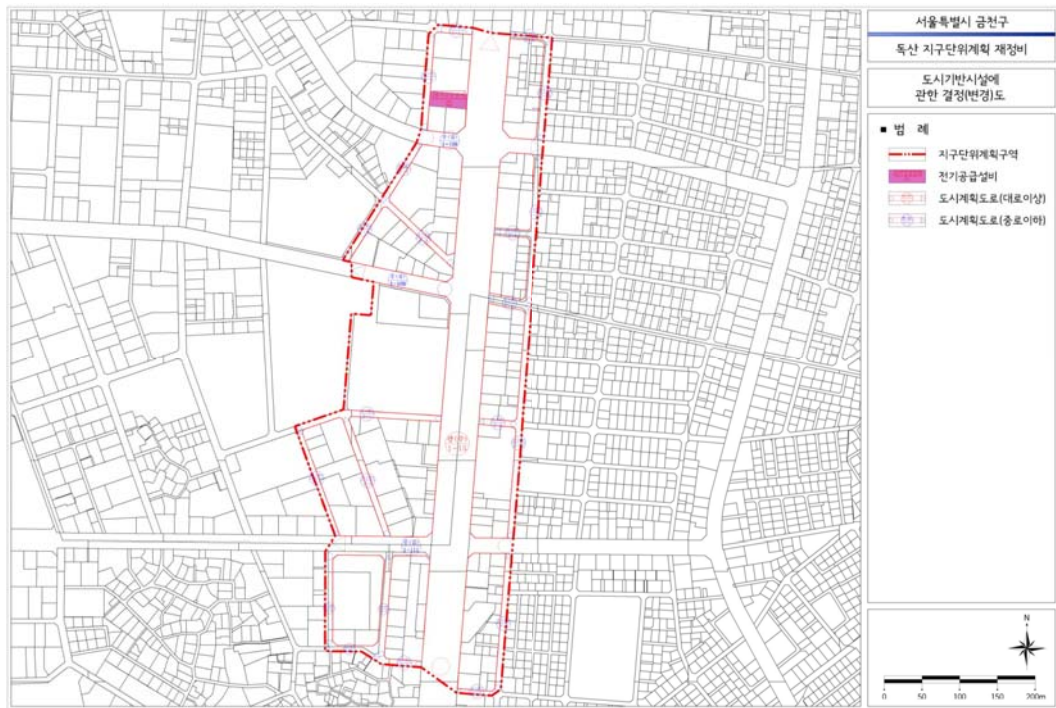
■ 용도지역·지구 결정도(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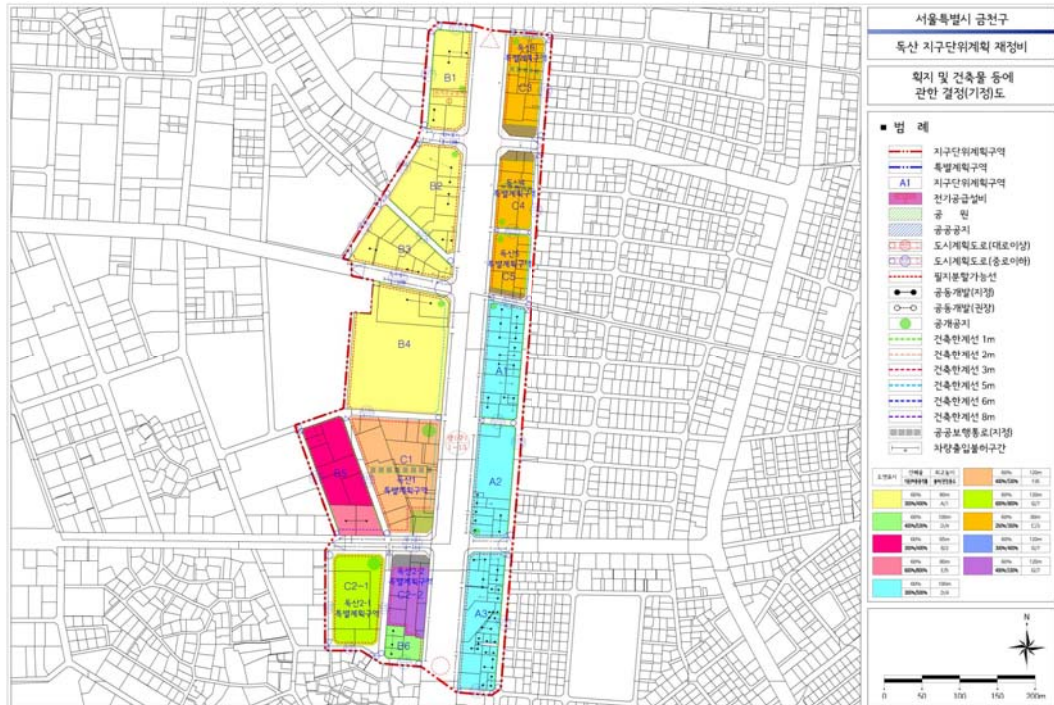
■ 도시기반시설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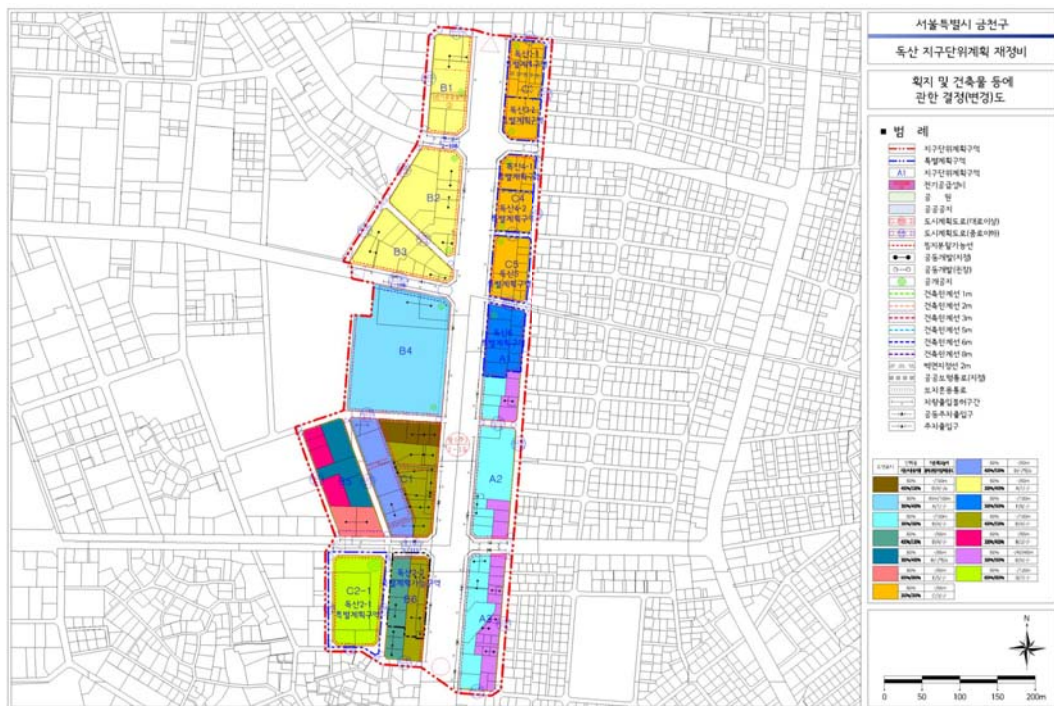
■ 도시기반시설 결정(변경)도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기정)도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도



공 고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8-284호

추징금 및 과태료 부과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4조제1항 및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 제40조 규정에 따라 급수시설 부정사용자들에게 추징금 및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등기 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주소불명, 송달곤란 등의 사유로 반송된 송달불능분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8년 2월 19일
서울특별시 장

1. 건 명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위반에 따른 추징금 및 과태료 부과 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위 반 자 : 안창익 외 1명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붙임’ 참조
 4. 처분근거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4조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 제40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31조
 5. 공고 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6. 납부 기한 : 2018. 2.28.
 7. 납부방법 및 수납기관
 - 가. 북부수도사업소 요금과로부터 고지서를 받아 시중 은행 본·지점(한국은행 제외), 농협 및 수협중앙회 본·지점, 우체국에 납부할 수 있고, 인터넷(etax.seoul.go.kr)에 접속하여 신용카드나 계좌이체로도 납부가 가능하며, 또한 전용계좌에 입금함으로써 편리하게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나.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가산금 및 중과산금이 부과되며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8.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안내
 - 가. 이의제기 기한 : 공고기간 만료일 다음날로부터 90일
 - 나. 이의제기 기한 내에 서면으로 과태료 부과 처분청에 이의제기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 기한 내에 이의제기서가 도달하지 않은 경우 이의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 다. 접수된 이의제기서는 관할법원에 통보되어 해당 사건에 대한 과태료 재판이 진행됩니다.
 - 라. 과태료 부과 행정청(이의제기 및 기타 세부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
 - 주소: 서울특별시 한천로935(번동 377) 서울시 북부수도사업소 요금과
 - 전화번호: 02-3146-3310, 팩스번호: 02-3146-3339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북부수도사업소 요금과 김명석(02-3146-331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공시송달대상자 명단 1부.

☐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위반대상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 내용
성명	주소		
안창익 (620908 - 1*****)	충청남도 태안군 고남면 가경주길 ***1	장소 : 서울특별시 노원구 월계로 370 (월계동321-2) 뉴탑스파 내용 : 급수시설 부정사용(급수 도용)	추징금 : 67,073,590원 과태료 : 259,742,500원 처분일 : 2017.12. 4. 납기일 : 2018. 2.28.
양우정 (620901 - 2*****)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산두로 2**-8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8-321호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 용자계획 공고

2018년도 서울특별시식품진흥기금 용자계획을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조례 제10조의 규정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19일
서울특별시

- 2018년도 용자규모 : 20억원
○ 일반용자 및 특별용자
- 용자대상 및 조건

구분	종류	대 상	용자 한도액	용자 이율	용자기간 및 상 환 방 법
일반용자	시 설 개 선 자 금	-식품제조업소 [식품위생법에 의해 자치구청장의 허가(신고)를 받 아 서울시내에서 제조업을 하는 자]	시설개선에 따른 총소요금액의 80%이내로 업소당 8억원 이내	연리 2%	3년거치 5년균등 분할상환
		-일반휴게·제과점·위탁급식영업 [식품위생법에 의해 자치구청장의 허가(신고)를 받 아 서울시내에서 영업을 하는 자 중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위탁급식 영업자]	시설개선에 따른 총 소요금액의 80%이내로 업소당 1억원 이내	연리 2%	2년거치 3년균등 분할상환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식품위생법에 의해 자치구청장의 허가(신고)를 받 아 서울시내에서 영업을 하는 식품접객업소 중 화 장실 시설개선을 원하는 영업자]	시설개선에 따른 총소요금액의 80%이내로 업소당 2천만원 이내	연리 1%	2년거치 3년균등 분할상환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어린이기호식품우수판매업소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	시설개선에 따른 총소요금액의 80%이내로 업소당 3천만원 이내	연리 1%	2년거치 3년균등 분할상환

구분	종류	대 상	용자 한도액	용자 이율	용자기간 및 상 환 방 법
일반용자	육성자금	-모범음식점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의 영업자]	음식점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으로 업소당 1억원 이내	연리 2%	2년거치 3년균등 분할상환
특별용자	시설개선 자금	-HACCP(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도입준비 식품제조업소	시설개선에 따른 총 소요금액의 80%이내로 업소당 8억원이내	연리 1%	3년거치 5년균등 분할상환
	육성자금	-관광식당 [관광식당으로 지정된 업소의 영업자]	음식점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으로 업소당 5천만원 이내	연리 1%	2년거치 3년균등 분할상환

※ 용자제외 대상(공통)

- 호프집 · 소주방 · 단란주점 · 유흥주점 · 혐오식품 취급업소 영업자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은 용자가능)
- 식품진흥기금을 이미 용자받아 신청일 현재 원리금을 상환중인 자 및
용자금 상환 후 1년 이내인 자
- 동일인에 대한 중복용자(업소수와 무관)

※ 용자금의 상환방법 :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의함.

3. 용자금의 상환기간 전 조기환수 대상(식품진흥기금조례시행규칙 제13조)

- 용자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 용자받은 업소가 폐업 또는 허가 취소된 경우
- 제8조 제1항의 용자대상 제외 업종으로 변경하거나 모범음식점, 어린이보호식품 우수판
매업소, 관광식당 지정이 취소된 경우
- 채무승계가 되지 아니한 영업자 변동의 경우
- 대출당시의 관할구청 외의 지역으로 영업시설을 이전한 경우

4. 용자 취급은행 : 우리은행 · 하나은행 · 기업은행 지점

5. 용자신청 : 영업장 소재지 관할 자치구 식품위생업무(관련)부서에 신청

- 신청기간 : 연중(자금 소진 시까지)
- 구비서류
 - 식품진흥기금 용자신청서[자치구 위생(관련)과에 비치] 1부.
 - 영업시설개선 사업계획서[자치구 위생(관련)과에 비치] 1부.
 - 사업이행확약서[자치구 위생(관련)과에 비치] 1부.
 - 영업시설개선 및 운영사업계획서[자치구 위생(관련)과에 비치] 1부.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다산콜센터(☎12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8-323호
2018년 서울시 주거환경관리사업 주민공동체 운영비 지원사업 공고

서울시에서는 주거환경관리 구역 내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주민활동을 지원하고자 '2018년 주거환경관리사업 주민공동체 운영비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관심 있는 주민공동체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8년 2월 19일

서울특별시

1. '18년 주거환경관리사업 주민공동체 운영비 지원사업 개요

- 제안 자격 : 서울시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 내 (임시)주민협의체, 주민공동체운영회
 - ※ 구상단계 용역 시행 중 미지원, 운영단계 미지원
 - ※ 임시 주민협의체 구성원 10인이상 지원가능
- 공모 횟수 : 연 4회 (신청시기 1월, 3월, 6월, 9월)
 - ※ 신청시기별로 자치구(주거환경관리사업 담당부서)에서 주민공동체에 안내
- 사업 기간
 - 2사분기 : 협약시 ~ 2018년 6월 30일
 - 3사분기 : 협약시 ~ 2018년 9월 30일
 - 4사분기 : 협약시 ~ 2018년 12월 14일(미정)
- 정산 시기 : 사업종료 후 15일이내
 - ※ 당해 회계연도 정산을 위해 사업기간 및 정산시기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2. 지원 내용 및 규모

- 지원내용 : 공동체 자생력 확보 및 공동체 활성화 참여의식 도모를 위해 시(80%, 월 40만원 한도), 주민(20%) 매칭 지원
 - ※ 최초 신청 공동체 첫 분기 월 50만원 한도 지원, 두 번째 분기부터 시8:주민2 매칭 시행, 월 40만원 한도
 - ※ 지원금액은 제안 상황 및 예산 현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예산집행의 주요원칙
 - 예산집행은 제출한 사업계획서상 사업비 집행계획에 따라 집행
 - 보조금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보조금 지원 예산 및 자부담 사업비 집행
 - 보조금 통장과 연계된 체크카드, 자부담 사업비 통장과 연계된 체크카드를 각각 발급받아 사용
 - 보조사업비 및 자부담비는 체크카드, 계좌이체, 전자세금계산서 등 법적 증빙영수증에 의한 방식으로 집행
 - 선정된 주민공동체 대표는 이 사업을 종료한 후 15일 이내에 사업추진현황 보고서 및 정산서를 자치구에 제출

3. 사업절차

절 차	내 용	추진주체
사업계획 수립·공고	신청 일정, 절차, 지원 규모 등	서울시
↓		
제안서 접수	자치구 담당부서 검토, 서울시 제출	주민공동체 자치구
↓		
심사/선정	1) 보조금 심의 위원회 구성 2) 선정심사 3) 선정결과 개별 안내	서울시
↓		
협약 및 보조금 교부	1) 협약(자치구-주민공동체) 2) 보조금 교부	자치구
↓		
사업실행	1) 지원사업 추진 2) 현장 모니터링	주민공동체 자치구
↓		
결과보고 및 평가	정산 및 결과보고	주민공동체 자치구

4. 제안서 접수

- 접수 방법 : 자치구 주거환경관리사업 담당 부서
- 제출 서류 : 사업계획서, 주민조직 소개, 예산계획서
- 제출 시기(※ 기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서울시 홈페이지 안내)
 - 2사분기 : 2018년 3월 23일(금) 까지
 - 3사분기 : 2018년 6월 22일(금) 까지
 - 4사분기 : 2018년 9월 21일(금) 까지

5. 심사·선정

- 일 정 : 자치구로 접수된 제안서가 서울시에 제출된 직후
- ※ 서울시 주거환경개선과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진행함

○ 심사 기준

심사항목		내 용
사 업 타당성	① 사업의 필요성	• 공공의 과제 해결이나 주민공동체 형성 및 회복에 적합한 사업인지, 주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인지 여부
	② 사업의 공익성	• 해당 지역주민의 편익 또는 주민 삶의 질 향상 가능성 • 해당 지역의 주민 공동체 사업 및 모임들과의 연대 가능성
사업의 실행력 및 효과	③ 사업 현실성	• 목표 및 성과측정방법의 구체적 기술 정도 • 구체적 수행 가능성과 수행 후 파급 효과를 파악 • 마을사업 수행 경험
	④ 자발적 주민 참여	• 사업목적 및 제안배경 구체적 기술 • 의사결정기구 구성방안 구체적 기술
	⑤ 예산 현실성	• 책정 예산의 효율성 및 현실성 • 책정된 자부담 사업비의 적정성 • 재정 자립 가능성(자부담 사업비 마련 방안 등)
	⑥ 민관 파트너십	• 지역자원 협력 방안의 현실성 및 적절성 • 행정기관과 적절한 역할 분담이 가능하며 해당 단체가 효율적으로 지역적 연계를 도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 위 심사기준은 예시이며 필요시 추가·삭제할 수 있음

○ 선정자 안내 : 자치구 담당부서를 통한 공동체 개별 안내

6.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 및 제출양식 다운로드

※ 서울시 홈페이지 <http://www.seoul.go.kr> - 분야별정보 - 주택·도시계획 - 도시재생 - 도시재생소식

○ 문의 사항 : 자치구 주거환경관리사업 담당부서, 서울시 주거환경개선과 (☎02-2133-7256)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8-324호

2018년도 제1차 건축물미술작품 설치계획 심의결과 공고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2018년도 제1차 서울특별시 미술작품 심의회」 심의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19일

서울특별시

가. 심의일시 : 2018. 1. 31.(수) 14:00 ~

나. 심의장소 :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5층 회의실

다. 심의작품 : 총 12건 15작품 (조각 14, 회화 1)

라. 심의결과 : 승인 3작품, 부결 12작품

마. 작품별 심의결과 : 별첨

바.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디자인정책과(☎ 02-2133-27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 제1차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심의결과

☐ 2018년 제1차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아래와 같이 의결합니다.

연번	건물명	종류	작품명	심의결과		사유 및 의견
				승인	부결	
1	강남구 삼성생명 청담동	조각	windy sculpture	조건부 ○		조형 형태에 맞춰 영상부분 콘텐츠 보완
2	서초구 아크로리버뷰	조각	흐름을 머금다		○	작품의 디테일 구현 난점, 도장 확인 요망
3-1	강남구 강남타워	조각	metropolis		○	주변환경과 부조화, 작품성이나 조형성은 좋으나, 가격에 비해 작품 세부 조형요소가 수적으로 부족해서 작품의 완성도를 떨어뜨릴 수 있음
3-2		조각	une extension(확장)		○	평이한 조형 유사, 작품 다수
4-1	중구 회현역 복합시설	조각	공제선-청산		○	작품성은 좋으나 시설물과 부조화 스케일을 키워 재심의 요망
4-2		회화	자연의소리1 자연의소리2		○	조형성 및 작품성 부족
5	은평구 신사주택재건축 APT	조각	관계 relation ship		○	조형성 부족, 평이
6	강서구 센테니아	조각	백송		○	가격에 비해 작품규모가 지나치게 작다 위치가 건물에 근접

연번	건물명	종류	작품명	심의결과		사유 및 의견
				승인	부결	
7	강서구 열린M타워	조각	행복한 소통		○	조형성 부족, 작품성 부족
8-1	동대문구 답십리18구역 아파트	조각	풍경		○	조형성 부족
8-2		조각	맥+2017		○	조형성 부족 건의사항으로 8-1, 8-2를 통합한 작품으로 구현
9	강남구 드림하이 오피스텔	조각	책(book)-세계를 읽다		○	조형성 부족
10	영등포구 나라키움 여의도빌딩	조각	하늘 날다	조건부 ○		가격의 적정성 확인 요망
11	강서구 우성에스비타워2	조각	storge love		○	조형성 및 작품성 부족
12	서초구 한화금융센터	조각	안과 밖	조건부 ○		현 위치에서 사선으로 틀어서 배치 조건
※ 승인된 작품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민안전을 고려하여 설치해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8-336호**

회계관계공무원 직인등록 공고

서울특별시 회계관계공무원 직인규칙 제7조(직인의 등록) 및 제11조(공고)에 따라 서울시립대학교 도시보건대학원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을 등록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19일

서울특별시장

○ 등록 직인(등록사유 : 서울시립대학교 조직신설)

소관부서	회계직인명	서체 및 규격	인영	직인 등록일자	비고
서울시립대학교 도시보건대학원	서울시립대학교 도시보건대학원 일상경비출납원	훈민정음체 1.8cmX1.8cm		2018. 2. 7	

소관부서	회계직인명	서체 및 규격	인영	직인 등록일자	비고
서울시립대학교 도시보건대학원	서울시립대학교 도시보건대학원 분임물품출납원	훈민정음체 1.8cmX1.8cm		2018. 2. 7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8-342호

서울특별시 문화재 지정계획 공고

서울특별시 문화재 지정을 위한 각계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 제4항 등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서울특별시 문화재 지정계획을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19일
서울특별시 장

1. 서울특별시 문화재 지정계획

○ 문화재 지정 개요

지정예정 종별	지정예정 명칭	수량	규격(cm)	조성연대	보관장소 (소유자)
서울시 유형문화재	진위대 군안궤 (鎭衛隊軍案櫃)	1건 4점	28.5(길이)×42.5(너비)× 10.0(높이)	20세기 초	종로구 새문안로 55 서울역사박물관

○ 공고 사유 : 아래와 같은 사유로 서울시 유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로 지정하고자 하는 바,
이에 대한 각계의 의견 수렴을 위해 공고함

<지정하고자 하는 사유>

■ 진위대군안궤

전면의 하단에 음각된 명문으로 미루어 보아 진위대 제4연대 2대대에 소속된 군인의 이름과 거주지, 신분 등을 기록한 군인명부(軍案)를 보관하던 목재 상자이다. 진위대는 1895년(고종 32년)에 설립되어 1907년까지 지방의 질서유지와 변경 수비를 담당하였던 대한제국기 최초의 근대식 지방군대였다. 본 군안궤는 1900년에서 1907년 사이에 의주 또는 평양에 주둔한 진위대에서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관재의 재료는 소나무이며, 장식은 구리(cu)에 아연(zn)을 합금한 황동이다. 열쇠와 자물쇠까지 함께 총4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물쇠앞바탕과 경첩은 연화당초문이 시문되어 있다. 감

잡이는 뚜껑에 14개, 몸체에 18개를 물려 상하 대칭으로 견고하게 제작하였으며, 문양은 운문에 누비주름을 조이한 형태로 고종대의 일반적인 형식이다.

군안개의 유물이 희귀한데 자물쇠를 포함한 일습의 보존상태가 매우 양호하며, 제작 형식이 고종대의 관용 공예품의 품격에 부합될 뿐만 아니라 제작시기 및 용도가 명문을 통해 뒷받침되고 있어 역사적, 조형적, 학술적 가치가 두루 높은 유물이므로 서울시 유형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다.

2. 의견제출 방법 안내

- 제출기간 : 공고일로부터 30일간
- 제출장소
 - 서울특별시 역사문화재과
 - ① 전화 : (02) 2133-2630 ② 팩스 : (02) 768-8873
 - ③ 우편 : (04515)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4층
- 제출방법 : 방문 제출 또는 팩스나 우편 제출
- 기재사항
 - 의견제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 붙임 「조사보고서」에 대한 의견 및 입증자료
 - 문화재 지정에 대한 찬반의견 및 그 사유 등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역사문화재과(02-2133-26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지정을 위한 조사보고서

■ 진위대군안케

유물의 현황을 살펴보면, 먼저 장방형의 단정한 규모(28.5cm×42.5cm)에 높이(10cm)가 비교적 낮은 상자의 형식이다. 백골의 짜임과 장식이 조선 말기 관용 가구의 전형을 잘 나타낸다. 판재의 재료는 소나무이며, 장식은 구리(cu)에 아연(zn)을 합금한 두석(豆錫), 즉 황동을 두드려 만들었다. 백골의 두께는 비교적 얇고 평활하게 다듬었고, 몸체와 뚜껑의 운두는 결구상태를 정확히 확인할 수는 없으나 맞댐기법으로 추정된다. 뚜껑과 몸체의 안쪽에 각각 몸체와 비슷한 두께의 판재를 덧대어 턱을 만들었는데, 몸체의 안쪽 운두는 위로 약간 돌출되게, 뚜껑의 안쪽 운두는 내부로 낮게 대어 상하의 아귀를 물려 뚜껑을 견고하게 닫히도록 구성하였다.

두석장식은 단조하여 문양 시문에도 정성을 기울였다. 자물쇠앞바탕과 경첩은 연화당초문을 주문양으로 섬세하고 유려하게 조이질 하였다. 감잡이는 뚜껑에 14개, 몸체에 18개를 물려 상하 대칭으로 견고하게 제작하였으며, 문양은 운문에 누비주름을 조이한 형태로 고종대에 흔히 볼 수 있는 형식이다. 감잡이는 몸체에서 바닥에 이르기까지 판재를 잇는 결구부분에 고루 분포되어 있어 맞댐기법을 보강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전면의 하단에 치우쳐 “鎭衛第四聯隊第二大隊軍案” 13자가 해서체로 음각되어 있어 제작시기와 용도 등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 뚜껑의 테두리에는 고대부터 귀한 물건을 보관하는 함에 보이는 사면처리가 낮은 둔각으로 적용된 점이 주목된다.

마감칠은 겉과 속이 각기 다른데, 겉면에는 생칠을 비교적 두텁게 올려 내부가 투영되는 다갈색의 옷칠광택이 잘 남아 있으며, 내부에는 석간주로 주칠을 대신하였다.

전면의 명문으로 미루어 군인의 이름과 거주지, 신분 등을 기록한 군인명부(軍案)를 보관하는 상자이며, 그 대상은 대한제국 시기 최초의 근대식 지방군대인 진위대 제4연대 제2대대에서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진위대는 1895년(고종32년)에 설립되어 1907년까지 지방의 질서유지와 변경 수비를 담당하였으며, 처음에 2개 대대로 시작하여 1900년에 6개 연대로 확대되었다. 이 중 제4연대 2대대는 1900년에 평북 의주에 주둔하였으나, 이듬해인 1901년 2월 이후에 평남 평양으로 옮겨 3000명의 연대 규모 병력을 보유하였으며, 1907년에 해산되었다. 위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이 군안케는 1900년에서 1907년 사이에 의주 또는 평양에 주둔한 진위대에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제작된 지 한 세기가 경과하였고, 사용처인 부대의 해산 등의 역사적 격절의 고비를 거쳤음에도 보존상태가 매우 양호하다. 뚜껑이 약간 흰 것을 제외하면 목재나 장식, 옷칠의 상태 등에서 결손되거나 대체된 부분이 없이 온전하게 잘 유지되었다. 특히 원형이 훼손 없이 전하기 어려운 자물쇠 역시 제작 당시의 원형 그대로 완전하게 남아 있다.

군안케의 유물이 매우 희귀하고, 본 유물의 제작 수준 및 보존상태가 양호하며, 제작 형식이 고종대의 관용 공예품의 품격에 부합된다. 뿐만 아니라 제작시기 및 용도가 명문을 통해 뒷받침되고 있어 역사적, 조형적, 학술적 가치가 두루 높다고 평가되므로 문화재로 지정하여 보호할 필요가 절실하다고 판단된다.

<사진자료>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8-347호

측량업 등록 공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측량업의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19일
서울특별시

■ 측량업 등록 신고사항

업 종 (등록번호)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소 재 지	등록일자
일반측량업 (04-004050)	㈜서경기술공사 (559-86-00511)	장나리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68, 비동 501호	2018.02.06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시민봉사담당관(☎ 02-2133-7922) 또는 토지관리과(☎ 02-2133-468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8-353호

차량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부과고지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규정 위반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19일
서울특별시

1. 건 명 : 차량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부과고지 공시송달
2. 근 거 : 도로법 제77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지방세기본법 제33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대상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 내용
성명	주소		
이명근	경기도 시흥시 승지로	일시 : 2017-12-11 15:46 장소 : 북부간선도로 내용 : 경기82바8907(카고)차량 폭 0.29미터 초과	처분일 : 2018. 1.25. 과태료 : 30만원

대상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 내용
성명	주소		
원경식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하늘마을로	일시 : 2017-12-16 10:21 장소 : 광장사거리 내용 : 경기06보8767(덤프)차량 축하중 1.75톤 초과	처분일 : 2018. 1.25. 과태료 : 50만원

4.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5. 과태료 부과처분 안내

가. 과태료 납부기한 : 2018. 3. 31.

나. 납부기간 내 납부하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가 없으면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되고,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또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이의제기 기간 : 공고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60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주소지 관할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 성동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 02-2210-1521, 15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8-359호

기부금품 모집등록 공고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품 모집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19일

서울특별시

☐ 기부금품 모집등록 내역

등록 번호	모집자	소재지	모집목적	목표액 (백만원)	모집 지역	모집기간
						사용기간
2018-25	(사회복지)한국사회 복지관협회 (대표 : 최주환)	서울시 마포구 만리재로 14	- 질병, 빈곤, 가족해체 등의 위기에 놓인 저소득층 및 지역주민 지원을 통한 위기 상황 완화 및 해소	1,000 (현금)	전국	'18.2.6 ~ '19.1.22
						'18.2.6 ~ '19.1.22

등 록 번 호	모집자	소재지	모집목적	목표액 (백만원)	모집 지역	모집기간
						사용기간
2018-26	(사)트러스트앤스마일 (대표 : 엄수진)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30길 54	- 국내, 농어촌희망장 학금 지원, 위기가정 생활비 및 교육비 지원	60 (현금및 물품)	전국	'18.2.6 ~ '19.1.31
						'18.2.6 ~ '19.1.31
2018-27	(재)한국유방건강재단 (대표 : 노동영)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100	- 유방건강의식 및 유방암 예 방의식 고취를 위한 홍보, 저소득층 수술비 지원	900 (현금)	전국	'18.2.6 ~ '18.12.31
						'18.2.6 ~ '20.1.30
2018-28	(사)한국아시아 우호재단 (대표 : 최재성)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83길 11	- 국내외 도서 번역 아시아 개발도상국 및 다문화 가 정, 외국인 근로자에게 보 급	500 (현금)	전국	'18.2.6 ~ '18.12.31
						'18.2.6 ~ '20.1.31

※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특별시 민관협력담당관(☎02-2133-6568)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8-374호

서울특별시의회 부의안건 공고

지방자치법 제46조(부의안건의 공고)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의회에 부의할 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19일
서울특별시

구분	부의 안건명	주관 부서
동의안 (1건)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유수지 문화복합시설 건립에 대한 동의안	하천관리과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8-384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및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을 위반한 석유판매업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및 행정처분(석유판매업 등록취소)을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19일

서울특별시

1. 공고제목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및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18.02.19. ~ 2018.03.05. (15일간)
3. 공고대상

상호	대표자	소재지	위반일시	위반사항	처분내용
제이에이치 에너지그룹	김정환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90길 56, 226호(대치동, 대우아이빌명문가)	2017. 11.17.	신고사유(폐업 등)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미신고	과태료 부과 (부과금액 1,000천원) 행정처분 (석유판매업 등록취소)

4. 법적근거

- 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2조 제2항
- 나. 같은 법 제13조 제3항 제4호, 제49조, 제40조
-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5. 과태료 납부기한 : 2018.03.05.까지

6. 유의사항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의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해 5%의 가산금이 가산되며, 이후 매1월이 경과할 때마다 1.2%의 증가산금이 최대 60개월까지 가산되며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다시 의견진술 및 증거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청문을 마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녹색에너지과(02-2133-35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8-394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122호(1978.03.24.)로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에 앞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규정에 따라 관계서류를 열람공고 합니다.
2. 건물,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통지 할 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3.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로계획과에 비치하여 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간 일반인에게 열람 하오니, 열람 내용에 의견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열람 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 시기 바랍니다.

2018년 2월 19일

서울특별시장

가. 사업 시행지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휘경동 43-278

나.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다. 사업의 명칭 : 한천로 휘봉고교 앞 도로확장

라. 사업의 규모 : 도로확장 폭 25→26~28m, 연장 100m

마.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서울특별시시장(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바. 사 업 기 간 : 실시계획인가 고시일로부터 2년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건물의 소재지 ·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
따로붙임

아. 열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간

자.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도로계획과(☎02-2133-8084)

토 지 조 서

-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장
- 사업시행자의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한천로 휘봉고교 앞 도로확장]

지번	지목	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이외 권리명세	
휘경동 43-278	임야	231	박성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262, C동 3502호(자양동, 더샵 스타시티)				

구 고 시

◆ 광진구고시 제2018-19호

도시관리계획(화양1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89호(2011. 4. 7)로 화양1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된 우리구 군자동 화양동 202번지 등 11필지 화양1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8년 2월 19일

광진구청장

1. 결정(변경) 취지

- 광진구 화양동 202번지 등 11필지 공동개발 계획을 변경하여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고 토지 이용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함.

2. 화양1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 가구 및 공동개발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기정			변경				
가구 번호	필지		비고	가구 번호	필지		비고
	위치	면적(㎡)			위치	면적(㎡)	
I	화양동 192	136	공동개발 권장 2필지	I	화양동 192	136	공동개발 지정 2필지
	화양동 193	282			화양동 193	282	
	화양동 196	172	공동개발 지정 2필지 권장 2필지		화양동 196	172	공동개발 지정 4필지
	화양동 197	136			화양동 197	136	
	화양동 111-105	185			화양동 111-105	185	
	화양동 111-107	115			화양동 111-107	115	
	화양동 111-106	112	화양동 111-106		112	공동개발 지정 4필지	
	화양동 203	162	공동개발 지정 3필지 권장 1필지		화양동 203		162
	화양동 204	53			화양동 204		53
	화양동 202	403			화양동 205		149
	화양동 205	149	단독개발		화양동 202	403	단독개발

주1) 상기 필지 외 변경사항 없음

3. 관계도면 : 붙임참조(세부 관계도면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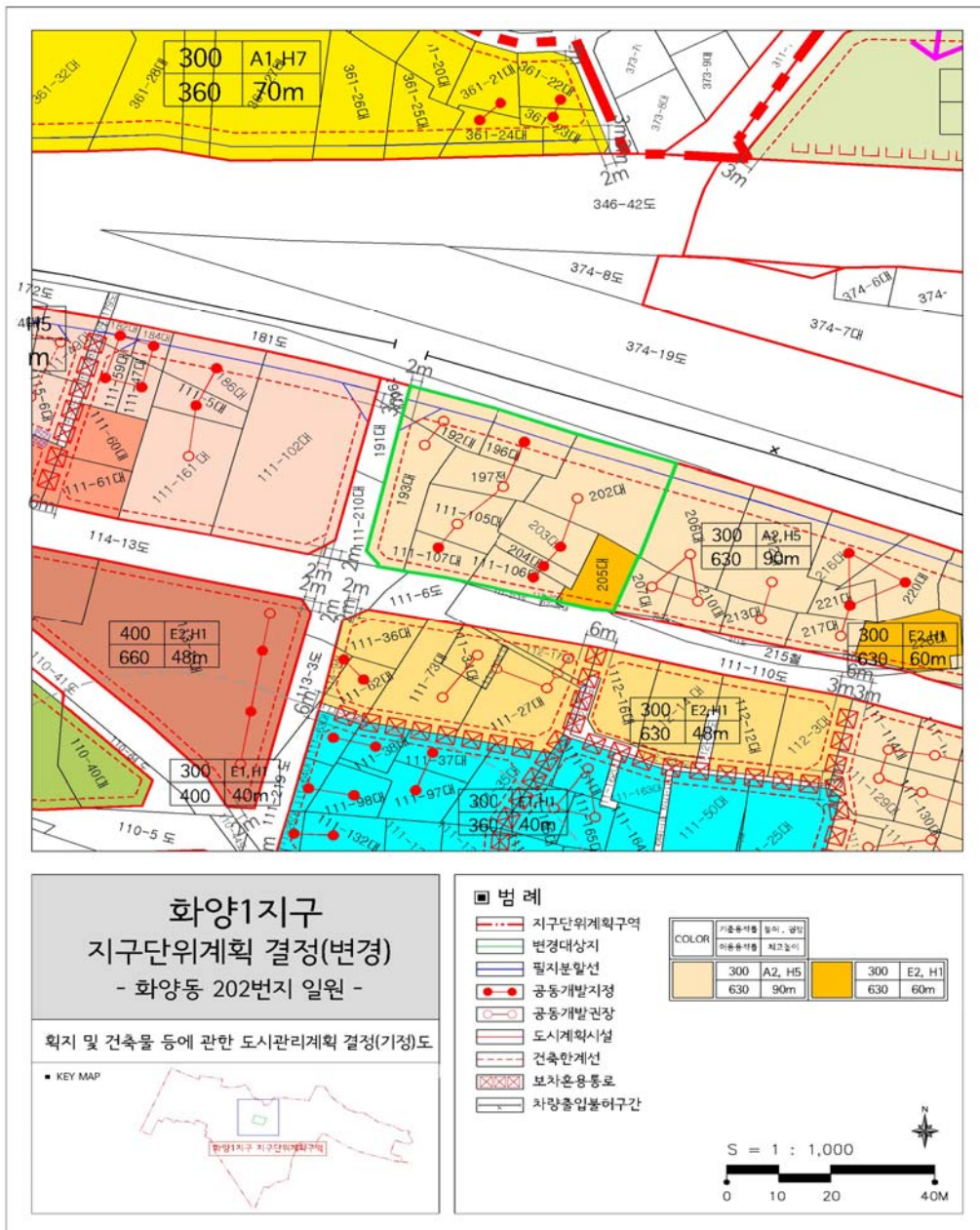
- ※ 첨부된 지형도면 등(그 외 세부 관계도면은 첨부생략)은 참조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고시 관련 세부내용에 대한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 도시계획과(☎ 450-7692)에 관련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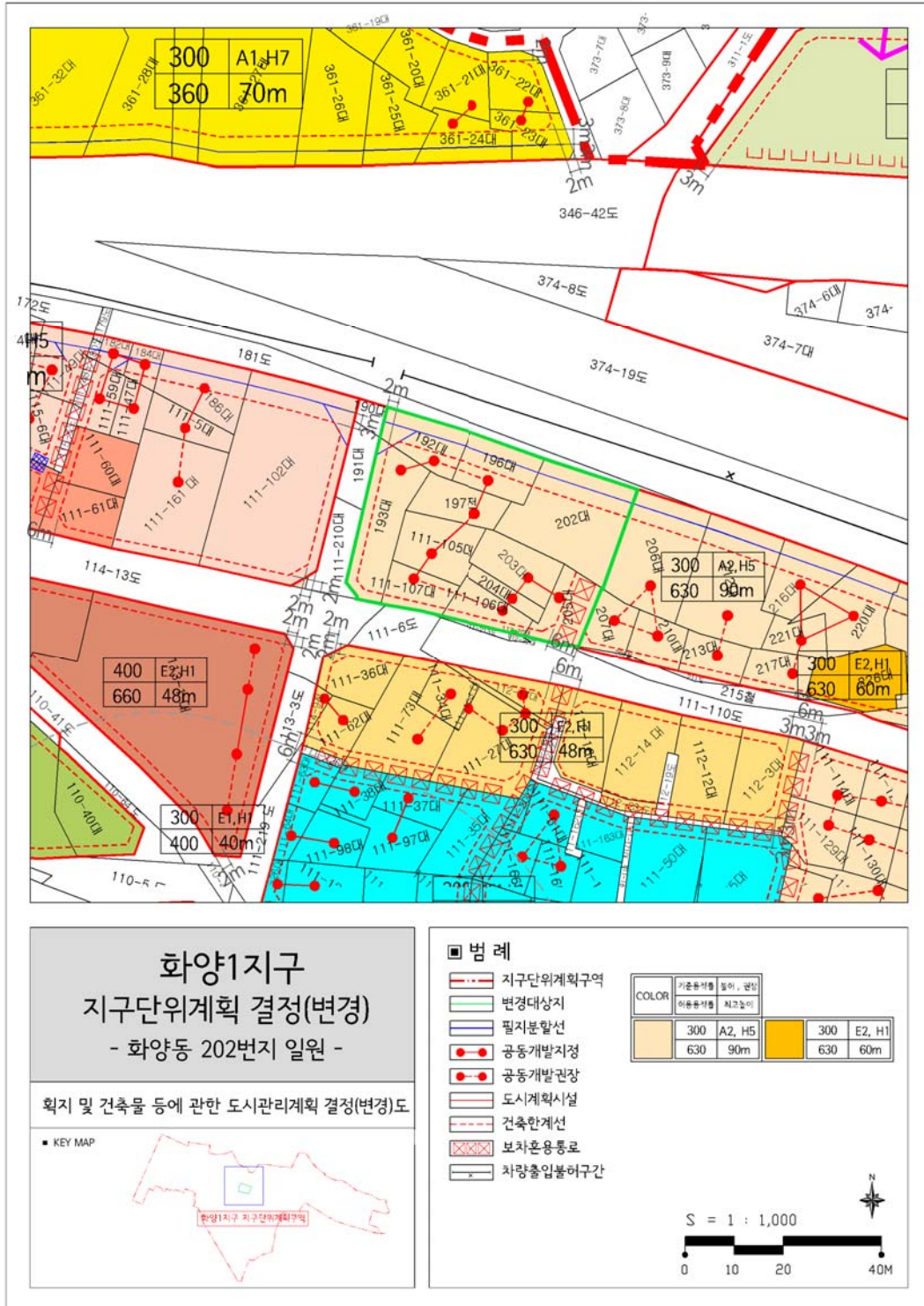
※ 고시문 및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화양1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도

- 기정



- 변경



◆ 구로구고시 제2018-40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440호(1979.10.15)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고시되고, 구로구 고시 제 2017-118호(2017.07.20)로 실시계획인가 고시되어 구로구공고 제2018-131호(2018.1.25)로 실시 계획 변경인가를 위해 열람 공고한 『구로5동 밤동산마을 진입로 개설공사(3차)』에 대하여 국 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91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97조·제100조, 서울특 별시도시계획조례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변 경인가 고시합니다.

2018년 2월 19일
구로구청장

가. 사업시행지(변경없음) :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551-108~551-165호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 명 칭 : 구로5동 밤동산마을 진입로 개설공사(3차)

다. 사업규모(변경없음) : 도로개설 폭8m, 연장40m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변경없음)

- 성 명 :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 주 소 :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가마산로 245

마.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 변경인가일로부터 2년간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 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별 첨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로구청 도로과(☎860-312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토 지 조 서(당초)

○ 사 업 시 행 자 : 구로구청장

○ 사 업 의 명 칭 : 구로5동 밤동산마을 진입로 개설공사(3차)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이해관계인		소유권 이외의 권리내용	비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1	구로동 551-240	대	12	12	박영순	구로구 구로중앙로32가길 43(구로동)	영등포농업 협동조합	영등포구 도신로 194 (신길동.가산디지털지점)	근저당	모지번 551-108
2	구로동 551-163	대	24	24	한광두	서대문구 증가로10길 82-7(홍은동)	국민은행	중구 남대문로2가 9-1(용산지점)	근저당	
3	구로동 551-165	임	129	129	한광두	서대문구 홍은동 408-22	국민은행	중구 남대문로2가 9-1(용산지점)	근저당	
4	구로동 551-96	도로	5	5	기획재정부					무상귀속대상
5	구로동 551-230	대	6	6	구로구					

토 지 조 서(변경)

○ 사 업 시 행 자 : 구로구청장

○ 사 업 의 명 칭 : 구로5동 밤동산마을 진입로 개설공사(3차)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이해관계인		소유권 이외의 권리내용	비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1	구로동 551-240	대	12	12	박영순	구로구 구로중앙로32가길 43(구로동)	영등포농업 협동조합	영등포구 도신로 194(신길동.가산디지털 지점)	근저당	모지번 551-108
2	구로동 551-163	대	24	24	한광두	서대문구 증가로10길 82-7(홍은동)	국민은행	중구 남대문로2가 9-1(용산지점)	근저당	
3	구로동 551-243	임	48	48	한광두	서대문구 홍은동 408-22	국민은행	중구 남대문로2가 9-1(용산지점)	근저당	모지번 551-165
4	구로동 551-96	도로	5	5	기획재정부					무상귀속대상
5	구로동 551-230	대	6	6	구로구					

물 건 조 서(변경없음)

◆ 구로구고시 제2018-42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서울시고시 제32호(1970.07.25)로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 고시되고, 서울시고시 제319호(2000.11.10)로 변경결정 고시되어 구로구공고 제2018-132호(2018.1.25)로 실시계획인가를 위해 열람 공고한 『신도림동 성당주변 도로확장공사』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91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97조·제100조,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합니다.

2018년 2월 19일
구로구청장

가. 사업시행지 : 서울특별시 신도림동 416-7호 주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 명 칭 : 신도림동 성당 주변 도로확장공사

다. 사업규모 : 도로개설 폭15m, 연장75m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

- 성 명 :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 주 소 :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가마산로 245

- 마.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2년간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 지번 ·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 · 권리자의 성명 · 주소 : 별 첨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로구청 도로과(☎860-312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토 지 조 서

- 사 업 시 행 자 : 구로구청장
 ○ 사 업 의 명 칭 : 신도림동 성당주변 도로확장공사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이해관계인		소유권 이외의 권리내용	비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1	신도림동 416-63	대	514	514	재단법인천주 교서울대교구 유지재단	서울중구명동2가 1				

◆ 관악구고시 제2018-7호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고시

- 「건설부 고시」 제369호(1980.11.15)로 도시계획시설 결정되고, 『서울시고시』 제2017-6호(2017.1.5)로 공원조성계획 최종 변경 결정된 관악산도시자연공원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관악산도시자연공원 삼성동 동네뒷산공원화사업)을 시행하고자,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고 제2018-111호(2018.01.25.)로 변경 열람공고한 ‘관악산도시자연공원 삼성동 동네뒷산공원화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의거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변경인가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저촉 토지 및 지장물 소유자에게는 개별통지 할 것이나 이해관계인 및 미 수령자는 본 고시로 통지를 갈음합니다.
-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청 공원녹지과(☎879-6572)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8년 2월 19일
관 악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 : 관악구 신림동 산86-6번지 일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 2) 명 칭 : 관악산도시자연공원 삼성동 동네뒷산공원화사업

다.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라. 사업규모

- 1) 위 치 : 관악구 신림동 산86-6번지 일대
 - 2) 면 적 : 15,000㎡
 - 3) 내 용 : 토지보상 및 공원조성
 - 4) 변경내용 : 지적 분할에 따른 지번 면적 변경(붙임참조)
-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년월일 : 실시계획인가일 ~ 2018.12.31
-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지장물 조서 : 붙임문서 참조
- 사. 열람장소 : 관악구청 공원녹지과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연번	구분	소재지	지목	현실적인 이용상황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지적	편입 면적	성 명	공유 지분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의 종류 및 영역
합계						15,000						
1	단초	관악구 신림동 산86-6	임야	임야 경작	20,033	9,117	해주정씨 보덕공파종중		관악구 봉천동 1563-24			
2		관악구 신림동 산86-7	임야	임야 경작	5,500	5,500	해주정씨 보덕공파종중		관악구 봉천동 1563-24			
3	변경	관악구 신림동 327	전	주차장 농지	383	383	해주정씨 보덕공파종중		관악구 봉천동 1563-24			
1		관악구 신림동 산86-6	임야	임야 경작	9,117	9,117	해주정씨 보덕공파종중		관악구 봉천동 1563-24			
2	3	관악구 신림동 산86-7	임야	임야 경작	5,500	5,500	해주정씨 보덕공파종중		관악구 봉천동 1563-24			
3		관악구 신림동 327	전	주차장 농지	383	383	해주정씨 보덕공파종중		관악구 봉천동 1563-24			

지장물 조서(건물)

연번	소재지 (구지번)	물건 종류	구 조	면적(㎡) 및 규격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세대주	세대원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관악구 광신길 142 (관악구 신림동 산86-6)	주택 (무허가)	블럭조	75	해주정씨 보덕공파중종	관악구 봉천동 1563-24					
		음식점 (무허가)	판넬	110							

◆ 강남구고시 제2018-21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정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3-21호(2013. 1.24.)로 결정 고시된 우리구 교수마을 지구단위계획 중 서울특별시 강남구 세곡동 302-10호 필지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외 지역으로 본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 이전에는 도시계획시설(공원)로 지정고시된 바가 없어, 착오기재사항을 정정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동법 시행령 제25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정정고시 하고자 합니다.

2018년 2월 19일

강 남 구 청 장

- 결정(변경) 취지 : 교수마을 지구단위계획구역 외 지역에 대한 도시계획시설(공원) 착오기재에 따른 정정
-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정정 결정조서
☐ 공원 결정조서[정정 전]

구분	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	-	소공원	자곡동 302-10번지	278	29	307	-	증) 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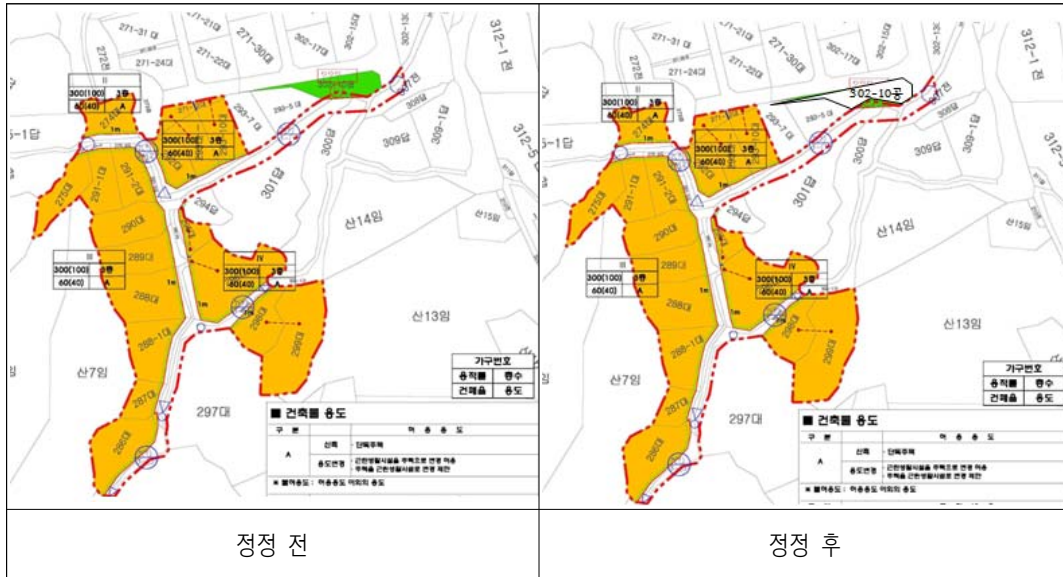
- ☐
- 공원 결정조서[정정 후]

구분	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정정전	정정후	증감		
정정	1	-	소공원	자곡동 301 외 2	307	29	감) 278㎡	2013. 1.24.	· 정정대상 : 자곡동 302-10 · 정정후 잔여분(지구단위 계획 구역 內: 29㎡) : 자곡동 301, 300, 293-1

※ 상기 사항 이외 지구단위계획 변경 없음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 등)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본 결정고시로서 지형도면 작성 승인·고시에 갈음합니다.
- 관계도면 : 강남구청 도시계획과 비치도면과 같음
 ※ 첨부된 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관계서류는 시민의 열람 편의를 위하여 강남구 도시계획과(☎ 02-3423-6113)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교수마을 지구단위계획 결정(정정)도



구 공 고

◆ 광진구공고 제2018-168호

도시계획시설(철도)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1. 건설부고시 제399호(1991.7.24.)로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 광진구고시 제2017-118호(2017.10.26.)로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광진구공고 제2017-1030호(2017.11.23.)로 도시계획시설(철도)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광진구고시 제2017-141호(2017.12.21.)로 도시계획시설(철도)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된 서울특별시 광진구 중곡동 273-1일대 도시철도(중곡역)의 출입구 신설 및 환기구 이설을 위한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하여 역사 내 역무실 등 기능실 이전이 필요함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철도)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경미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포함)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따른 실시계획변경 작성하고, 같은법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2. 관계도서는 광진구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고 열람기간 동안 일반인에게 열람하며 본 도시계획시설(철도) 사업시행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공고 기간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2월 19일

광진구청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서울특별시 광진구 중곡동 273-1 일대(변경없음)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철도)사업

- 사업의 명칭 : 종합의료복합단지(2단계) 개발사업(출입구 신설 및 환기구 이설)

다. 사업의 규모

- 당초 : 245.56㎡

- 변경

구분	조성시설	규모		면적(㎡)	비고
		길이(m)	폭(m)		
1	출입구	19.62	5.0	294.51	
2	기능실	57.58	5.0 ~ 9.2	164.03	
3	환기구	5.96	6.0	30.67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 성명 :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문창용

- 주소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인가고시일로부터 2년이내(변경없음)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지번·지목과 지장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 별첨조서
 사. 열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
 아. 열람장소 : 광진구청 도시계획과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청 도시계획과(☎02-450-768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토 지 조 서

○ 사업의 명칭 : 종합의료복합단지(2단계) 개발사업(출입구 신설 및 환기구 이설)

순번	소재지	지 번		지목	공부상 전체면적 (㎡)	편입면적 (㎡)			구분지상권 면적 (㎡)			소 유 자		비 고
		본번	부번			기정	증감	변경후	기정	증감	변경후	성 명	주 소	
1	광진구 중곡동	273	1	도로	15,458.5	3.73	-3.73	-	-	-	-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광진구 중곡동 273-1	출입구 (기능실 포함)
2	광진구 중곡동	30	80	대지	18,882	211.16	247.38	458.54	173.86	216.38	390.24	국(보건복지부)	서울특별시 광진구 중곡동 30-80	
소 계					34,340.5	214.89	243.65	458.54	173.86	216.38	390.24			
3	광진구 중곡동	273	1	도로	15,458.5	12.94	-	12.94	-	-	-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광진구 중곡동 273-1	환기구
4	광진구 중곡동	30	80	대지	18,882	17.73	-	17.73	-	-	-	국(보건복지부)	서울특별시 광진구 중곡동 30-80	
소 계					34,340.5	30.67	-	30.67	-	-	-			
합 계					34,340.5	245.56	243.65	489.21	173.86	216.38	390.24			

◆ 노원구공고 제2018-151호

도시계획시설사업[불암산 동네뒷산 공원조성]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 및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청취 공고

1. 건설부고시 제138호(1977.07.09.)로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781호(2016.8.11.)로 공원조성(변경)결정된 서울시 노원구 중계동 산129-21번지 도시계획시설사업[불암산 동네뒷산 공원조성] 실시계획인가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 하고,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그 밖에 사업인정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3. 편입 토지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적으로 통지할 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4. 관련서류는 노원구 공원녹지과에 비치하여 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간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하오니 이 사업시행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열람공고 기한 내 열람 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2월 19일

노 원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위치: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계동 산129-21번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1) 종 류: 도시계획시설(공원) 사업
- 2) 명 칭: 불암산 동네뒷산 공원조성
- 3) 사업내용: 토지보상 및 조성

다. 사업규모: 2,179㎡

라. 사업시행자: 노원구청장

마. 사업기간: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2년간

바. 공고방법: 시보게재

사. 열람기간: 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간

아. 열람장소: 노원구청 공원녹지과(☎2116-3943)

자.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소유자 등 권리 명세: 별첨

토 지 조 서

사업명 : 불암산 동네뒷산 공원조성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이용 상황	지적 (㎡)	편입면적 (공유지분)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관리의종류와 내용	
1	중계동 산129-21	임야	임야	9,643	2,179	박기하	서울시 노원구 중계로6나길 9		주식회사우리은행	서울시 중구 회현동1가 203	근저당권, 지상권	
									김용선	서울시 도봉구 노해로62길 77, 1동 1202호(창동, 중흥s-class)	근저당권	
									조준곤	서울시 송파구 오금로32길 31, 103동 1801호(송파동 레미안송파인탑)	근저당권	

물 건 조 서

사업명 : 불암산 동네뒷산 공원조성

연번	소재지	물건의 종류	구조및 규격	수량	실제 이용 현황	소 유 자			관계인			소유권이외의 관리내용	비고
1	노원구 중계동 산129-21	이동식화장실		1식		김주은	성명	주소	성명	주소			
2	노원구 중계동 산129-21	간이천막		1식		김주은	성명	주소	성명	주소			
3	노원구 중계동 산129-21	적치물		1식		김주은	성명	주소	성명	주소			

◆ 노원구공고 제2018-152호

**도시계획시설사업[불암산도시자연공원(중계지구) 조성]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 및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청취 공고**

1. 건설부고시 제138호(1977.07.09.)로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781호(2016.8.11.)로 공원조성(변경)결정된 서울시 노원구 중계동 산94번지 도시계획시설사업[불암산도시자연공원(중계지구) 조성] 실시계획인가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 하고,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그 밖에 사업인정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3. 편입 토지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적으로 통지할 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4. 관련서류는 노원구 공원녹지과에 비치하여 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간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하오니 이 사업시행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열람공고 기한 내 열람 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2월 19일
노 원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위치: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계동 산94번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1) 종 류: 도시계획시설(공원) 사업
- 2) 명 칭: 불암산도시자연공원(중계지구) 조성
- 3) 사업내용: 토지보상

다. 사업규모: 600㎡

라. 사업시행자: 노원구청장

마. 사업기간: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2년간

바. 공고방법: 시보게재

사. 열람기간: 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간

아. 열람장소: 노원구청 공원녹지과(☎2116-3943)

자.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소유자 등 권리 명세: 별첨

토 지 조 서

사업명 : 불암산도시자연공원(중계지구) 조성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이용 상황	지적 (㎡)	편입면적 (공유지분)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종류와 내용	
1	중계동 산94	임야	임야	4,562	600	서미지(지분1/2)	서울시 중구 청구로1길 23, 111동 402호(신당동, 신당동삼성이파트)				
						유명순(지분1/6)	서울시 용산구 독서당로6길 16, 101동 1105호(한남동, 리버탐)				
						조혜성(지분1/6)	서울시 노원구 석발로 229, 3동 512호(하계동, 극동아파트)				
						조인순(지분1/6)	서울시 용산구 독서당로6길 16, 101동 1105호(한남동, 리버탐)				

물 건 조 서

사업명 : 불암산도시자연공원(중계지구) 조성

연번	소재지	물건의 종류	구조및 규격	수량	실제 이용 현황	소유자		관계인		소유권 이외의 권리 내용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	노원구 중계동 산94	분묘	유연단장	5기		박길천	노원구 중계동 90-41				
2	노원구 중계동 산95-2	분묘	유연단장	2기		박길천	노원구 중계동 90-41				장 영 중 영 모 파 인

◆ 동작구공고 제2018-167호

**상도동 159-250번지 일원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따른 상도근린공원
공원조성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주민의견 청취 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159-250번지 일원 공동주택건설에 따른 지구단위계획(변경) 2014. 9. 5.(주민제안)으로 최초 제출되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고시 제2017년-77(2017.09.28.)호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고시된 상도역지역주택건설사업의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을 위하여,
2. 사업지구 내 포함된 상도근린공원(최초 2009.7.13./최종 2017.9.28.) 조성계획(변경)안을 작성하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2,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2018년 2월 19일
동 작 구 청 장

가. 사업명 및 위치

- 1) 사 업 명 : 상도동 159-250번지 일원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2) 사업장위치 : 상도동 159-250번지 일원
- 3) 사업시행자 : 태려건설

나. 열람내용

- 1) 명 칭 : 상도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
- 2) 위 치 : 동작구 상도동 산 65-116번지 일대
- 3) 면 적 : 4,746㎡ (전체 360,403.8㎡)
- 4) 사업규모(변경) : 별첨

다. 공람기간 및 장소

- 1)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 2) 열람장소 : 노량진로 74 유한양행빌딩 3층 동작구청 공원녹지과 사무실 (☎820-9845)

라. 관계도서 : 별첨(열람장소에 비치)

마. 의견제출 및 처리계획

조성계획(변경)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서를 동작구청 공원녹지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상세한 사항은 동작구청 공원녹지과(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로 74, ☎820-98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시설(상도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조서

1. 총괄표 (위치 : 동작구 상도동 산 65-116번지 일대)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공작물 (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공작물 (기)						
기 본 시 설	계	360,403.80	60,795.71	4	2,387.96	3,089.88	500	360,403.80	60,515.71	4	2,387.96	3,089.88	499	시설	감	280.00			
	소 계	30,049.92	30,049.92					29,838.92	29,838.92						감	211.00			
	도 로	26,308.5	26,308.5					26,097.5	26,097.5										
	광 장	2877.46	2877.46					2877.46	2877.46										
	생태육교	863.96	863.96					863.96	863.96										
조 경 시 설		6,354.78	6,354.78				52	6,299.78	6,299.78				51		감	55.00			
유 회 시 설		826.86	826.86					826.86	826.86										
휴 양 시 설		10,812.98	10,812.98				312	10,833.98	10,833.98				312		증	21.00			
교 양 시 설		2,160.23	2,160.23	1	206.34	788.26	7	2,160.23	2,160.23	1	206.34	788.26	7						
운 동 시 설		9,164.32	9,164.32	1	1,996.73	1,996.73	120	9,076.32	9,076.32	1	1,996.73	1,996.73	120		감	88.00			
편 의 시 설		1,177.67	1,177.67	1	34.53	34.53		1,177.67	1,177.67	1	34.53	34.53							
관 리 시 설		248.95	248.95	1	150.36	270.36	9	301.95	301.95	1	150.36	270.36	9		증	53.00			
누 지 및 기타		299,494.09						299,888.09							증	394.00			
시 설 율 (법정 40%)		60,795.71 / 360,403.80 × 100 =16.87%						60,515.71 / 360,403.80 × 100 =16.79%											
건 폐 율 (법정 10%)		2,387.96 / 360,403.80 × 100 =0.66%						2,387.96 / 360,403.80 × 100 =0.66%											

2. 시설조서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바닥면적 연면적	공작물 (기)	
합 계			360,403.8	60,909.71			2,387.96 3,089.88	500	
소 계			30,049.92	30,049.92					
도 로			26,308.5	26,308.5					
광 장	가		2,877.46	2,877.46					감 211.00
	가-1		(222.23)	(222.23)					
	가-2		(454.94)	(454.94)					
	가-3		(19.35)	(19.35)					
	가-4		(830.70)	(830.70)					
	가-5		(299.30)	(299.30)					
	가-6		(40.81)	(40.81)					
	가-7		(108.96)	(108.96)					
	가-8		(252.00)	(252.00)					
	가-9		(172.91)	(172.91)					
	가-10		(240.88)	(240.88)					
	가-11		(99.87)	(99.87)					
	가-12		(113.75)	(113.75)					
	가-13		(21.76)	(21.76)					
생태육교	2		863.96	863.96					
	2-1		(240.00)	(240.00)					
	2-2		(623.96)	(623.96)					

기 반 시 설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조 경 시 설	소 계		6,354.78	6,354.78								6,299.78	6,299.78							감 55.00			
	야생초화원	나		297.21						나			297.21										
	암석원	하		3,826.55						하			3,826.55										
	화계식응벽	①		489.12	489.12					①			489.12	489.12									
		②		93.94	93.94					②			93.94	93.94									
	팔각정	②-1		(93.94)	(93.94)					②-1			(93.94)	(93.94)									
		③		546.75	546.75				29	③			546.75	546.75							28		
	파고라	③-1		(20.25)	(20.25)				1	③-1			(20.25)	(20.25)							1		
		③-2		(20.25)	(20.25)				1	③-2			(20.25)	(20.25)							1		
		③-3		(20.25)	(20.25)				1	③-3			(20.25)	(20.25)							1		
		③-4		(40.50)	(40.50)				2	③-4			(40.50)	(40.50)							2		
		④-5		(40.50)	(40.50)				2	④-5			(40.50)	(40.50)							2		
		④-6		(40.50)	(40.50)				2	④-6			(40.50)	(40.50)							2		
		③-7		(40.50)	(40.50)				2	③-7			(40.50)	(40.50)							2		
		③-8		(20.25)	(20.25)				1	③-8			(20.25)	(20.25)							1		
③-9			(40.50)	(40.50)				2	③-9			(40.50)	(40.50)							2			
③-10			(40.50)	(40.50)				2	③-10			(40.50)	(40.50)							2			
③-11		(20.25)	(20.25)				1	③-11			(20.25)	(20.25)							1				
③-12		(20.25)	(20.25)				1	③-12			(20.25)	(20.25)							1				
③-13		(20.25)	(20.25)				1	③-13			(20.25)	(20.25)							1				
③-14		(20.25)	(20.25)				1	③-14			(20.25)	(20.25)							1				
③-15		(20.25)	(20.25)				1	③-15			(20.25)	(20.25)							1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비대면적	연면적					
조 경 시 설	파고라	③-16		(40.50)	(40.50)			(40.50)		2			
		③-17		(20.25)	(20.25)			(20.25)		1			
		③-18		(20.25)	(20.25)			(20.25)		1			
		③-19		(20.25)	(20.25)			(20.25)		1			
		③-20		(20.25)	(20.25)			(20.25)		1			
		③-21								1	감 1개소		
조 경 시 설	목재데크	④	2개소	175.35	175.35		④	27개소	175.35	175.35			
				(130.35)	(130.35)				(130.35)				
				(45.00)	(45.00)				(45.00)				
		⑤						⑤			14		
		⑥		41.86	41.86			⑥	41.86	41.86			
		5	1개소	625.00	625.00			5	17개소	625.00			
조 경 시 설	잔디마당	나-1	1개소	259.00	259.00		나-1	1개소	204.00	204.00			
				10,812.98	10,812.98				10,833.98	10,833.98			
		다		4,227.48	4,227.48			다		4,227.48			
		라	267개소	6,546.65	6,546.65			라	267개소	6,567.65	증 21.00		
		라-1		(81.28)	(81.28)			라-1		(81.28)			
		라-2		(451.67)	(451.67)			라-2		(451.67)			
후 앙 시 설	휴게소	라-3		(63.62)	(63.62)			라-3		(63.62)			
		라-4		(1,353.31)	(1,353.31)			라-4		(1,353.31)			
		라-5		(167.97)	(167.97)			라-5		(167.97)			
		라-6		(781.72)	(781.72)			라-6		(781.72)			
		라-7		(28.27)	(28.27)			라-7		(28.27)			
		라-8		(429.19)	(429.19)			라-8		(429.19)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비대면적 연면적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비대면적 연면적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비대면적 연면적	공작물 (기)	
휴게소	라-9		(327.95)	(327.95)					라-9		(327.95)	(327.95)							(327.95)	(327.95)					
	라-10		(269.67)	(269.67)					라-10		(269.67)	(269.67)							(269.67)	(269.67)					
	라-11		(594.15)	(594.15)					라-11		(594.15)	(594.15)							(594.15)	(594.15)					
	라-12		(246.20)	(246.20)					라-12		(246.20)	(246.20)							(246.20)	(246.20)					
	라-13		(57.41)	(57.41)					라-13		(57.41)	(57.41)							(57.41)	(57.41)					
	라-14		(140.80)	(140.80)					라-14		(140.80)	(140.80)							(140.80)	(140.80)					
	라-15		(254.00)	(254.00)					라-15		(254.00)	(254.00)							(254.00)	(254.00)					
	라-16		(151.00)	(151.00)					라-16		(151.00)	(151.00)							(151.00)	(151.00)					
	라-17		(151.00)	(151.00)					라-17		(151.00)	(151.00)							(151.00)	(151.00)					
	라-18		(176.00)	(176.00)					라-18		(176.00)	(176.00)							(176.00)	(176.00)					
	라-19		(78.53)	(78.53)					라-19		(78.53)	(78.53)							(78.53)	(78.53)					
	라-20		(408.81)	(408.81)					라-20		(408.81)	(408.81)							(408.81)	(408.81)					
	라-21		(109.50)	(109.50)					라-21		(109.50)	(109.50)							(109.50)	(109.50)					
	라-22		(58.10)	(58.10)					라-22		(58.10)	(58.10)							(58.10)	(58.10)					
	라-23		(16.00)	(16.00)					라-23		(16.00)	(16.00)							(16.00)	(16.00)					
	라-24		(95.50)	(95.50)					라-24		(95.50)	(95.50)							(95.50)	(95.50)					
	라-25		(27.00)	(27.00)					라-25		(27.00)	(27.00)							(27.00)	(27.00)					(증 40.00)
	라-26		(28.00)	(28.00)					라-26		(28.00)	(28.00)							(28.00)	(28.00)					(감 19.00)
	소계		2,160.23	2,160.23			206.34	788.26			2,160.23	2,160.23			206.34	788.26			2,160.23	2,160.23			206.34	788.26	
	이외공연장	자	1,344.23	1,344.23					자		1,344.23	1,344.23							1,344.23	1,344.23					
	놀이마당																								
	어린이집	차	816.00	816.00			206.34	788.26	차		816.00	816.00			206.34	788.26			816.00	816.00			206.34	788.26	7
휴 양 시 설																									
교 양 시 설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소 계			9,164.32	9,164.32			1,996.73	1,996.73			1,996.73	1,996.73	감 88.00
	바		4,431.65	4,431.65			1,996.73	1,996.73			1,996.73	1,996.73	
	바-1		(439.86)	(439.86)									
	바-2		(617.63)	(617.63)									
	바-3		(352.66)	(352.66)									
	바-4		(340.00)	(340.00)									
	바-5		(439.86)	(439.86)									
배 드 민턴장	바-6		(244.91)	(244.91)									
	바-7		(1,996.73)	(1,996.73)			1,996.73	1,996.73			1,996.73	1,996.73	
	사	2개소	754.95	754.95									
	사-1		(272.05)	(272.05)									
	사-2		(482.90)	(482.90)									
	아	14개소	3,977.72	3,977.72									감 88.00
	아-1		(652.85)	(652.85)									
체 력 단련장	아-2		(396.33)	(396.33)									
	아-3		(138.00)	(138.00)									(감 110.00)
	아-4		(174.26)	(174.26)									
	아-5		(258.92)	(258.92)									
	아-6		(160.00)	(160.00)									
	아-7		(658.50)	(658.50)									
	안 통 시 설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비대면적 연면적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비대면적 연면적	공작물 (기)	
체 력 단련장	아-8		(581.50)	(581.50)					아-8		(581.50)	(581.50)					
	아-9		(54.08)	(54.08)					아-9		(54.08)	(54.08)					
	아-10		(54.97)	(54.97)					아-10		(54.97)	(54.97)					
	아-11		(56.11)	(56.11)					아-11		(56.11)	(56.11)					
	아-12		(61.42)	(61.42)					아-12		(61.42)	(61.42)					
	아-13		(52.58)	(52.58)					아-13		(52.58)	(52.58)					
	아-14		(678.42)	(678.42)					아-14		(678.42)	(678.42)					
체력단련시설 ⑮								34종 124	아-15		(22.00)	(22.00)					증 22.00
	소 계		1,177.67	1,177.67			34.53	34.53	⑮							34종 124	
편 의 시 설	주차장	카	844.59	844.59					카		844.59	844.59			34.53	34.53	
	타		298.55	298.55					타		298.55	298.55					
	약수터	타-1	(278.30)	(278.30)					타-1		(278.30)	(278.30)					
		타-2	(20.25)	(20.25)					타-2		(20.25)	(20.25)					
관 리 시 설	화장실	파	34.53	34.53			34.53	34.53	파		34.53	34.53			34.53	34.53	
	소 계		248.95	248.95			150.36	270.36			301.95	301.95			150.36	270.36	9
	3		218.59	218.59			120	240	3		218.59	218.59			120	240	
	관리사무소	3-1	(218.59)	(218.59)	R.C 조	지상1층, 지하1층	(120)	(240)	3-1		(218.59)	(218.59)	R.C 조	지상1층, 지하1층	(120)	(240)	
표석									3-2		53.00	53.00					증 53.00
	⑮							4	⑮							4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건축물 (㎡)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관 리 시 설	표지판	⑪							5		
	계단	4		30.36	30.36						
		4-1			(15.18)	(15.18)					
		4-2			(15.18)	(15.18)					
녹지 및 기타	소 계		299,494.09				299,888.09				
	녹지및기타			299,494.09			299,888.09			증 394.00	

3. 도로조서

- 공원시설 계획도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당초	합 계					26,308.5				
변경						26,097.5				감 211.0
당초	소로	소 계				2,598.0				
변경						2,503.0				감 95.0
당초		3	1	8	40	320		상도동 286-7	상도동 산 101-96	
당초		3	2	6	141	846		진입광장1	사자암입구	
당초		3	3	6	70	420		봉천동 635-400	산책로 25 시점	
당초		3	4	6	40	240		진입광장 5	체력 단련시설14	
당초		3	4.5	6	54	272		봉천동 1718-10	진입광장 8	
당초		3	5	4	83	332		상도동 159-37	산책로69	증 73.0
변경		3	5	4	100	405		상도동 159-37	상도동 산64-360	
당초		3	6	6	28	168		소로3-5	상도동 64-106	삭제) 감 168.0
변경		3	6	6				소로3-5	상도동 64-106	
당초		소 계				24,147.5				
변경						23,594.5				감 116.0
당초	산책로		1	1.5	13	19.5		상도제3동 278-6	어린이 놀이터 1	
당초			2	1.5	25	37.5		어린이 놀이터 1	상도동 산 80-9	
당초			3	1.5	84	126		상도동 산 80-9	휴게소 2	
당초			4	3	29	87		휴게소 2	주차장 1	
당초			5	1.5	66	99		휴게소 2	휴게소 14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당초	산책로		6	1.5	68	102		주차장 1	소로 3-2	
당초			7	3	48	144		주차장 1	소로 3-2	
당초			8	2	174	348		봉천동 산 133-19	체력 단련시설 6	
당초			9	2	100	200		봉천동 산 677	약수터 1	
당초			10	2	105	210		휴게소12	약수터 1	
당초			11	2	115	230		휴게소14	산책로17	
당초			12	2	120	240		봉천동 산 148-2	산책로14 종점	
당초			13	2	40	80		산책로12 종점	휴게소 12	
당초			14	2	115	230		봉천동 산649-118	산책로13 기점	
당초			15	2	145	290		봉천동 산 649-84	휴게소 12	
당초			16	2	265	530		휴게소12	휴게소16	
당초			17	2	75	150		산책로 30	휴게소 15	
당초			18	2	60	120		휴게소 15	휴게소 16	
당초			19	2	90	180		휴게소 15	휴게소 17	
당초			20	2	35	70		휴게소 16	휴게소 17	
당초			21	2	75	150		휴게소 17	산책로 30	
당초			22	2	35	70		산책로 24	휴게소 17	
당초			23	2	80	160		휴게소 18	휴게소 16	
당초			24	2	670	1,340		산책로 23	산책로 50	
당초			25	2	70	140		소로 3-3 종점	휴게소 18	
당초			26	2	115	230		봉천동 산635-457	휴게소 18	
당초			27	2	95	190		체력단련 시설 14	산책로 24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당초	산책로		28	3	102	306		소로 3-3	소로 3-4 종점	
당초			29	1.5	77	115.5		산책로 24	휴게소 4	
당초			30	3	344	1,032		휴게소 2	휴게소 4	
당초			31	1.5	66	99		휴게소 3	산책로 32	
당초			32	3	581	1,743		소로 3-2	상도제4동 210-270	
당초			33	1.5	77	115.5		상도제3동 283-141	산책로 32	
당초			34	1.5	114	171		산책로 32	산책로 30	
당초			35	1.5	116	174		산책로 32	상도동 산 65-41	
당초			36	1.5	141	211.5		산책로32	상도동 산 65-41	
당초			37	1.5	85	127.5		상도동 산 67-27	산책로 32	
당초			38	2	27	54		상도동 산 65-41	휴게소 4	
당초			39	2	151	302		산책로 32	상도동 산 65-41	
당초			40	2	48	96		산책로 41 종점	산책로 32	
당초			41	2	30	60		산책로 43	산책로 40 기점	
당초			42	2	32	64		산책로 43	산책로 40 기점	
당초			43	2	201	402		진입광장 7	체력 단련시설 1	
당초			44	1.5	82	123		상도동 산 210-278	산책로 43	
당초			45	3	129	387		체력 단련시설 1	휴게소 6	
당초			46	1.5	47	70.5		상도동 산 65-141	휴게소 6	
당초			47	3	28	84		휴게소 6	체력 단련시설 2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당초	산책로		48	1.5	173	259.5		휴게소 6	산책로 49	
당초			49	3	76	228		휴게소 5	휴게소 4	
당초			50	3	247	741		진입광장 2	휴게소 5	
당초			51	2	126	252		휴게소 7	휴게소 5	
당초			52	1.5	113	169.5		체력 단련시설 2	휴게소 7	
당초			53	3	188	564		진입광장 2	체력 단련시설 2	
당초			54	1.5	88	132		진입광장 2	휴게소 7	
당초			55	3	393	1,179		진입광장 8	산책로 58	
당초			55	3	295	890		휴게소 24	산책로 58	
당초			56	1.5	240	360		봉천동 1718-10	산책로 55	
당초			56	2	50	100		봉천동 1718-11	휴게소 22	
당초			57	1.5	41	61.5		봉천동 1712-10	휴게소-20	
당초			58	2	15	30		산책로 66	휴게소 8	
당초			59	2	14	28		산책로 66	휴게소 8	
당초			60	1.5	113	169.5		상도동 241-14	산책로 66	
당초			61	1.5	71	49		산책로 65	산책로 65	
당초			62	1.5	273	410		진입광장 9	산책로 65	
당초			63	1.5	12	18		산책로 62	산책로 65	
당초			64	1.5	47	74		-	산책로 65	
당초			65	3	843	2,529		진입광장 9	진입광장 10	
당초			66	1.5	80	120		상도동 244-477	산책로 65	
당초			67	1.5	123	186		산책로 65	산책로 65	
당초			68	1.5	22	34		산책로 67	진입광장13	
당초			69	3	46	138		상도동 산 69-104	진입광장10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당초	산책로		69	3.0	17	51		소로3-5종점	진입광장10	증 79.0
변경			69	2	64	130		소로3-5	산책로70	
당초			70	2.0	140	280		상도동 산 65-75	산책로69	감 70.0
변경			70	2.0	104	210		상도동 산65-161	소로3-5	
당초			71	1.5	54	81		야외공연장 시점	야외공연장 내부	
당초			72	1.5	45	67.5		야외공연장 시점	야외공연장 내부	
당초			73	1.5	12	18		야외공연장 시점	야외공연장 내부	
당초			74	1.5	12	18		산책로 65	야외공연장 내부	
당초			75	2.5	22	55		산책로 80	휴게소 21	
당초			76	1.5	83	124.5		산책로 75	체력 단련시설 4	
당초			77	1.5	58	87		체력 단련시설 4	산책로 81	
당초			78	1.5	59	88.5		산책로 80	어린이 놀이터 3	
당초			79	1.5	215	322.5		진입광장11	어린이 놀이터 3	
당초			80	3	794	2,382		진입광장 9	진입광장 4	
당초			81	1.5	82	123		어린이 놀이터 3	산책로 80	
당초			82	2	22	44		산책로 80	휴게소 9	
당초			83	2	27	54		진입광장12	휴게소 9	
당초			84	2	19	38		야생초화원	진입광장 13	
당초			85	1.5	12	18		체력단련시설 5	야생초화원	
당초			86	2	19	38		산책로 80	야생초화원	
당초			87	3	55	165		상도 제5동 126-70	산책로 80	
당초			88	1.5	25	37.5		산책로 80	체력 단련시설 5	
당초			89	1.5	61	91.5		상도 제5동 126-68	산책로 80	
당초			90	1.5	47	70.5		진입광장 4	휴게소 10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당초	산책로		91	2	83	166		봉천동 1712-10	산책로 80	
당초			92	1.5	17	25.5		마을숲	휴게소 11	
당초			93	3	9	27		마을숲	휴게소 11	
당초			94	1.5	36	54		마을숲	휴게소 11	
당초			95	2	31	62		소로 3-3	산책로 28	
당초			96	2	32	64		산책로 28	산책로 28	
당초			97	2	75	150		산책로 28	소로 3-4	
당초			98	1.5	20	30		산책로 97	산책로 28	
당초			99	2	10	21		휴게소 22	휴게소 23	
당초			100	2	33	66		휴게소 23	휴게소 24	
당초			101	2	35	70		휴게소 21	산책로 55	
당초			102	2	9	18		휴게소 21	봉천동 1718-9	
당초			103	2	31	62		봉천동 1718-9	생태육교 1	
당초			104	2	60	120		산책로 70	소로3-5	삭제) 감 120.0
변경			104	2						
당초			105	2	23	46		산책로 106	체력단련장3	삭제) 감 46.0
변경			105	2						
당초			106	4	5	20		상도동 산65-116	체력단련장3	삭제) 감 20.0
변경			106	4						
당초			107	2	11	22		체력단련장3	산책로 70	증 61.0
변경			107	2	30	83		산책로 69	산책로 70	

◆ 관악구공고 제2018-224호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 및 주민의견 청취 열람공고

1. 「건설부고시 제369호(1980.11.15)」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되고, 「서울시고시 제2017-6호(2017.1.5)」로 공원조성계획 최종 변경 결정된 관악산도시자연공원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 사업(동네뒷산 공원조성사업)을 시행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의거 도시계획 사업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인가를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열람공고 합니다.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이해관계가 있는 분이나 단체 등은 열람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저촉 토지 및 지장물 소유자에게는 개별통지 할 것이나 이해관계인 및 미 수령자는 본 공고로 통지를 갈음합니다.

2018년 2월 19일
관 악 구 청 장

가. 사업위치 : 관악구 봉천동 산175-6번지

1) 토지분할 후 : 봉천동 산175-46번지 (예정 지번)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2) 명 칭 : 동네뒷산공원조성사업 (관악산 봉천동 산175-6번지)

3) 사업내용 : 토지보상 및 공원조성 등

다. 사업규모 : 5,000㎡

라. 사업시행자 : 관악구청장

마. 사업기간 : 실시계획인가일 ~ 2019.12.31.

바. 공고방법 : 서울시보 게재

아.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사. 열람 및 의견제출 장소 : 관악구청 공원녹지과(☎02-879-6524)

자.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 붙임참조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연번	소재지	지목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지적	편입 면적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의종류 및내용
합계				5,000					
1	봉천동 산175-6 (분할예정지번 : 봉천동 산175-46)	임야	101,983	5,000	이O수	서울시 용산구 독서당로 90, 401호(한남동, 형우베스트1빌라 3차)	이O수	서울시 용산구 독서당로 90, ***호	채무자
							송O애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2길 63, ***호	근저당권
							김O기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북정로32번길 13, ***호	채무자
							박O	서울시 광진구 광나루로52길 **	근저당권, 채 권자
							박O덕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장자길 29-**	채무자
							김O한	서울시 송파구 성내천로 6길 9-15, ****호	채권자
							영농조합법인 화성미곡처리장	충남 아산시 인주면 관암리 440	근저당권자, 채무자
							영농조합법인효원 쌀마을닷컴	충남 아산시 인주면 영인산로 40	채권자
							영농조합법인효원 식품	충남 아산시 인주면 영인산로 15-6	채권자
							이O현	충남 아산시 탕정면 매곡천길 **	채권자
							농업회사법인 양곡농산주식회사	충남 홍성군 서부면 와룡로 25	채권자
							영농조합법인 화서임곡처리장	충남 아산시 인주면 관암리 440	채무자, 채권자
							주식회사 이천마당	서울시 관악구 관천로 69-1	채권자
							유O주	서울시 강동구 올림픽로71길 28-22	채권자

◆ 서초구공고 제2018-294호

도시계획시설(우면산도시자연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1. 건설부고시 제465호(1971. 8. 6)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2-94호(2002. 3.25)로 도시계획시설(공원)조성계획 변경결정된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산92-1번지 일대의 우면산도시자연공원에 대하여,
2. 도시계획시설(공원)조성사업 실시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에 의거 관련서류를 다음과 같이 열람 공고하고자 합니다.
3.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개별통지 할 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본공고로 갈음합니다.
4.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청 공원녹지과(☎02-2155-6883)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니 본 실시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열람 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2월 19일
서 초 구 청 장

가. 실시계획의 주요내용

- 1) 사업 시행지의 위치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651
 -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공원)조성사업
 - 나) 사업의 명칭 : 우면산도시자연공원 조성사업
 - 3) 사업의 면적 및 규모
 - 가) 면적 : 377㎡
 - 나) 내용 : 토지보상
 -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가) 성명 :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4번지
 -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고시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 6) 수용 또는 수용할 토지 및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따로붙임
- 나. 열람기간 : 열람공고일로부터 14일간(열람시간 09:00 ~ 18:00)
- 다. 열람장소 : 서초구청 공원녹지과(☎02-2155-6883)
- 라. 기타 상세한 사항은 열람장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지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지분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및내용	
방배동 651	전	377	377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260길 52, *동 ***호(남현동, 삼성세르빌)	고**	377/377				

◆ 송파구공고 제2018-255호

도시관리계획(송파대로, 위례성길, 삼전 지구단위계획) 변경(안) 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282호(2009.7.23)로 결정된 ‘위례성길 지구단위계획’,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285호(2009.7.23)로 결정된 ‘삼전 지구단위계획’,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2-150호(2012.6.7.) 및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5-296호(2015.9.24.)로 (변경)결정된 ‘송파대로 지구단위계획’의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재정비를 위하여 송파구 공고 제2016-1255호(2016.10.14.)로 열람공고하고,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사전자문 등을 거쳐 변경 수립된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7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 관련도서를 (재)열람합니다.
3. 본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열람 장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2월 19일

송 파 구 청 장

1) 열람기간 : 2018.02.19. ~ 2017.03.05.(14일간)

2) 열람장소 : 송파구청 도시계획과

3) 열람내용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송파대로 지구단위계획구역	석촌동, 송파동 일대	198,442	감) 198,442	-	• 구역 변경 결정 -서울시고시 제2015-296호 (2015. 9. 24)
변경		송파대로 제1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석촌동 174, 송파동 19일대	-	증) 189,566	189,566	• 석촌역 북측 송파대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분리 • 송파대로 이면부 주거지역 신규 편입
변경		송파대로 제2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석촌동 295, 송파동 95일대	-	증) 78,419	78,419	• 석촌역 남측 송파대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분리
변경		위례성길 지구단위계획구역	송파구 방이동 180번지 일대	59,400	증) 9,625	69,025	• 서울시고시 제1994-189호 (1994. 6. 7)
변경		삼전 지구단위계획구역	삼전동 7번지 일대	82,000	증) 54,002	136,002	• 서울시고시제1996-46호 (1996. 3. 6)

-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
: 기존 도시기반시설(도로) 등에 관한 변경 사항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
: 가구 및 획지계획, 건축물의 용도, 밀도, 높이, 배치, 건축선 및 대지내 공지 등에 관한 변경 사항
- 특별계획가능구역 신설(4개소)
: 석촌 더블환승역세권 활성화 위해 특별계획가능구역 지정
- 4) 관계도서 : 생략(열람 장소에 비치)
- 5) 지역주민과 이해당사자의 열람편의 정확한 이해를 위하여 송파구청 도시계획과(담당: 이규용/☎: 2147-3002)에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사업소고시

◆ 한강사업본부고시 제2018-35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2월 19일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 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허가구역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에이치에스이 엔지(주)	서울특별시 강동구 동남로 75길 19, 409	서울시계내한강 (마곡대교)	선박 2척 (기선1척, 부선1척)	마곡대교 교량 하자보수공사	당초 '18.02.01. ~ '18.02.28.	'18. 02.07.
					변경 '18.03.01. ~ '18.03.31.	

◆ 한강사업본부고시 제2018-36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2월 19일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 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허가구역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주)동광지오 엔지니어링	서울시 강동구 올림픽로 675	서울시계 내 한강 (용산 한남동 785~ 강남 압구정동 374-1)	선박 1척 (예인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A노선 민간투자사업 지반조사	'18.02.07.~ '18.02.28.	'18. 02.07.

◆ 한강사업본부고시 제2018-38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운항)하고
하천법 제33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 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2월 19일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장

허가받은자		점용허가(사용)개요				허 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영업구역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주)세빛섬 (대표 노재봉)	서울특별시 서초구 올림픽대로 683 (반포동)	서초구 반포동 649번지일원 (하천)	47,298㎡ (직접) 5,794.9㎡, 간접 41,503.1㎡ 보트 2척 (고무보트)	주차장, 수상레저계류 장, 보트 2척 (시설물점검), 기타	2018.1.1 ~ 2018.12.31 (365일간)	2018.2.8

사업소공고

◆ 서울역사박물관공고 제2018-3호

유물 구입 공고

서울특별시박물관자료수집및관리조례에 따라 유물구입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유물 소장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8년 2월 19일
서울역사박물관장

1. 구입 분야 및 대상 유물

번호	구입 분야(주제)	구입 대상 유물
1	신촌	○ 연희궁, 서잠실, 수경원 등 관련 고문서·전적 ○ 신촌 개발: 도시계획, 택지조성사업, 재건축택, 희망주택 등 ○ 대학가 문화시설 및 상권: 백화점, 서점, 소극장, 다방, 양장점 등 ○ 민주화운동: 4.19혁명, 한일협정반대운동, 6.10 민주항쟁 등 ○ 교통: 철도(경의선, 교외순환선, 신촌역), 도로(신촌로, 성산로, 양화교)
2	'88 서울올림픽과 70~80년대 서울도시개발	○ 1970~80년대 서울도시개발: 잠실지구 도시계획, 한강종합개발, 잠실종합운동장, 올림픽공원, 선수촌·기자촌 조감도, 홍보물, 사진 등 ○ 88 서울올림픽 행사: 기념품, 홍보물, 문서, 사진, 시민참여 관련 자료, 당시 체육 관련 자료 등 ○ 1970~80년대 대표 생활용품: 가전제품 및 생필품
3	한강(경강)	○ 경강: 지도, 지리지, 군현지, 문집, 시회 등 ○ 나루, 포구 등 수운·상업: 객주·여각·장빙업·선운업·계(契) 등
4	서울·평양지역 3.1운동	○ 서울지역 3.1운동: 3.1운동 민족대표 및 독립선언 장소 관련 자료 ○ 평양지역 3.1운동: 장대현교회, 남산현교회, 평양신학교, 대성학교 등 ○ 무오독립선언, 2.8독립선언 등 기타 항일운동 관련 자료
5	전차	○ 전차 제작 및 운행 관련 자료, 제작자(콜브란, 보스트윅, 이학균) 관련 자료 ○ 한미전기회사, 경성전기주식회사, 동대문 발전소 등 전차 운영 관련 자료 ○ 전차 운행노선도, 전차 종사자 의복, 이정표·표지판 등 실물자료 ○ 전차·정거장 사진 및 사진첩
6	북촌	○ 북촌(계동, 삼청동, 안국동, 가회동, 화동 등) 일대 관련 자료 ○ 북촌 거주 인물 관련 자료 ○ 『세시풍요』, 『동국세시기』 등 조선후기 도시상업사 및 세시풍속 자료
7	서울 골목 생활사	○ 경화사족, 여향인, 상인, 장인, 천민 등 골목 거주민 생활사 자료 ○ 조선시대 한양의 사건 및 사고 관련 자료 ○ 조선시대 소비 및 유흥 관련 자료

번호	구입 분야(주제)	구입 대상 유물
8	한양도성	○ 조선시대: 한양도성 건설·운영·관리·변화·방어 자료, 하도감·염초청·훈련원 관련 자료, 군복·무기류·무예도보통지 등 군사훈련 자료 ○ 대한제국기: 한양도성 수리, 성벽처리위원회, 전차노선, 훈련원공원 관련 자료 ○ 일제강점기: 한양도성 훼손·파괴, 수리 및 주변 근대시설물 ○ 광복이후: 한양도성 발굴·정비, 사대문 및 도성 복원 자료 ○ 흥인지문~광희문 일대, 이간수문, 치 관련 자료
9	동대문운동장	○ 일제강점기: 경성운동장 조성 및 운영·경기·체육인 자료, 주변지역 생활사 자료 ○ 광복이후: 서울운동장 행사, 집회, 경기대회, 풍물시장 등
10	청계천	○ 청계천변 3.1아파트상가 관련 도면 및 이미지·영상 자료 ○ 1950년대 이후 청계천1가~9가, 청계천 고가 상권 판매물품 및 이미지 등 관련 자료 ○ 동대문신발상가 제조 신발 및 신발 제조 관련 부속품 ○ 일제강점기~해방이후 남소문동천(장충동, 광희동) 일대 근대 시설관련 자료
11	일반 서울 자료	○ 조선시대 - 도량형 및 목공구 관련 자료 - 관공궐(별궁), 종묘, 성균관, 임진왜란·병자호란, 행정기구(한성부, 의정부, 육조) 등 관련 자료 - 우금(牛禁), 현방(縣房) 등 반촌 관련 자료 - 도성도 및 지도책 ○ 대한제국기: 서울지도, 도시계획 관련 지도 ○ 광복이후: 서울시장 및 시정 관련 자료, 대중교통, 서울 문학 관련 자료, 군사지도 등 ○ 서울 인물 초상화 및 실경 서화(산수화, 계회도, 기록화, 민화, 풍속화 등)

2. 참가 자격 : 문화재매매업자 및 법인, 개인소장자 등

※ 문화재매매업자는 반드시 등록된 상호명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 문화재 관련사범은 참가할 수 없으며, 소유나 출처가 불분명한 유물 및 불법문화재는 매도 신청이 불가합니다.

3. 접수 기간 : 2018년 02월 09일(금) ~ 03월 02일(금)까지

※ 종료일에 임박하여 접수가 집중되는 경향이 있으니 되도록 미리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접수 방법 : 홈페이지 접수 또는 이메일 접수 중 택일

가. 홈페이지 접수 : www.museum.seoul.kr(매도접수 페이지)나. 이메일 접수 : seulgiya00@seoul.go.kr

※ 접수완료 후 담당자에게 접수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제출 서류

가. 홈페이지 접수 : 매도신청 페이지에서 자료입력 및 유물사진 첨부

나. 이메일 접수 : ①, ②번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③유물사진과 함께 송부

① 매도신청서 1통

- 신청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스캔 이미지 파일 송부

- 매도신청 유물목록은 ②번 양식에 별도 작성

② 유물목록 1통

- ③ 유물사진파일
- 파일명을 유물번호와 동일하게 변경하여 송부
 - 파일형식 : JPG, GIF, PNG(1점 당 1파일 이상, 1파일 5MB 이하)
 - ※ 사진파일이 많을 경우 압축파일로 변환하여 송부해주세요.
6. 실물 접수 : 서류 심사 후 평가대상으로 선정된 유물에 대해 개별 통지하여 실물 접수
- 가. 실물 접수시 제출 서류
- 문화재매매업자 : 문화재매매업허가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통
 - 법인 또는 단체 : 유물매도위임장, 법인등기부 등본 또는 단체등록증 사본 각 1통
 - 개인 : 신분증 지참 또는 사본 제출(사본 제출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가림)
 - 대리접수시 위임인이 작성한 위임장 1부와 위임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7. 유물 구입 가격 : 유물평가위원회 평가에 의함
8. 구입 결정
- 가. 유물평가위원회 및 운영자문위원회의 평가·심의에 의해 구입 유물 선정
- 나. 선정 유물에 대해서 인터넷 공개를 통해 불법문화재 여부 검증
- 다. 최종 선정된 유물의 평가금액에 매도신청자가 동의할 경우 매매계약 체결
9. 소유권 이전 : 계약체결 이후 대금 지급과 함께 유물의 소유권은 서울역사박물관으로 이전
10. 기타 사항
-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나. 출처 및 취득경로가 불분명하거나 소유관계가 불분명한 자료는 구입하지 않음
- 다. 구입대상에서 제외된 유물은 본인에게 통보하여 소정의 절차에 의해 반환함
- 라. 유물 접수 및 반환으로 발생하는 운송비 및 제반 비용은 매도신청자 부담
-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역사박물관 유물관리과(02-724-0162)로 문의

◆ **마포소방서공고 제2018-1호**

소방시설관리업 등록 공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소방시설관리업을 신규등록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19일

마 포 소 방 서 장

업 종	등록번호 (등록년월일)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생년월일)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소방시설 관리업	제마포2018-1호 (2018.02.09.)	반석전기(주) (105-88-03386)	김 진 훈 (1975.06.18.)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38나길9 (중동,현대아파트상가비-101호)	02-2696-0106

※ 기타 문의사항은 마포소방서 예방과 위험물안전팀 ☎ 02)701-3493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 정

◆ 정 정

서울특별시 조례 제6316호 정정

서울시보 제3372호, 2016.9.29.자 48면에 게재된 “서울특별시 조례 제6316호” 내용에 누락이 있어 아래와 같이 정정합니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8년 2월 19일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정사항

기존	정정
[별표]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	[별표]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제3조 관련)



함께 서울

시민과 함께 세계와 함께

- 안전한 서울
- 따뜻한 서울
- 꿈꾸는 서울
- 숨쉬는 서울

기관의 장	
선	
람	

공 람									